

연구보고서 2001-09

障碍類型別 雇傭現況과 職業再活方案

李善雨 金成禧 林正寄
權善進 劉東澈 李啓存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社會統合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自立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職業再活은 장애인의 社會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社會참여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장애인의 失業率은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就業障礙人의 月平均 所得은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生産的 福祉의 이념 하에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재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障礙人職業再活政策은 귀중하고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심층 분석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장애인이 단순히 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은 ‘장애인’의 재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재활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再活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의 능력을 보기 전에 그 장애인의 ‘장애’를 먼저 보게 된다면 결국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비장애인 사업주들은 장애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든 또는 누구이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과 같은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손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호킹’이 사회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 장애인복지팀 이선우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김성희 책임연구원, 임정기 연구원, 그리고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 동의대학교 유동철 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이계존 교수에 의해 완성되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次

要約	13
第1章 序論	91
第1節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91
第2節 研究의 資料 및 研究方法	93
第3節 研究의 構成	95
第2章 障礙人 雇傭 現況	96
第1節 勞動年齡帶 障礙人의 特性	96
第2節 非經濟活動障礙人和 經濟活動障礙人의 比較	101
第3節 失業障礙人和 就業障礙人의 比較	105
第4節 障礙人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109
第5節 家口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121
第6節 就業障礙人에 대한 分析	123
第3章 障礙類型別 雇傭現況	134
第1節 肢體障礙와 腦病變障礙	134
第2節 視覺障礙	164
第3節 聽覺·言語障礙	185
第4節 精神遲滯	215
第5節 精神障礙	231
第6節 腎臟障礙·心臟障礙	253

第4章 障礙類型別 職業再活方案	278
第1節 序論	278
第2節 肢體·腦病變障礙人の 職業再活	291
第3節 視覺障礙人の 職業再活	295
第4節 聽覺·言語障礙人の 職業再活	300
第5節 精神遲滯人の 職業再活	314
第6節 精神障礙人の 職業再活	319
第7節 腎臟障礙·心臟障礙의 職業再活	324
第5章 結論 및 政策 提言	329
第1節 障礙類型別 特性 比較	329
第2節 分析結果의 要約	332
第3節 政策 提言	339
參考文獻	352

表目次

〈表 2-1-1〉	人口學的 變數의 平均	96
〈表 2-1-2〉	人口學的 變數의 分布	97
〈表 2-1-3〉	障礙類型과 障礙原因의 分布	98
〈表 2-1-4〉	健康變數의 分布	99
〈表 2-1-5〉	社會的 差別變數와 經濟活動狀態의 分布	100
〈表 2-2-1〉	經濟活動狀態에 따른 人口學的 變數 比較	102
〈表 2-2-2〉	經濟活動狀態에 따른 障礙類型과 障礙原因 比較	103
〈表 2-2-3〉	經濟活動狀態에 따른 連續變數 比較	105
〈表 2-3-1〉	就業與否에 따른 人口學的 變數 比較	106
〈表 2-3-2〉	就業與否에 따른 障礙類型과 障礙原因 比較	106
〈表 2-3-3〉	就業與否에 따른 連續變數 比較	108
〈表 2-4-1〉	障礙人의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의 分析結果	116
〈表 2-5-1〉	障礙人家口所得에 대한 回歸分析	123
〈表 2-6-1〉	就業障礙人과 常傭勤勞者의 職種別 月評均 給與 比較	124
〈表 2-6-2〉	就業障礙人의 從事上 地位와 月評均 給與	126
〈表 2-6-3〉	就業障礙人의 特性	127
〈表 2-6-4〉	일에 대한 滿足度	127
〈表 2-6-5〉	就業希望障礙人의 特性	128
〈表 2-6-6〉	就業希望障礙人의 時間當 賃金에 대한 回歸分析	131
〈表 3-1-1〉	肢體·腦柄變障礙人들의 特性(連續變數의 技術統計)	138

〈表 3-1- 2〉	肢體·腦病變 障礙人들의 特性 分布 (名目 및 序列變數)	139
〈表 3-1- 3〉	就業 肢體·腦病變 障礙人들의 勤務 場所	140
〈表 3-1- 4〉	性別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41
〈表 3-1- 5〉	家口主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41
〈表 3-1- 6〉	職業訓練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42
〈表 3-1- 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143
〈表 3-1- 8〉	障礙類型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44
〈表 3-1- 9〉	教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46
〈表 3-1-10〉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146
〈表 3-1-11〉	就業時 差別 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47
〈表 3-1-12〉	職場生活에서의 差別 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	148
〈表 3-1-13〉	就業與否에 따른 障礙人 特性의 差異	148
〈表 3-1-14〉	失業者들의 就業 希望 與否	149
〈表 3-1-15〉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150
〈表 3-1-16〉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150
〈表 3-1-17〉	肢體·腦病變 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場所	151
〈表 3-1-18〉	肢體·腦病變 障礙人의 希望 就業形態	152
〈表 3-1-19〉	肢體·腦病變 障礙人이 바라는 國家 役割	153
〈表 3-1-20〉	獨立變數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162
〈表 3-2- 1〉	視覺障礙人의 特性(連續變數의 技術統計)	167
〈表 3-2- 2〉	視覺障礙人의 特性 分包(名目 및 序列變數)	168
〈表 3-2- 3〉	就業 視覺障礙人의 勤務 場所	169
〈表 3-2- 4〉	性別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69
〈表 3-2- 5〉	家口主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70
〈表 3-2- 6〉	職業訓練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170
〈表 3-2- 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171
〈表 3-2- 8〉	教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72

〈表 3-2- 9〉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172
〈表 3-2-10〉	就業時 差別 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73
〈表 3-2-11〉	職場生活에서의 差別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73
〈表 3-2-12〉	職場生活에서의 障礙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174
〈表 3-2-13〉	就業與否에 따른 障礙人 特性의 差異	174
〈表 3-2-14〉	失業者들의 就業希望 與否	175
〈表 3-2-15〉	未就業의 主된 理由	176
〈表 3-2-16〉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176
〈表 3-2-17〉	失業者들의 希望 職種	177
〈表 3-2-18〉	視覺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場所	178
〈表 3-2-19〉	視覺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形態	178
〈表 3-2-20〉	視覺障礙人이 바라는 國家 役割	179
〈表 3-2-21〉	經濟活動 參與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181
〈表 3-2-22〉	就業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182
〈表 3-2-23〉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184
〈表 3-3- 1〉	聽覺·言語障礙人의 特性(連續獨立變數의 技術統計)	190
〈表 3-3- 2〉	聽覺·言語障礙人의 月平均所得	191
〈表 3-3- 3〉	聽覺·言語障礙人의 人口社會的 特性	192
〈表 3-3- 4〉	聽覺·言語障礙人의 醫療的 特性	193
〈表 3-3- 5〉	聽覺·言語障礙人의 社會的 差別程度	194
〈表 3-3- 6〉	聽覺·言語障礙人의 心理的 特性	195
〈表 3-3- 7〉	就業 聽覺·言語障礙人의 經濟活動分野	196
〈表 3-3- 8〉	就業 聽覺·言語障礙人의 從事上 地位	196
〈表 3-3- 9〉	聽覺·言語障礙人의 雇傭 現況	198
〈表 3-3-10〉	聽覺·言語障礙人의 職業再活을 위한 國家役割	201
〈表 3-3-11〉	聽覺·言語障礙人의 非經濟活動·經濟活動狀態에 대한 t-檢證	202

〈表 3-3-12〉	聽覺·言語障礙人的 非經濟·經濟活動狀態에 따른 χ^2 分析	205
〈表 3-3-13〉	聽覺·言語障礙人的 失業·就業狀態에 대한 t-檢證	207
〈表 3-3-14〉	聽覺·言語障礙人的 失業·就業狀態에 따른 χ^2 分析	208
〈表 3-3-15〉	聽覺·言語障礙人的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 分析結果	213
〈表 3-4- 1〉	精神遲滯人的 特性(連續變數의 技術統計)	218
〈表 3-4- 2〉	精神遲滯人的 特性 分布(名目 및 序列變數)	219
〈表 3-4- 3〉	就業 障礙人들의 勤務 場所	220
〈表 3-4- 4〉	性別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221
〈表 3-4- 5〉	家口主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221
〈表 3-4- 6〉	職業訓練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222
〈表 3-4- 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222
〈表 3-4- 8〉	教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223
〈表 3-4- 9〉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224
〈表 3-4-10〉	就業時 差別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224
〈表 3-4-11〉	職場生活에서의 差別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225
〈表 3-4-12〉	就業與否에 따른 精神遲滯人 特性의 差異	225
〈表 3-4-13〉	精神遲滯失業者의 就業希望 與否	226
〈表 3-4-14〉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勤務形態	226
〈表 3-4-15〉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職種	227
〈表 3-4-16〉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就業場所	228
〈表 3-4-17〉	精神遲滯人的 希望 就業形態	228
〈表 3-4-18〉	精神遲滯人이 바라는 國家 役割	229
〈表 3-4-19〉	獨立變數들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230
〈表 3-5- 1〉	精神障礙人的 人口學的 變數의 記述統計置 (頻度分布)	233

〈表 3-5- 2〉	精神障碍人の 人口學的 特性의 記述統計置(平均) ……	235
〈表 3-5- 3〉	精神科的 特性 ……	236
〈表 3-5- 4〉	精神障碍人の 障碍程度 ……	237
〈表 3-5- 5〉	精神障碍人の 障碍期間 ……	237
〈表 3-5- 6〉	精神障碍人の 雇傭現況 ……	238
〈表 3-5- 7〉	精神障碍人の 就業 ……	239
〈表 3-5- 8〉	精神障碍人の 就業關聯 厓路事項 및 滿足度 ……	239
〈表 3-5- 9〉	精神障碍人の 失業關聯 現況 ……	240
〈表 3-5-10〉	精神障碍人の 就業 欲求 ……	242
〈表 3-5-11〉	精神障碍人の 職業再活現況 ……	243
〈表 3-5-12〉	精神障碍人の 希望職業訓練分野 ……	244
〈表 3-5-13〉	精神障碍人の 職業再活을 위한 國家役割 希望分野 ·	244
〈表 3-5-14〉	精神障碍人の 經濟活動類型別 特性 ……	246
〈表 3-5-15〉	精神障碍人の 經濟活動類型別 特性 ……	249
〈表 3-5-16〉	精神障碍人の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 分析結果 ……	252
〈表 3-6- 1〉	人口學的 變數의 分布 ……	257
〈表 3-6- 2〉	健康變數의 分布 ……	259
〈表 3-6- 3〉	社會的 差別變數 ……	259
〈表 3-6- 4〉	應答者の 一般的 特性(連續變數의 平均) ……	262
〈表 3-6- 5〉	性別 就業與否 ……	263
〈表 3-6- 6〉	障碍類型別 就業與否 ……	263
〈表 3-6- 7〉	就業한 腎臟·心臟障碍人の 勤務 場所 ……	264
〈表 3-6- 8〉	家口主 與否別 就業與否 ……	264
〈表 3-6- 9〉	結婚狀態別 就業與否 ……	265
〈表 3-6-10〉	教育程度別 就業與否 ……	265
〈表 3-6-11〉	職業訓練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 ……	266
〈表 3-6-12〉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	267

〈表 3-6-13〉	就業時 差別 經驗程度別 就業與否	267
〈表 3-6-14〉	就業與否에 따른 連續變數 比較	268
〈表 3-6-15〉	失業障礙人の 就業希望 與否	269
〈表 3-6-16〉	內部障礙人の 希望 勤務形態	270
〈表 3-6-17〉	內部障礙人の 就業希望 職種	271
〈表 3-6-18〉	內部障礙人の 希望 就業場所	272
〈表 3-6-19〉	內部障礙人の 希望 勤務形態	272
〈表 3-6-20〉	內部障礙人이 바라는 國家의 役割	273
〈表 3-6-21〉	回歸分析 結果	276
〈表 4-1- 1〉	일하지 않거나 求職活動을 하지 않는 理由	292
〈表 5-1- 1〉	障礙類型別 一般的 特性(連續變數의 平均)	329
〈表 5-1- 2〉	障礙類型別 一般的 特性(名目變數)	330

要 約

第 1 章 序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직업재활임.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을 제정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됨. 즉, 고용할당제(quota system)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꾀함.
 - 그러나 대상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혜택이 주로 경증 지체장애인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1999년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3%보다 13.5% 포인트 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국민 전체의 실업률 3.8%(2000년 2/4분기)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 2000년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9만 2천원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급여 161만원(2000년 2/4분기, 노동부)의 49%에 불과하였음.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995년 99만 9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 180만원의 55.5%에서 2000년 108만 2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233만 1천원의 46.4%로 오히려 저하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第2節 研究의 資料 및 研究方法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함.
 - 본 연구는 4,125명의 재가장애인 중 노동연령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주부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방법은 빈도 분포, 평균 등의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증, t-검증, 회귀분석, 로짓분석 및 다항로짓분석 등임

第 3 節 研究의 構成

- 제2장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석함. 여기에서는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 그리고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 특성, 장애관련 특성 등을 비교하였음.
- 제3장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하였음. 장애유형을 지체 및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그리고 내부장애(신장 및 신장)로 나누어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인 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第 2 章 障碍人の 雇傭現況

第 1 節 勞働年齡代 障碍人の 特性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재가장애인 수는 4,125명이었고, 이 중 노동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애인 2,217명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42.4세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68.2%, 여성 31.8%로 남성이 더 많았음. 평균 가구원수는 3.51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는 54.8%, 비가구주는 45.2%로

조사되었음. 결혼상태는 미혼이 24.8%, 기혼이 63.6%, 이혼 또는 사별이 11.6%로 나타남. 평균 교육연한은 8.72년으로 중등학교의 교육을 마치지 못했으며,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9만 2천원으로 조사됨.

- 주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8.8%), 시각장애(11.6%), 뇌병변장애(9.6%)의 순으로 많았고, 발달장애(0.3%)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음. 평균장애기간은 19.94년이었고, 장애원인은 질병(30.0%), 기타 후천적 원인(26.6%), 교통사고(12.1%), 산업재해(12.1%), 원인불명(11.0%), 선천적 원인(5.6%), 출생시 원인(2.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가장 심각한 장애원인은 질병임을 알 수 있으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선천적·출생시 원인보다 훨씬 중요한 장애원인이 되고 있음.

□ 건강상태는 ‘비교적 건강하다’(44.3%)가 가장 많았고, ‘건강이 나쁜 편’이라는 응답도 39.6%에 달함. 그러나 ‘매우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은 11.4%로 비교적 낮았음. 일상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2%로 과반수를 넘는 장애인이 현재 상태에서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대부분 혼자서’ 한다(14.2%),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18.1%)로 나타나, 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장애인은 1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외부활동 불편정도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다’가 39.3%로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약간 불편하다’는 응답도 33.7%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연령대 장애인의 2/3는 큰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신의 장애인으로 인식 여부에서는 인식한다(68.9%), 인식하지 않는다(31.1%)로 나타나 아직 상당수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정적’(48.7%)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8.5%에 달해서, 아직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 사회적 차별경험 여부를 활동유형별로 차별경험이 ‘매우 많다’와 ‘많은 편이다’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취학에서는 46.0%, 학교생활에서는 50.0%, 결혼에서는 59.3%, 취업에서는 63.5%, 직장생활에서는 51.3%, 지역사회생활에서는 31.0%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은 비경제활동인구가 41.9%, 실업자가 10.9%, 취업자가 47.2%로 조사됨.

第 2 節 非經濟活動障礙人과 經濟活動障礙人의 比較

- 노동연령대의 장애인을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그 실태를 파악함.
 -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60.2%, 경제활동인구는 39.8%로 나타난 반면, 남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3.7%, 경제활동인구가 66.3%를 차지함.
 - 가구주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는, 비가구주 중 경제활동인구가 40.4%인 반면, 가구주 중에는 72.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경우 64.6%, 이혼·사별인 경우에는 51.0%, 미혼인 경우에는 43.9%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의 유형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는, 청각장애가 77.8%, 시각장애가 74.7%, 지체장애도 69.4%의 순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임. 반면 발달장애는 전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18.8%와 23.1%로 상당히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임.
- 장애원인에서는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경우에 경제활동참여율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후천적 원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5.2%, 교통사고 60.7% 등으로 나타남. 반면에 원인불명 또는 출생시 원인 등으로 장애가 된 경우에는 경제활동참여율이 각각 32.0%, 40.0%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 경제활동참여 장애인은 54.3%,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자 중 경제활동참여 장애인은 65.6%로 나타남.
- 평균 연령을 비교해보면, 비경제활동장애인은 41.6세, 경제활동장애인은 42.8세로 경제활동장애인의 연령이 약간 높았음. 가구 원수는 비경제활동이 3.54명, 경제활동이 3.50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가구소득은 비경제활동가구는 월평균 94만 8천원, 경제활동가구는 118만 4천원으로 2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임.
- 교육연한은 비경제활동은 8.1년, 경제활동은 9.1년으로 나타났고, 장애기간은 비경제활동이 16.8년, 경제활동이 22.5년으로 경제활동장애인이 상당히 더 오래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는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경제활동장애인이 약간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일상생활 도움정도와 외부활동 불편정도에서는 비경제활동장애인이 경제활동장애인보다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 사회적 차별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장애인

이 경제활동장애인보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第3節 失業障礙人과 就業障礙人의 比較

- 경제활동장애인을 실업인구와 취업인구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함.
 - 성별로 보면, 여성 중 실업인구는 25.1%, 취업인구는 74.9%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음. 반면 남자는 실업인구가 16.7%, 취업인구가 83.3%를 차지함.
 - 가구주여부에 따른 실업률을 보면, 비가구주의 실업률은 26.9%인 반면, 가구주의 실업률은 14.6%로 조사됨.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의 경우 14.0%로 가장 낮았고, 미혼이 28.9%, 이혼 또는 사별이 30.3%임.
 - 장애유형에 따른 실업률은, 정신장애(42.3%)가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장애는 32.7%로 나타남. 반면 실업률이 낮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9.5%), 언어장애(13.8%)였음. 또한, 심장장애(16.7%), 지체장애(17.5%), 시각장애(18.8%)의 실업률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장애원인에서는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경우에 실업률이 14.1%로 가장 낮았으며, 질병이 16.4%, 선천적 원인이 17.4%로 비교적 실업률이 낮았음. 반면, 출생시 원인(31.8%), 원인불명(27.3%), 교통사고(24.1%)의 경우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또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실업률은 20.2%,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자의 실업률은 15.4%로,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애인의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평균연령은, 실업장애인은 40.7세, 경제활동장애인은 43.3세로 취업장애인의 평균연령이 약간 높았음. 가구원 수에 있어서는 실업이 3.49명, 취업이 3.50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가구소득은 실업가구가 월평균 83만원, 취업가구는 월평균 126만 6천원으로 4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임.

- 교육연한에 있어서는 실업은 9.15년, 취업은 9.08년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여부에 교육의 차이는 없음. 장애기간은 실업이 19.5년, 취업이 23.2년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실업장애인보다 취업장애인이 약간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일상생활 도움정도에서는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외부활동 불편 정도에서는 실업장애인이 취업장애인보다 불편정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 전반적으로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장애정도의 차이는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의 차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장애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차별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업장애인이 취업장애인보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第 4 節 障礙人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1. 理論的 背景

가. 人口學的 理論

-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음.
 - 성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남성은 사회생활, 여성은 가정생활을 한다는 기대를 함.

따라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가구에서의 지위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인 경우에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연령은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기술 및 경험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결혼상태도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데,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취업에 있어 가구원 수가 많으면 장애인인 경우 생계를 위해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음.

나. 人的 資本 要因

- Adelman & Vogel(1993), Johnson, Greenwood & Schriener(1988)은 장애인이 구직기술이 부족하고 취업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며, 근로에 대한 습관이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Podmostko(2000)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다. 醫療的 要因

- 장애유형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데, DeLeire(2000)는 미국의 장애인법(ADA)이 장애인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기타 장애로 구분함. Fuqua, Bathbun & Gade(1984)와 Threlkeld & Dejong(1982)는 일반적으로 신체장애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Bordieri, Dreamer & Taylor(1997)와 Dreamer & Bordieri(1985)는 정신장애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이선우(1997)도 장애유형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함.

- 장애정도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장애등급이 한 변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은 아직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들이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등으로 제시됨.
- DeLeire(2000)는 장애원인과 장애기간을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의 원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와 비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 社會制度的 要因

- Mank, O'Neill & Jensen(1998)은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즉,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일정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회보장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임.

마. 勞動市場의 構造的 要因

-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노동력 수요측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음. Nietupski, Hamre-Nietupski, VanderHart & Fishback(1996)은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태도 및 우려를 원인으로 들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장애인의 취업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2. 研究方法

- 경제활동유형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상태이며,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경제활동은 '0', 실업 '1', 취업 '2'로 부호화함. 이와 같이 세 범주 이상의 명목변수를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이며, 여기에서도 이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음. 다항로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분석을 위한 LIMDEP을 사용함.
- 독립변수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 의료적 변수로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장애의 원인, 심리적 변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을 사용함.

3. 다항로짓의 結果 分析

- 실업을 비경제활동과 비교하면, 가구소득은 적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고, 가구주일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

업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장애기간은 길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고,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적게 필요할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결혼상태에서는 기혼보다 사별·이혼일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장애보다 신체장애일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일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장애기간이 길수록, 도움이 적게 필요할수록,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취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여성보다는 남성이, 비가구주보다 가구주가, 미혼이나 사별·이혼보다 기혼이, 비산업재해보다 산업재해가, 정신장애보다 신체장애가 비경제활동보다 취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교하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을 적게 받을수록, 장애기간이 길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볼수록 실업보다 취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비가구주보다 가구주가, 미혼이나 사별·이혼보다 기혼이 실업보다 취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세 가지 계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비교해 보면,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교에서 가구소득이 많으면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을 벌이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조의 수급이 근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방식을 개선하여 근로동기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가구주 여부도 세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구주의 역할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주라면 당연히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실업자,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음.
- 장애기간은 장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보다는 사별·이혼자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실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또 취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았음.

〈表 1〉 障碍人の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의 分析結果

변수	실업/비경제	취업/비경제	취업/실업
상수	-0.961	1.151	2.112*
연령	-0.013	-0.025**	-0.012
가구원수	0.083	-0.176**	-0.259**
가구소득	-0.004**	0.005**	0.010**
성별	0.353	0.703**	0.350
가구주여부	0.492*	1.130**	0.638**
교육연한	0.072**	-0.006	-0.066**
장애기간	0.018**	0.041**	0.023**
도움필요정도	-0.507**	-0.475**	0.031
외부불편정도	0.204**	0.218**	0.014
건강상태	-0.138	-0.368**	-0.230
미혼	-0.031	-0.806**	-0.776**
사별·이혼	0.492*	-0.430*	-0.922**
장애원인	0.111	0.419*	0.308
정신장애	-0.949**	-1.224**	-0.275
내부장애	-0.457	-0.392	0.066
차별경험	-0.220*	0.055	0.274**
비장애인인식	0.222*	-0.040	-0.262*
자아인식	-0.058	-0.225	-0.167

* p<0.05; ** p<0.01

第 5 節 家口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함. 독립변수로는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와 함께 경제활동상태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함.

-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여부는 가구주인 경우에 비가구주보다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

혼인 경우에는 기혼인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더 높게 나타남.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장애가 신체장애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장애는 신체장애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장애인 인식여부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경제활동장애인에 비해 실업장애인의 가구소득이 낮으며, 반면에 취업장애인의 가구소득은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높았음. 연령은 높아짐에 따라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도 증가하면서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表 2〉 障礙人家口所得에 대한 回歸分析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상수	-43.530		-2.780**
남자	-7.571	-.042	-1.600
가구주	-13.228	-.078	-2.635**
미혼	19.377	.100	3.404**
이혼·별거	.296	.001	0.055
산재	-4.851	-.019	-0.950
정신장애	-13.345	-.056	-2.547*
내부장애	4.988	.012	0.620
자아인식	-9.695	-.053	-2.706**
실업	-17.053	-.063	-3.043**
취업	27.417	.163	6.671***
연령	1.212	.162	5.773***
가구원수	22.358	.371	17.969***
교육연한	4.458	.231	10.703***
장애기간	-.191	-.035	-1.644
도움필요도	-1.407	-.021	-0.862
외부활동불편도	3.651	.054	2.311*
건강상태	-4.989	-.045	-2.068*

F=44.080, df=17, 2118; R²=0.261

- 교육연한도 가구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연한이 비록 경제활동상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강상태는 좋다고 인식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았으나,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정도는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외부활동 불편정도도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부활동에 불편이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립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의 수였으며, 교육연한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 또한, 취업여부와 연령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第 6 節 就業障礙人에 대한 分析

1. 就業障礙人의 特性

- 취업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단순노무직(23.7%)이었고, 다음으로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23.3%),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20.6%)의 순으로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도 12.6%로 상당한 비율을 보임. 이상의 4개 직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장애인은 모두 80.2%에 달함.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91.8만원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은 57.1만원에 불과하고, 농어업은 74.1만원,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는 99.9만원으로 가장 낮은 세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 36.5%, 상용근로자(전일제) 27.1%, 일용근로자 15.1%를 차지함.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고용주가 159.7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전일제)가 112.1만원으로 자영업의 91.6만원보다 높았음. 또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53.4만원에 불과하였음.
-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는, 자영업이 가장 많아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사업체가 36.9%,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4%, 장애인관련기관 0.9%, 기타 3.7%의 분포를 보임. 장애유형별로도 대부분의 장애에서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내부장애는 일반사업체가 40.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에서 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수입’(47.9%)이었고, 다음으로는 ‘어려움이 없다’ 24.2%, 업무과다도 12.7%로 많았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2.8%로 상당히 적었으나, 낮은 수입과 업무과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또한, 출퇴근 불편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도 2.8%를 나타냄.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정신장애에서는 낮은 수입 못지 않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문제를 13.3%가 제기함. 또, 내부장애에서는 23.3%가 업무과다를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음.
- 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45.8%)가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39.5%로 상당히 많았음. 또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0.1%였는데, 장애유형별로 정신장애에서는 16.7%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음.

-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1.5%가 전일제를, 18.5%가 시간제를 원하였고, 희망직종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가 22.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단순노무직근로자도 21.1%로 선호함.
- 희망하는 취업장소로는 자영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업체가 29.8%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3%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았음. 희망하는 취업형태로는 출근근무가 75.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 就業障碍人 賃金에 대한 分析

- 취업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함. 종속변수로 취업장애인의 시간임금에 대한 대수값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성별,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장애원인, 장애유형, 자아인식,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이 더미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도움필요도, 외부활동불편도, 건강상태, 연령의 제곱 등이 연속변수로 포함되었음.
-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임금이 높았으며, 가구주여부에서는 가구주일수록 임금이 높았음. 또한 기혼은 미혼과 사별·이혼에 비해 임금이 높았음. 그러나 장애원인과 장애유형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스스로 장애인 인식여부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表 3〉 就業希望障碍人の 時間當 賃金에 대한 回歸分析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상수	-2.854		-6.374***
남자	0.184	0.089	2.258*
가구주	0.202	0.109	2.630**
결혼상태(기준범주=기혼)			
미혼	-0.153	-0.071	-1.892
이혼·별거	-0.219	-0.082	-2.608**
산재	-0.079	-0.040	-1.296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			
정신장애	-0.089	-0.022	-0.728
내부장애	-0.084	-0.019	-0.650
장애인인식여부	-0.087	-0.055	-1.851
연령	0.076	0.944	3.905***
연령 ²	-0.001	-0.877	-3.748***
교육연한	0.044	0.246	6.649***
장애기간	-0.004	-0.101	-3.145**
도움필요도	-0.040	-0.044	-1.359
외부활동불편도	0.042	0.061	1.905
건강상태	0.022	0.019	0.629
직업(기준범주=사무직)			
서비스직	-0.496	-0.258	-5.619***
농어업	-0.606	-0.309	-6.070***
기능직	-0.218	-0.117	-2.651**
노무직	-0.499	-0.281	-5.360***
종사상지위(기준=비정규)			
자영업	-0.051	-0.033	-0.641
상용직	-0.048	-0.029	-0.692

F=20.156, df=21, 882; R²=0.324

-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으며, 연령의 제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곡선이며, 장기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교육연한도 높을수록 임금이 높게 나타나, 비록 교육연한이 취업 여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기간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애기간이 길수록 임금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또 일상생활의 도움필요도, 외부활동 불편도, 그리고 건강상태는 모두 임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세 변수들이 모두 경제활동상태나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단 취업으로 진입하고 나면 임금과는 큰 관련이 없음.
 - 직업에서는 사무직에 비해 다른 모든 직업의 임금이 낮게 나타남. 반면,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자영업이나 정규직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화계수를 비교할 때,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연령의 제곱, 직업, 교육연한 등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개발해야 하며, 또 교육연한이 임금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第 3 章 障碍類型別 雇傭現況

第 1 節 肢體障碍와 腦病變障碍

1. 職業的 特性

가. 肢體障碍人

- 지체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mobility)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임.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구나 작업 편의설비를 통해 상쇄시켜

줄 수 있음. 이런 이유로 Mackelprang과 Salsgiver(1999)는 지체장애를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함.

- 이와 같이 지체장애인은 운동성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임. 이런 이유로 취업장애인의 대부분이 경증 지체장애인임.
- 문제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신체의 운동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운동성의 제약을 상쇄시키기가 어려움.

□ 지체장애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애정도가 비슷하더라도 활동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가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지체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PULSE Profile, Modified Barthel Index, Katz Index of ADL 등에 의해 평가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Modified Barthel Index를 사용함.

나. 腦病變障礙人

□ 뇌병변장애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칭함.

□ 뇌병변장애인도 기본적으로 운동기능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지체장애인과 동일하나, 뇌병변장애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는 신체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지체장애와 차이가 남.

- 지체장애와의 큰 차이는 뇌병변장애인은 동반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임.

-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은 운동기능의 제약과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의 저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더 취업이 어려움.

2. 實態 分析

가. 分析 對象

-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지체장애인은 1,799명, 뇌병변장애인은 622명이었음. 이 중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제외하였으며, 학생과 전업주부도 제외됨.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1,437명임.

나. 分析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는 약 75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약 9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약 47세, 가구소득은 약 1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2.77로서 가끔 차별을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 전체의 총소득은 평균 약 106만원이었으며,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18만원이라고 응답함.
-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12년 6개월 정도였으며,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소득은 평균 90만 5천원이었음.
- 실업자가 약 47.7%, 취업자가 약 52.3%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2.7%로 거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20.3%, 남성이 79.7%의 비율을 보였으며,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72.5%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미혼인 사람이 16.4%, 기혼인 사람이 70.4%, 이혼·사별인 사람이 13.3%임. 생활보호대상자는 14.6%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

- 취업장애인 중 전문사무직에는 12%의 장애인이 취업해 있었으며, 88%에 해당하는 대다수는 비전문·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노동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는 가정이 확인됨.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44.2%, 상용직이 27.3%, 임시·일용직이 28.5%를 차지하고 있었음. 소속 계층의식은 94.1%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해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체·뇌병변장애인들 중 62.4%가 취업시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생활에서는 49.2%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보다는 취업할 때에 더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就業 關聯 要因 分析

- 취업장애인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었고,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자영업(53.4%) 및 일반사업체(35.3%)가 가장 많았음. 직업재활 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시설내부의 장애인들만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폐쇄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업장애인과 실업장애인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거나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음. 가구주인 경우 실업자보다는 취업자 수가 더 많으나 비가구주인 경우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반대현상을 보임.
- 직업훈련여부가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약 40%는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음.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애인의 약 66%는 취업장애인이었음.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약 83%가 실업 중인 사람임.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중 컴퓨터정보처리분야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계분야로 4.3%의 분포를 보였음.
-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지체장애인은 취업자가 실업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모두 운동기능의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인이 취업에 훨씬 유리함.
- 무학 및 초등학교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으나,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미침.
- 기혼인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는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할 때나 직장생활에서 차별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지만, 나머지는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차별의 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속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교육년수는 취업자가 더 높으며, 차별을 당한 경험은 취업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은 취업자 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가구소득은 취업자집단이 더 높았음. 일상생활동작능력 점수는 취업자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라. 就業 欲求 分析

-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실업중인 장애인들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43%였고, 57%는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장애인들이 희망근무형태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전일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29.9%에 달했음. 취업 중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일제(87.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업장애인들의 희망 직종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음.
- 실업장애인들의 희망 취업장소는 일반사업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정부기관, 장애인단체·기관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취업장애인들은 자영업, 일반사업체, 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남.
 - 희망 취업형태는 다수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선호함.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실업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들은 직업능력 개발을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음.

마. 所得 關聯 要因 分析

1) 從屬變數

- 취업한 장애인의 시간당 평균임금의 로그값을 사용함.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본 연구에서도 임금분포를 감안하여 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사용함.

2) 獨立變數

- 인적자본 변수로 기능제한 정도, 교육수준, 직업훈련 이수여부, 근속년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장애유형, 노동시장 변수로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분야, 사회차별경험을 사용함.

3) 分析 結果

- 교육수준은 교육년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지만 기능제한과 직업훈련 이수여부는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근속년수는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령의 증가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형태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인 경우는 비가구주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경제활동분야에서는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직장생활 차별경험에서는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이 직장생활에서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음.

〈表 4〉 獨立變數들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수준	0.05112	0.252***
기능제한	-0.00058	-0.017
직업훈련여부(비이수 기준)	-0.092	-0.017
근속년수	0.0095	0.159***
성(여성기준)	0.126	0.055
연령	0.089	1.181***
연령제곱	-0.001	-1.305***
결혼 상태(미혼 기준)		
- 기혼	0.063	0.035
- 이혼·사별	-0.140	-0.055
가구주(비가구주 기준)	0.327	0.164***
장애유형	0.052	0.014
활동분야(비전문직기준)	0.287	0.135***
종사상지위(임시·일용기준)		
- 차영업·고용주	-0.139	-0.094*
- 상용직	-0.015	-0.010
직장생활 차별 경험	0.0533	0.088**
상수		-2.410
R-square		0.264
(F)		13.428***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4) 分析結果 要約

- 취업률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취업여부와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연령, 성별, 결혼 형태, 가구주 여부, 장애유형, 일상생활동작능력, 차별 경험 정도, 교육정도, 총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훈련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 인적자본변수에서는 교육수준 및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변수와 기능제한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인구조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비가구주에 비해 가구주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장애유형, 결혼형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 노동시장변수에서는 경제활동분야와 차별경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비전문·생산직에 비해 전문·사무직의 임금이 높았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第 2 節 視覺障礙

1. 職業的 特性

- 보는 활동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기능임. 따라서 시각기능이 손상·저하된 시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업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시각손상 그리고 이에 따른 기능적 제한 및 참여의 제한이 대부분의 직업생활 영역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職業再活 및 職業生活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배타적·우선적 접근을 보장하는 유보고용이나 우선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마직종을 시각장애인의 專業職種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통신판매나 컴퓨터속기 등의 새로운 직종을 시각장애인의 適合 職種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직종을 통해 실제 취업을 하거나 자영을 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적 성과는 다소 미약함.

2. 實態 分析

가. 分析 對象

□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시각장애인은 513명이었고, 이 중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한,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257명이었음.

나. 分析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 교육은 약 9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약 44세였다. 가구 전체의 총소득은 평균 약 128만원이었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34만원이었음.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2.94로서 가끔 차별을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14년 4개월,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소득은 평균 96만 5천원이었음.
-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시력은 양안 모두 교정시력이 0.02 미만인 경우가 28.8%였음.
- 취업자가 약 59.5%, 실업자가 약 40.5%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1.3%였음.
-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32.7%, 남성이 67.3%의 비율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장애인 중 61.9%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미혼이 17.9%, 기혼이 67.3%, 이혼·사별이 14.7%로 나타났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19.8%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음.
- 취업장애인 중 전문사무직에는 16.3%, 83.7%에 해당하는 대다수는 비전문·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47.7%, 상용직이 22.3%, 임시·일용직이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소속 계층의식은 90.6%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장애인들 중 54.6%가 취업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함. 직장생활에서는 42.4%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함.

다. 就業 關聯 要因分析

-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각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은 전체의 59.5%였음. 취업장애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일반사업체(32.7%),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3.9%), 장애인 관련

기관(1.3%)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비중이 높아,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이거나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음.
- 학력과 직업훈련여부는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음.
 -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46.5%,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가 7.6%임.
- 차별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障礙程度에 따른 취업분포의 차이를 보면, 兩眼이 모두 0.02 이하인 경우 즉, 重症度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았음.
- 연령은 취업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라. 就業 欲求 分析

- 실업시각장애인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자의 55.8%였고, 44.2%는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전체의 43.3%가 장애로 인한 직업생활의 곤란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적합한 직종이 없다(15.4%), 회사의 부정적 태도(7.7%)의 순으로 지적함.

- 失業 障礙人들이 희망하는 勤務形態는 74.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일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25.9%에 달함. 취업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일제(86.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장애인들의 희망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전문가 순으로 나타남. 희망 취업장소는 취업·실업장애인 모두 자영업을 가장 많이 원함. 희망취업형태는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출근근무를 가장 선호함.
-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업자들은 ‘職業 能力 開發’을, 취업자들은 賃金 補助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고,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認識改善 活動과 就業情報提供도 중요한 국가 역할이라고 봄.

마. 經濟活動參加 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變數

- 경제활동의 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함.
 - 경제활동 참가여부를 從屬變數로 설정하고 1)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모형 I), 2) 의료적 변수로 장애의 중증도 여부,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모형 II), 3) 심리적 변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모형 III) 등을 獨立變數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 유무 그리고 성별임.

- 모형 II에서 경제활동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는 도움의 필요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외부불편정도였음.
- 모형 III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의미를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음.
- 통합모형(모형IV)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음.

〈表 5〉 經濟活動 參與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성별(남성)	0.6355*			-0.3615
연령	0.0012			-0.0854
가구주여부	0.5117			1.4182
결혼상태(배우자 유)	0.8042**			0.7527
교육연한	0.1136			0.0136
가구소득	0.0026			0.0032
장애중증도 여부		0.1265		-0.3186
장애발생시기		-0.0027		-0.0861
일상생활도움정도		-0.3657**		-0.1515
외부활동불편정도		0.2871*		-0.0920
건강상태		-0.4512**		0.4815
비장애인인식			0.1778	0.4687
자아인식			0.6614	-0.5660
차별경험			0.3430	0.6173
상수	-1.1153	2.2052	-0.6367	1.8377
Goodness of Fit	317.652	256.694	83.166	82.389
Model Chi-Square	28.283 (p=0.0001)	30.159 (p<0.0005)	3.742 (p=0.2908)	12.090 (p=0.5991)
Nagelkerke - R^2	0.149	0.163	0.076	0.240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바. 就業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變數

-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로짓분석을 실시함.

- 모형 I 에 의하면 가구주여부, 배우자유무 그리고 家口所得 등이 취업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
- 모형 II 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음.
- 모형III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파악되지 않았음.
- 통합모형(모형IV)에서는 결혼상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表 6〉 就業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성별(남성)	0.2619			-0.3068
연령	-0.0033			-0.0467
가구주여부	0.6832*			0.9209
결혼상태(유배우)	1.2475***			1.4229*
교육연한	-0.0306			0.0861
가구소득	0.0060***			0.0053
장애중증도(중증)		0.1352		0.1931
장애발생시기		-0.0040		-0.0849
일상생활도움정도		-0.3862**		-0.3872
외부활동불편정도		0.1647		-0.1162
건강상태		-0.3449*		0.2224
비장애인인식			-0.1233	0.0404
자아인식			0.1087	-0.8864
차별경험			0.3904	0.4895
상수	-1.4249	1.6645	0.0240	1.4562
Goodness of Fit	765.380	251.523	80.068	75.528
Model Chi-Square	50.310 (p<0.00005)	24.643 (p=0.0002)	2.391 (p=0.4953)	17.695 (p=0.2210)
Nagelkerke - R^2	0.240	0.126	0.043	0.293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사.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 취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음.

- 개인소득을 從屬變數로 설정하고 1)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모형 I), 2) 의료적 변수로 장애의 중증도 여부,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 정도, 건강상태(모형 II), 3) 심리적 변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모형 III), 4) 취업직종 중 세개의 假變數 즉, ① 서비스직 여부, ② 전문직·준전문직 여부, ③ 사무직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모형 I 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았음.
- 모형 II 에서 외부활동이 불편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많았음.
- 모형 III 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파악되지 않았음.
- 모형 IV 에서는 전문직 그리고 준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사무직인 경우 소득이 많았고, 서비스직 여부는 소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통합모형(모형 V) 에서는 연령, 장애정도,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表 7〉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성별(남성)	23.265				34.128
연령	-4.39E-02				0.713
가구주여부	23.302				-4.471
결혼상태(유배우)	33.229**				10.760
교육연한	17.220***				12.219**
가구소득	0.278***				0.053
장애중증도(중증)		-29.236			-42.141*
장애발생시기		0.585			-1.002
일상생활도움정도		2.264			-3.539
외부활동불편정도		10.860*			5.482
건강상태		-15.686			-9.380
비장애인인식			4.055*		1.117
자아인식			10.071*		-2.100
차별경험			6.957		6.522
전문직·준전문직†				75.527***	57.204*
서비스·판매직†				47.638*	5.730
사무직†				-16.473	41.451*
상수	-79.041	95.505	40.794	90.473	-43.242
R square	0.481	0.130	0.051	0.129	0.764
F	20.676 (p<0.0005)	4.021 (p=0.002)	0.939 (p=0.428)	6.793 (p<0.0005)	3.125 (p=0.002)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第 3 節 聽覺·言語障礙

1. 聽覺·言語障礙人的 概念

- 청각장애는 聽力障礙와 平衡機能障礙로 구분되는데,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함.
-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社會生活面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2. 聽覺·言語障礙人的 職業的 特性

□ 聽覺障礙人

- 청각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실업보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데 意思疏通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가 됨.
- 청각장애인의 고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나은 조명을 필요로 함.
 - 청각장애인 중 소음이 진동감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할 경우 더욱 불편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을 막기 위하여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함.
 - 보청기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室內音響을 고려해야 함.
 - 고용계획수립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시 재활상담사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활용을 고려해야 함.

□ 言語障礙人

-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동일한 직업적 특성을 가짐. 다만, 대부분의 사회적·직업적 환경은 口話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를 수반할 경우 큰 단점이 될 수 있음.
- 언어장애인의 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家族支援과 職業相談으로, 특히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은 직업상의 대인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 함.

3. 實態分析

가. 聽覺·言語障礙人的 一般的 特性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각·언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3%인 약 34만 9천명으로 추정됨.
- 청각·언어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4.8세이고, 가구소득은 104만 3천원, 교육연한은 8.8년으로 중학교 중퇴의 수준이며, 장애기간은 21.8년, 그리고 차별경험은 2.57로 차별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청각·언어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4만원이었고 개인월평균 소득은 71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00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인 233만원의 약 45%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구사회적 특성
 - 성별로는 남자가 64.6%, 여자가 35.4%를 차지하였고, 결혼상태는 有配偶(56.4%), 未婚(31.1%), 死別·離婚(12.5%)의 순으로 나타남.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의 45.4%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自家用은 16.4%가, 컴퓨터는 7.6%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보유율을 보임.
- 의료적 특성
 - 장애기간은 평균 21.8년이었고, 일상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57.9%로 나

타남.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한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내지 매우 불편하다’고 한 경우는 모두 합하여 58.1%인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건강하다’가 43.6%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비슷하였음. 障礙原因은 비산업재해인 경우가 97.8%였음.

□ 심리적 특성

- 社會的 差別程度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취학, 결혼, 학교생활 등에서 더 많은 사회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체의 62%가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78.2%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직업적 특성

- 전체 청각·언어장애인의 약 38%가 취업한 상태이며, 취업 청각·언어장애인의 就業分野를 보면, 주로 농어업(39.5%), 단순노무직(29.5%), 서비스·판매직(12.0%)에 편중되어 있음.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36.0%), 전일제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21.0%), 무급가족종사자(17.5%)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수입(48.7%), 업무과다(16.2%),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3.7%) 등을 지적함. 그러나 어려움이 없다고 한 경우도 22.0%나 됨.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경우가 44.5%로 가장 많

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족과 불만족정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었음.

- 취업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52.2%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를 희망 하였고, 희망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가 81.9%로 매우 높았음. 희 망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로자(29.8%), 농·어업숙련노동자 (24.2%),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17.4%)의 순으로 나타남. 취 업을 희망하는 곳으로는 자영업(41.1%), 일반사업체(32.7%),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11.7%)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취업형태로는 출 근근무(78.3%)가 가장 많았음.
- 직업훈련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95.1%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 어서(35.0%),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힘들어서(31.6%),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23.8%)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에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認識改善(24.3%), 職業能力 開發(23.3%), 賃金補助(20.9%)의 순으 로 나타남.

나. 經濟活動類型別 雇傭 現況

- 분석자료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연령대의 청각·언어장애인 511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를 분석함.

1) 非經濟活動障礙人과 經濟活動障礙人의 雇傭 現況

- 장애기간은 비경제활동장애인이 평균 16년, 경제활동장애인이 평 균 29년으로 경제활동장애인이 더 길게 나타남. 사회차별 경험은

경제활동장애인이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더 적었음.

-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상태에 많이 있으며, 가구주일수록 경제활동장애인이 많음. 그리고 유배우의 경우에 경제활동장애인이 많음.
- 자가용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경제활동상태의 장애인이 많으며, 일상생활 도움정도 및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장애인인 많음.

2) 失業障礙人과 就業障礙人의 雇傭 現況

- 취업장애인의 家口所得은 108만원, 실업장애인의 가구소득은 81만 9천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사회차별경험은 취업·실업 두 집단간 차이가 없음.
-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간의 가구주 여부, 성별, 결혼상태, 자가용 보유여부, 컴퓨터 보유여부,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일반적인 건강상태,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장애인식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3)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으로 구분된 경제활동 유형임.
 - 독립변수는 인구사회적 변수(가구주 여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 자가용·컴퓨터 보유여부), 의료적 변수(장애 기간, 장애정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심리적 변수(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차별경험, 장애인의 자아인식)를 사용함.

- 비경제활동과 취업의 비교에서는 비가구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클수록, 자신을 장애인을 인식할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表 8〉 聽覺·言語障礙人的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 分析結果

변수	비경제/취업	실업/취업	실업/비경제
상수	-0.640	-32.343	-31.702
가구주여부	-1.523**	0.277	1.801
성별	-0.046	1.620	1.666
연령	0.066**	0.044	-0.022
결혼상태	-0.540	-2.968*	-2.428
교육연한	0.185	0.121	-0.064
가구소득	-0.003	0.000	0.002
자가용 보유여부	-1.501***	-2.931*	-1.429
컴퓨터 보유여부	-0.485	-0.457	0.028
장애기간	-0.059***	-0.018	0.041
장애정도	-0.579*	1.441*	2.020***
일상생활 도움정도	0.607***	0.650	0.043
외부활동 불편정도	-0.091	1.051**	1.142**
건강상태	-0.035	2.316***	2.351***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0.148	0.045	0.193
사회차별 정도	-0.066	0.002	0.067
장애인 자아인식	1.074**	18.767	17.693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 실업과 취업의 비교에서는 미혼상태일수록,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비교에서는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第 4 節 精神遲滯障礙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추정된 장애인 1,449,496명 중 정신지체장애인은 143,162명에 달함. 실제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지체 장애인 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인의 비중은 74.9%에 이룸.

1. 職業的 特性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함.
- 대인관계 등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짐.

2. 實態 分析

가. 分析 對象

-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지체장애인은 278명이었는데, 이 중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대상과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함. 그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211명이었음.

나. 分析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 먼저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언어장애는 평균 2.40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능력은 평균 4.47로서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한 수준임. 교육은 약 8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약 33세, 가구소득은 약 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1.91로서 차별을 많이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00만원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 중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약 53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약 8년 9개월 정도였으며,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소득은 평균 약 40만 5천원이었음.
- 실업자가 약 74.9%, 취업자가 약 25.1%로 나타나 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7%로 거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32.2%, 남성이 77.8%의 비율을 보였으며, 17.1%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미혼이 76.3%, 기혼이 13.7%, 이혼·사별인 사람이 9.9%로 나타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23.7%를 차지함.
- 취업장애인들은 모두 비전문·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9.3%, 상용직이 22.2%, 임시·일용직이 68.5%를 차지하고 있었고, 소속 계층 의식은 97.1%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함. 84.7%가 취업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생활에서는 82.1%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함.

다. 就業 關聯 要因 分析

- 취업 장애인과 실업 장애인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성별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여부, 직업훈련여부가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아무도 없었는데, 훈련받지 않은 이유로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라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을 넘는 51.5%에 해당했음.
- 결혼형태별 취업여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혼인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차별경험정도에 따른 취업분포의 차이는, 취업할 때나 직장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속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교육년수는 취업자가 오히려 실업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을 당한 경험과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라. 就業欲求 分析

- 실업정신지체장애인들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자의 23.6%였음. 실업장애인들의 희망근무형태는 59.5%가 전일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40.5%에 달함. 실업장애인들의 희망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취업장소에 대해서는 실업장애인들은 장애인관련단체나 기관을, 취업장애인들은 일반사업체를 가장 많이 희망함. 희망취업 형태는 실업정신지체장애인들은 출근근무와 재택근무를 혼합한 형

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 장애인들은 출근근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업자들은 ‘직업 능력 개발’을, 취업자들은 ‘임금보조’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음.

마. 所得 關聯 要因 分析

- 취업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로짓회귀분석을 함.

〈表 9〉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수준	-.154	-.632*
언어능력제한	-.204	-.214
학습능력	-.178	-.318
직업훈련여부(비이수 기준)	1.029	.365
근속년수	-.048	-.436
성(여성기준)	-2.101	-.745
연령	.258	2.576
연령제곱	-.0048	-3.156
결혼 상태(미혼 기준)		
- 기혼	-.731	-.349
- 이혼·사별	-3.729	-.956*
가구주(비가구주 기준)	.729	.437
종사상지위(임시·일용기준)		
- 자영업·고용주	.983	.398
- 상용직	-.145	-.090
직장생활 차별 경험	.042	.057
상수		1.110
R-square		.200
(F)		1.393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하나도 없음. 이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메카니즘으로 임금이 결정됨을 의미함.

2. 分析結果 要約

-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취업률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취업여부와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성별, 결혼 형태, 장애정도, 차별 경험 정도, 교육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주여부, 직업훈련 이수여부, 연령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로짓회귀분석 결과 성별에서 남성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미혼에 비해 기혼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교육년수는 증가할수록 실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第 5 節 精神障碍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출연율은 인구 천명당 1.2건이며, 이를 전국 재가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 정신장애인은 56,461명으로 추정됨. 또한 시설장애인을 합칠 경우 정신장애의 출연율은 인구 천명당 1.7건으로 전국의 법정 정신장애인은 78,568명으로 추정됨.

-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만성적 성격과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며, 특히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개별화하여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또한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많이 겪고 있음.
- 그 동안 정신장애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새로이 장애범주로 포함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현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1. 調査對象自의 一般的 特性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정신장애인은 179명이며, 이 중 본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장애인 159명임.
 - 남자가 55.5%, 여자가 44.7%를 차지하며, 연령대는 30대(33.6%), 40대(30.2%)가 가장 많으며, 50대(18.9%), 20대(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이상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이상은 13.2%를 차지함. 결혼상태는 미혼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5.2%, 이혼한 경우가 20.8%로 나타남. 정신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24.5%를 차지하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75.5%임.
 -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는 무직인 경우가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가 15.7%로 대부분이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농·어업 근로자(5.9%)와 단순노무직 근로자(5.9%)가 대부분을

차지함. 종사상의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25.0%), 자영업자(20.0%), 상용근로자(15%), 임시근로자(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신장애인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6.9%임.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가 15.7%로 나타남.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43.4%), 의료보호인 경우도 34.6%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대상 정신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택보호(15.7%), 자활보호(11.3%),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4.4%)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는 평균 3명이며, 가구소득은 평균 약 88만원이었음.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84만원이었으며, 이 중 의료비는 한달 평균 약 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장애인의 가구가 한달동안 ‘그럭저럭’살아가는데 필요한 희망 생활비는 평균 약 100만원으로 나타남.

2. 精神科的 特性

- 정신장애 발생시기는 98% 이상이 돌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발생 연령은 20대가 가장 높으며(32.9%), 10대(26.3%), 30대(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신질환명은 정신분열증이 58.9%를 차지하였으며, 반복성 우울장애가 18.4%, 양극성 정동장애가 9.5%를 차지함. 장애기간은 평균 약 15년임.

3. 精神障碍人的 就業 및 職業再活 現況

- 전체 정신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은 10.4%를 차지함.

- 취업 장애인 중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자영업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취업장애인 중 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18.7%를 차지하고 있었음.
- 취업장애인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47일이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나타남.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37.08만원이었고,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17.6%를 차지함.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52.9%,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가 35.3%,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1.8%로 정신장애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 취업하고 있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8%였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음.
 -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는 31.4%로 나타났으며, 취업욕구가 없는 경우가 68.6%로 나타났음. 희망근무형태는 전일제가 68.8%, 시간제가 31.2%로 나타났고, 희망직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희망취업장소는 자영업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사업체(30.8%)였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관련단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각 12.2%를 차지함. 희망취업형태는 출근근무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택근무도 16.3%로 나타났음. 지원고용 10.2%, 보호고용 6.1%를 차지함.

- 직업훈련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정신장애인 전체의 97.5%를 차지하였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7.9%를 차지함.
-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주요 분야는 희망분야가 없다는 비율이 79.1%로 직업훈련 분야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적응 훈련(22.0%), 임금보조(18.9%), 취업정보 제공(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4. 經濟活動類型에 따른 精神障碍人の 特性 比較

-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이 약 81.1%를 차지하며, 취업이 약 10.7%, 실업이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유형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가구주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
- 결혼상태별로는 경제활동유형이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진단명에서 정신분열증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보다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으며, 정신분열증이 아닌 기타 정신장애인의 실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정신장애인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에서는 비

경제활동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의 장애인 인식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 주관적 소속계층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취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중하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혼자 외출여부 항목에서는 취업 및 실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가 혼자 외출 가능한 응답 비율이 높음.
- 전체 평균 연령은 41.31세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균연령이 타 경제활동유형에 비해 높으며,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교육연한은 전체적으로 약 10년으로 대략 중학교 졸업이상 정도의 수준이며, 실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교육연한이 가장 길고, 취업정신장애인의 경우 교육연한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평균 87.98만원 수준임.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으며, 취업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음.
- 장애기간은 평균 15년이며, 취업 정신장애인의 장애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정신장애인이 한달동안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희망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정신장애인의 희망생활비가 가장 낮음.
- 사회차별 경험정도는 평균 2.15점으로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사회차별 경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경제유형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비경제활동의 도움정도가 경제활동의 도움정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쁜 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6점으로 충분한 편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은 평균 2.26점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며, 실업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생활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런 편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월 추가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96.64만원, 편차를 고려하여 중간값을 살펴보면, 약 40만원으로 나타났음. 경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의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의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5.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함.

〈表 10〉 精神障碍人的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지트 分析結果

	비경제활동/취업			실업/취업			실업/비경제활동		
	B	Std. Error	Exp(B)	B	Std. Error	Exp(B)	B	Std. Error	Exp(B)
상수항	-7.587	5.308		-13.758	7.820		-6.171	6.133	
성별	-1.387	1.463	0.250	-1.165	1.739	0.312	0.221	1.075	1.248
연령	0.060	0.065	1.062	0.060	0.097	1.062	0.000	0.079	1.000
결혼상태	-1.256	1.522	0.285	-0.827	1.804	0.437	0.429	1.102	1.536
가구주여부	2.799	1.780	16.429	0.554	2.135	1.740	-2.245	1.364	0.106
교육연한	0.336**	0.134	1.399	0.536**	0.210	1.710	0.201	0.171	1.222
가구원수	0.541	0.418	1.718	0.291	0.575	1.338	-0.250	0.452	0.779
가구소득	-0.007	0.012	0.993	-0.008	0.014	0.992	-0.001	0.009	0.999
장애기간	-0.047	0.048	0.954	0.016	0.066	1.016	0.062	0.052	1.064
사회차별	-0.555	0.500	0.574	-0.876	0.654	0.417	-0.321	0.459	0.726
도움필요도	1.705*	0.680	5.500	0.410	0.913	1.506	-1.295*	0.671	0.274
도움충분도	-0.960*	0.462	0.383	0.027	0.761	1.027	0.987	0.659	2.683
외부활동 불편정도	0.567	0.462	1.505	0.345	0.571	1.412	-0.222	0.378	0.801
비장애인의 인식	0.700	0.569	2.014	1.504	0.821	4.501	0.804	0.650	2.234
건강상태	-0.080	0.580	0.923	-0.248	0.852	0.780	-0.168	0.673	0.845
장애인인식	-1.302	0.958	0.272	0.128	1.294	1.137	1.430	0.990	2.087
희망생활비	0.008	0.014	0.353	0.012	0.017	1.012	0.003	0.010	1.003
추가생활비	0.002	0.004	0.195	0.002	0.005	1.002	0.000	0.003	1.000
진단명	0.262	1.037	1.300	3.897*	1.644	49.270	3.635**	1.356	37.903
-2 Log Likelihood	99.856			df			36		
Chi-Square	62.588			Sig.			0.004		

* p<0.05, **p<0.01, ***p<0.001

- 교육연한이 길수록 취업보다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면 할수록 경제활동(취업 및 실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으로 남을 확률이 높음.
- 도움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유형의 차이를 보이는데,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경우가 비경제활동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진단명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 비경제활동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정신분열증이 경우 실업보다는 취업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남. 정신분열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기능수행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비경제활동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며, 그러나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第 6 節 腎臟障礙·心臟障礙

-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 다른 신체장애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아직 까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나 취업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신장장애인의 장애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0.6으로 총 27,050명이며, 심장장애인의 출현율은 1.3으로 59,055명으로 추정됨.
 - 신장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등록된 상태로서, 전체의 83.6%가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은 16.4%임.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가 가장 경한 장애인이 56.8%, 가장 중한 경우는 7.7%로 낮은 특징을 보여 실제 장애등록 인원은 매우 적음.

1. 職業的 特性

가. 腎臟障礙人

- 신장기능 장애인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공투석만 정확하게 실시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투석을 받고 있는 많은 신장기능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다양한 분야의 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음.

나. 心臟障礙人

- 심장질환도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약물치료의 병행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였음. 심장기능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는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就業關聯 實態分析

가. 分析 對象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신장장애인은 67명이며, 심장장애인은 122명으로 총 189명임.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신장장애인 59명, 심장장애인 62명 등 총 121명이었음.

나. 分析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주의 여부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2.9%로 비가구주 보다는 다소 많음.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으로서 유배우인 경우가 76%를 차지하고 있음.
- 자신의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이 나쁜 편 52.9%, 매우 나쁨 34.7%로 거의 대부분의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상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 2/3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라도 필요로 하고 있음.
- 외부활동 불편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1.7%이고, 약간 불편하다가 45.8%, 나머지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37.2%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음.
- 사회적 차별 경험에 있어 내부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서 차별경험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취업과 결혼, 직장생활 등이었음.

다. 就業關聯 特性

- 전체 장애인 취업률은 34.2%이지만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는 이보다 훨씬 낮은 취업비율을 보임. 직장유형에 있어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장장애인은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이, 그리고 심장장애인은 일반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소의 차이를 보임.
-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신장과 심장장애의 경우 모두 낮은 수입임. 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신장장애인이 2/3 정도로서 다른 장애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았으나 심장장애인은 반반정도였음.
- 구직활동 여부에 있어서는 신장장애는 비교적 활발한 구직활동을 한 반면, 심장장애는 구직장애인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음. 구직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두 장애 모두 장애로 인해서가 가장 많았음.
- 취업희망비율에 있어서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모두 평균(46.6%)

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낮은 희망률을 보였다. 희망근무형태는 두 장애 모두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취업희망직업은 사무직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신장장애는 30.6%, 심장장애는 32.0%로 현격히 높았음. 희망하는 직장유형에 있어서도 신장장애는 자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반면, 심장장애는 일반 사업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취업희망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신장장애의 경우 재택근무를, 심장장애는 출근근무 이외에 재택근무와 출근근무를 병행하는 형태를 원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신장장애인은 의무고용제도의 준수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49.3세로 40~50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교육년수는 평균 9.7년으로 중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보임. 장애인 가구소득은 월평균 115만원 정도였으며,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약 128만원으로 나타남.
- 취업장애인의 경우 취업기간은 13년 8개월, 월 근로소득은 84만7천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으로 나타났음.

라. 就業 關聯 要因 分析

- 남자의 경우 취업한 장애인은 41.0%인데 비해 여자는 16.7%로 나타남. 취업근무처는 자영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사업체 37.1%,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음.

- 가구주인 경우에는 39.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가구주인 경우에는 17.5%의 취업률을 나타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미혼인 경우는 취업률이 30.0%이고, 기혼인 경우는 32.6%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10.5%로 크게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력과 직업훈련여부는 취업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내부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가 36.8%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취업장애인이었고,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가 34.2%였지만 실업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가 주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음.
- 취업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교육년수는 취업장애인과 실업장애인의 차이가 없었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비롯한 장애정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 就業關聯 欲求

- 미취업 상태인 신장·심장장애인 중 43.8%의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내부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취업 희망비율이 심장장애인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희망근무형태는 70% 정도가 전일제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특히

취업장애인은 전일제를, 실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희망직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순이었음.
- 희망취업장소는 실업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체를, 취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희망근무형태는 전체적으로 출근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적당한 직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를 차지함.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내부장애인은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요구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고용제도 준수, 임금보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취업정보 제공 등이 비교적 높게 지적되었음.

바. 所得關聯 要因分析

1) 變數의 定義 및 測定

- 취업 내부장애인들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근로소득은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앞서 지체장애 부분과 같이 인적자본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에 의해 구분하였음.

〈表 10〉 獨立變數들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변수	B	Beta
교육수준	.084	.108**
직업훈련여부	-1.079	-.148
근속기간	-.004	.332***
일상생활 도움필요도	.395	.062
외출시 불편정도	-.039	.050
건강상태	-.710	-.057**
성	-.004	.075
결혼상태(기준범주=미혼)		
- 기혼	.696	.063
- 이혼·사별	.236	.024
가구주	1.583	-.056
연령	.062	-.073
연령제공	-.595	-.072
장애유형	-.322	-.036
차별정도	.291	.003
종사상 지위(기준=일용·임시)		
- 자영업·고용주	.523	.023
- 상용직	.670	.266
경제활동분야	.329	.125***
상수		2.720
R-square		.231
F		11.049**

주: * p < 0.1, ** p < 0.05, *** p < 0.01

2) 分析結果

- 인적자본변수에서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년한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직업훈련 이수여부는 소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장애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가운데서,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그리고

장애유형,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지만 경제활동분야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문·사무직의 경우 비전문·생산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第 4 章 障礙類型別 職業再活方案

第 1 節 序論

1. 일과 職業再活

- 일이란 인간에게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직업재활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일할 권리와 일할 의무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임. 결국,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이란 장애인이 노동과 직업을 통해 사회에 영구적으로 통합 또는 재통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2. 우리나라 職業再活政策의 現況과 問題

가. 障礙人勞動力 需要 政策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노동력 수요정책은 1990년 제정·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할당고용제임.

- 당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는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1993년부터 2%로 상향조정되었음.
- 2000년 개정·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도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는 5%의 비율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의 수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나. 障 碍 人 勞 働 力 供 給 政 策

- 장애인의 기능 및 학력수준이 낮아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직장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음. 또한, 직업훈련직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직업훈련을 받아도 중증장애인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특히 중증장애인은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직업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훈련만을 계속 받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이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이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력 공급측면에서 직업재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임. 공단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력과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한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인력지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당 기본지원이 연간 6백만원, 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이 연간 1인당 6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인력부족이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윤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임.

3. 障碍人 職業再活의 外國 事例

가. 獨逸

- 독일의 직업재활은 독일사회복지법 제3권(Third Volume of the German Social Welfare Code: SGB III)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직업재활의 중심기관은 고용사무소(Office of Employment: Arbeitsamt)로, 일반적으로 재정지원 뿐 아니라 훈련을 지원하는 책임을 짐.
 -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애인이 직업훈련과정을 마쳐서 가능한 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노동시장에 영구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임.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며, 법적 개념의 장애와 직업 적합성을 갖추어야 함.
- 독일 사회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의 특성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에 통합되거나 통합되어 남아 있을 전망이 심각하게 적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그들은 직업재활에서

지원이 필요함.

- 직업적합성(suitability) 평가는 직업을 성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 1대 1의 상담 외에도 직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직업자문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직업선택, 자원과 직업선택검사 등의 지원을 제공함.
- 모든 직업재활의 출발점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독특한 상황을 점검하고, 특수 상황을 관찰하는 것임.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완전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함.
- 각 개별사례에서 직업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자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용사무소의 전문가 서비스(의료서비스,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함.
- 초기직업통합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원칙은 “가능한 한 정상적이지만, 필요한 만큼 특수하게”라는 것으로, 지원방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 사전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직업훈련센터에서의 지원과정 또는 프로그램과 직업준비의 학교에 기초한 형태임.
 - 산업내, 재활센터내의 직업훈련과 외부기관의 직업훈련임.
 - 표준교육규정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훈련과정에 일치하는 훈련이 가능함.
 -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심리사회 서비스에서 감독하는 추적수퍼비전, 근로와 시범 취업으로 정착하는 기간의 보조금, 근로생활과 취업기간의 보충적인 지원 등을 제공함.

나. 美國

- 1992년 개정 재활법은 (1) 장애인의 취업, 경제적 자립, 독립, 사회로의 통합을 극대화하고, (2) 연방정부가 장애인의 의미 있고 생산적인 취업과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3) 이러한 노력을 하는 주정부와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힘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개정 재활법은 초기면접과정을 줄이고, 수혜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관료제의 폐해를 줄이고, 장애인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활체계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재활법은 재활개입의 결과뿐 아니라 결과까지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이 제정되고 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집단적인 힘을 키우는 장애인리운동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장애인을 돕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전환.
- 미국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법은 근로동기개선법(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임.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활티켓프로그램(Ticket to Work and Self-Sufficiency Program)은 직업평가, 훈련, 배치에서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여러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티켓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음.

第2節 肢體·腦病變障礙人の職業再活

-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가장 큰 직업적 특성은 운동 기능의 제약임. 이러한 운동상의 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정보기술 등 운동기능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직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임.
-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지식노동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의 성격과 고용구조는 ‘근력에서 지력으로’(from brawn to brain) 전환될 전망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지체장애인은 매우 유리함. 이러한 경제적 추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서 차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강화하여, 의무고용 적용사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고용부담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됨.
 - 또한,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에서는 구직절차, 고용, 승진 및 퇴직, 해고, 임금보상, 직업훈련, 기타 고용에 수반되는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내용들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第 3 節 視覺障礙人の 職業再活

- 시각장애인 직종개발이 요구됨.
 - 안마 이외의 직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야 함.
 - 특히, 직종 개발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실제 취업사례의 발굴, 나아가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적합직종 개발은 반드시 선협사례를 통해 고용개발로 연계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의 적합직종의 개발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이라는 前提 하에 해당 직종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선협사례를 발굴, 이를 홍보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함.
- 적합직종의 고용개발에서 집중적인 入職 지원이 요구됨.
 -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는 측면과 함께 입직 단계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사업체에 수용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도록 하는 입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용 기기 및 s/w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됨.
 - 초기 컴퓨터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서적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사무적 직업에 입직하여 생산적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전망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용 기기 및 s/w가 적시에 개발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의 건립이 요구됨.
 -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신설은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에 제한된 기여밖에 할 수 없음. 오히려 직업훈련의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직업훈련 기관의 건립보다는 각각 실시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직업훈련 이후의 고용개발 등에 보다 주력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創業指導 및 보육이 요구됨.
 - 창업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가능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그리고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는 전문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또한 창업과정의 지원 외에도 고객의 확보 또는 관련 수주의 개발 등 일정기간 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보육의 노력도 요구됨.
- 按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설명하는 핵심적 직종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안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안마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적 안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실제 치료적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第 4 節 聽覺·言語障礙人の 職業再活

- 사업체로부터의 구직 요구시 취업욕구도 강하고 책임감 있는 가구

주를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영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적합직종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직업기술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인이 취업하기까지는 심리적, 신체적 재활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함.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재활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
- 사업장내의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의사소통 가능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작업장내 수화통역사 배치, 공중팩시밀리, 작업장내 화이트보드 설치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의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함.
- 청각·언어장애인의 취업증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도움정도의 최소화 및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정기적인 건강진단 기회의 제공을 통해 가능할 것임.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청기, 인공후드 등의 보장구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장애인들도 제도적으로 소득보장체계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나 취업가능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전체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장애수당 지급을 통해 고려해 볼 만함.

- 컴퓨터·인터넷 확대보급을 통한 정보복지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보와 지식사회라는 환경변화로 교육과 훈련이 인터넷이나 사이버를 통한 원격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도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고용이나 재택근무로의 변화가 예상됨. 그러므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격영상교육의 실시 및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비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의 팔과 다리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장애인의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임. 따라서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차량의 주문제작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작업장내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시설로는 작업지시나 동료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화이트보드 설치, 비상점멸램프, 경고등이 해당됨.

第 5 節 精神遲滯人の 職業再活

- 지원고용을 활성화하여야 함. 지원고용은 유급 고용으로, 집중적인 계속지원을 요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비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유급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사례관리 기법을 충실히 사용하여야 함.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生涯週期的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적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사례중심적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담당 기관의 역할을 대폭 재편하여야 함. 사례관리자는 처음 서비스를 의뢰받는 기관의 서비스 담당자일수록 효율적임.
-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높여야 함. 이것은 노동력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노동 수요처는 보호작업장(근로시설 포함)이 대부분임. 그러나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매우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고용이 쉽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의 **Remploy**공사와 스웨덴의 **Samhall**임.

第 6 節 精神障礙人的 職業再活

- 정신장애인의 취업률 증가 및 취업지속화 방안
 - 취업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반기업체의 취업률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제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념이 기본적 바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노동수요를 높이기 위해 임금보

조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자영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취업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준비 및 훈련 과정 발굴

- 취업희망 정신장애인의 경우(전체 조사대상 정신장애인 중 30%) 취업준비과정 및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며,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 않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동기와 재활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방법이 가장 필요함.
- 정신보건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직업재활기관은 정신보건기관으로부터 구직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 직업재활가능자 선별, 직업상담원 및 직무지도원 재교육 및 취업장애인의 사후관리를 비롯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신보건기관은 정신장애인의 직업배치(보호고용, 지원고용,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와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신장애인의 경우 직업동기가 약하고 장기간 입원체험으로 인한 사회성 감퇴는 물론이고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취업 전 직업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형태의 직업배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환경변화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다양한 홍보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정신장애인 역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노력이 필요함.

第 7 節 腎臟障礙·心臟障礙의 職業再活

- 내부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장애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취업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업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직업재활 체계내에 내부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는 다른 장애에 비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장애인에 대해 구직·구인, 직업훈련, 알선 등의 직업재활체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 내부장애인에 적합한 고용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방안도 요구됨. 취업 도중에 발병하여 장애를 갖게된 내부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환배치를 하거나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일정한 투약이나 휴식시간을 갖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스트레스, 공포감 등의 부정적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을 대

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

第 5 章 結論 및 政策 提言

第 1 節 結論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보상이 장애인과 장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 장애유형에 따라 경제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재활방안을 강구해야 함. 일상생활도움정도, 외부활동불편정도, 건강상태 등 장애정도와 관련된 변수들도 경제활동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교육이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장애인의 취업에서 또 다른 주목할 사실은 일상생활도움정도와 외부생활불편정도가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이는 장애정도가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경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원인과 장애유형은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연한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임.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장애인의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는 모두 임금과 관련이 없었음.
- 장애인의 직종도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무직이 다른 모든 직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사무직에서 직종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차별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장애인의 취업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는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영업의 운영이 직장과 관련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임.
-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여부가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시각장애인 대상의 직업훈련이 안마외에는 거의 없고,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이 없이도 취업하는 직업이기 때문임.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第2節 政策提言

- 교육과 직업훈련
-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장애인에게 교육과 훈

련을 제공하는 것임.

- 현재 노동시장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을 요구함. 따라서 장애인에게 컴퓨터 기술의 교육과 훈련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정부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재활전문가는 사업체와 장애인근로자 모두를 위해 대변할 책임이 있음. 재활전문가는 노동시장의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합리적이며, 가격이 적당하며, 실제적인 재활기술을 발견할 책임이 있음.
-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이 직업훈련, 취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달체계의 연계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부서,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함.
- 장애의 특성에 따르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을 계속 개발하여야 함.
- 직업훈련이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함. 특히,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보호고용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 생산작업을

통해서 작업능력이 증대하게 되면 지원고용을 실시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지원임. 적어도 장애인근로자 15인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 외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과 서류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원이 적어도 각 1명씩 필요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한 또 다른 지원은 경영에 대한 지원임. 새로운 사업품목에 대해서는 경영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주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는 시설설비비를 장기저리로 용자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임금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됨.

□ 법의 제정 및 개정

-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도 장애출현율에 따라 3%로 높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의 社會統合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職業再活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경제적인 자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障礙人雇傭政策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30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는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雇傭割當制(quota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1996년말 0.45%에서 1998년말 0.46%, 1999년말 0.91%로 근소하나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의 비율도 동기간에 0.99%에서 1.15%, 1.33%로 증가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그러나, 여전히 대상기업들은 義務雇傭率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의 혜택이 주로 경증의 지체장애인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經濟活動參加率은 43.9%로 1994년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7%에 비해 17.8% 포인트 낮았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27.4%로 일반인의 2.4%에 비해 25% 포인트 높았다(정기원외, 1996).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3%보다 13.5% 포인트 낮아서 5년전보다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5년전보다 1%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失業率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국민 전체의 실업률은 3.8%(2000년 2/4분기)로, 장애인의 실업률은 24.6% 포인트 높아서 전체 실업률의 비하면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1995년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7만 9천원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급여 115만 8천원(1995년 2/4분기, 노동부)의 67%였지만, 2000년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9만 2천원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급여 161만원(2000년 2/4분기, 노동부)의 49%에 불과하였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5만 2천원이 오른 반면, 취업장애인의 勤勞所得은 1만 3천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家口所得은 1995년 99만 9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 180만원의 55.5%에서 2000년 108만 2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233만 1천원의 46.4%로 오히려 저하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정기원외, 1996; 변용찬외, 2000).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고, 또 현 정부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200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두고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방안을 규범적 제안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第 2 節 研究의 資料 및 研究方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로, 2000년에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하여 200개의 표본지역을 선정하였고, 지역당 220가구, 총 44,000가구를 층화표본추출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국 842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방문가구수는 44,128 가구이며, 이 중 39,411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중에서 파악된 재가장애인의 수는 4,125

명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19명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4,125명의 재가장애인 중에서 노동연령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부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장애인의 총 수는 2,259명이었다.¹⁾²⁾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는 빈도분포와 평균 등의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증, t-검증, 회귀분석, 로짓분석 및 다항로짓분석 등이다. 기술통계는 전체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카이제곱검증과 t-검증은 전체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은 전체 장애인과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로짓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은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로짓(Logit)분석은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從屬變數인 경제활동 참가여부와 취업여부는 二項變數이기 때문에 로짓분석이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 또 다른 從屬變數인 경제활동상태는 범주가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인 범주변수이며, 세 범주 이상의 名目變數를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이다(Maddala,

1)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전체 장애인의 수를 파악할 필요성 때문에 가중치를 사용했지만, 본 보고서는 여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2)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63만 6천명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였고, 이 중 취업자는 45만 5천명, 실업자는 18만명으로 추정되었다.

1983). 따라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짓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분석을 위한 LIMDEP³⁾을 사용하였다.

第 3 節 研究의 構成

제2장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僱傭現況을 經濟活動狀態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비경제활동 장애인과 경제활동 장애인, 그리고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 특성, 장애관련 특성 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통계를 제시하여 비교했을 뿐 아니라 t-검증을 통해서 양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非經濟活動, 失業, 就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다항로짓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多重回歸分析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을 지체 및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그리고 내부장애(신장 및 신장)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인 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3) LIMDEP은 LIMited DEPendent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이다. 여기에서 Limited Dependent 변수란 이항변수, 다항변수 등 연속변수가 아닌 변수들을 말한다.

第 2 章 障礙人 雇傭 現況

第 1 節 勞動年齡帶 障礙人의 特性

본 연구의 대상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남성은 75.7%, 여성은 24.3%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4 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중에서 가구주는 64.9%, 비가구주는 35.1%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22.1%, 기혼이 63.0%, 이혼 또는 사별이 14.9%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보면, 평균 교육연한은 8.29년으로 중등학교의 교육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소득이 104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表 2-1-1〉 人口學的 變數의 平均

변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교육연한	장애기간
평균	45.9	3.44	104.9	8.29	20.12
표준편차	12.2	1.49	82.3	4.59	16.43
최저	15.0	1.00	0.0	0.0	0.00
최대	64.0	10.00	750.0	18.0	64.00

〈表 2-1-2〉 人 口 學 的 變 數 的 分 布

변수	범주	비율(명)
성별	남자	75.7%(1710)
	여자	24.3%(549)
가구주여부	가구주	64.9%(1465)
	비가구주	35.1%(794)
결혼상태	미혼	22.1%(499)
	기혼	63.0%(1423)
	이혼·사별	14.9%(336)

장애와 관련되어서, 주된 장애의 유형에서는 지체장애가 49.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시각장애가 11.9%, 뇌병변장애가 11.2%, 청각장애가 8.1%, 정신지체가 7.7%였으며, 발달장애가 0.1%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2000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장애범주인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는 각각 5.2%, 2.1%, 2.0%로 조사되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평균 障 碍 期 間은 20.12년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原因을 살펴보면, 선천적 원인이 5.0%, 출생시 원인이 1.8%, 후천적 원인 중에서 질병이 32.1%, 교통사고가 11.8%, 산업재해 12.7%, 기타 후천적 원인이 27.3%, 원인불명이 9.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장애의 원인은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선천적 원인이나 출생시 원인보다 훨씬 중요한 장애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장애인 재활도 중요하지만 장애의 豫 防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表 2-1-3〉 障碍類型과 障碍原因의 分布

장애유형	비율(명)	장애원인	비율(명)
지체장애	49.5%(1316)	선천적 원인	5.0%(112)
뇌병변장애	11.2%(252)	출생시 원인	1.8%(40)
시각장애	11.9%(269)	질병	32.1%(723)
청각장애	8.1%(183)	교통사고	11.8%(267)
언어장애	2.2%(50)	산업재해	12.7%(286)
정신지체	7.7%(173)	기타 후천적	27.3%(615)
발달장애	0.1%(2)	원인불명	9.4%(212)
정신장애	5.2%(118)		
신장장애	2.1%(47)		
심장장애	2.0%(46)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비교적 건강하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이 나쁜 편’이라는 응답도 41.0%에 달했다. 그러나, ‘매우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은 13.4%로 비교적 낮았다.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3%로 과반수를 넘는 장애인이 현재 상태에서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혼자서’ 한다는 응답도 14.5%,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6%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장애인은 1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활동의 불편정도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37.7%여서,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약간 불편하다’는 응답도 33.4%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연령대 장애인의 2/3는 큰 불편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에서는 인식하는 경우가 70.9%,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29.1%로 아직 상당수의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

까지 약 1/3의 장애인이 장애인의 범주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 이거나 또는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7.9%에 달해서, 아직 우리 사회 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表 2-1-4〉 健康變數의 分布

(단위: %, 명)

변수	범주	비율 (명)
건강상태	매우 건강	4.3 (96)
	비교적 건강	41.3 (933)
	건강이 나쁜 편	41.0 (925)
	매우 건강이 나쁨	13.4 (303)
일상생활의 도움필요 정도	모두 혼자서	53.3 (1,204)
	대부분 혼자서	14.5 (328)
	일부 도움필요	17.6 (398)
	대부분 도움필요	8.1 (184)
	거의 모두 도움필요	6.4 (144)
외부활동의 불편정도	전혀 외출못함	3.9 (89)
	매우 불편	24.9 (563)
	약간 불편	33.4 (753)
	불편하지 않음	8.4 (190)
	거의 불편하지 않음	29.3 (662)
자아의 장애인 인식	예	70.9 (1595)
	아니오	29.1 (655)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용상태	매우 부정적	7.9 (177)
	부정적	49.0 (1099)
	보통	32.7 (733)
	긍정적	10.0 (223)
	매우 긍정적	0.4 (9)

여러 유형의 활동에서 사회적으로 差別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 경험이 ‘매우 많다’와 ‘많은 편이다’의 응답의 분포를 살펴 보았다. 就學에서는 응답자의 47.4%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學校生活에서는 51.5%, 結婚에서는 59.5%, 就業에서는 63.8%, 職場生活에서는 51.5%, 地域社會生活에서는 30.2%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가장 차별의 경험이 큰 활동유형은 취업으로 나타났다. 취업에서는 거의 2/3에 가까운 장애인이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여서, 차별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시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에서도 차별의 경험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계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이 51.8%, 비취업이 48.2%로 조사되었다.

〈表 2-1-5〉 社會的 差別變數와 經濟活動狀態의 分布

변수	범주	비율
사회적 차별경험		(단위: %, 명)
취학		47.4
학교생활		51.5
결혼	매우 많다·많은 편이다	59.5
취업		63.8
직장생활		51.5
지역사회생활		30.2
취업여부	비취업	48.2(1,087)
	취업	51.8(1,169)

第 2 節 非經濟活動障 碍 人 과 經 濟 活 動 障 碍 人 的 比 較

이 절에서는 勞 動 年 齡 代 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을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제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동연령대의 장애인을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2-2-1>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人 口 學 的 比 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은 30.4%이지만,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은 20.5%에 불과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69.6%,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69.6%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家 口 主가 55.2%인 반면,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70.8%가 가구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未 婚이 29.4%, 既 婚이 49.8%, 離 婚 또는 死 別이 20.9%였으나,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未 婚이 17.5%, 기혼이 71.3%, 이혼·사별이 11.2%로, 경제활동인구 중에 기혼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가구주이며 결혼을 한 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2-1〉 經濟活動狀態에 따른 人口學的 變數 比較

(단위: %, 명)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전체	통계치
성별	여자	30.4(261)	20.5(286)	24.3(547)	$\chi^2=28.5$ df=1 p<0.0005
	남자	69.6(597)	79.5(1110)	75.7(1707)	
가구주여부	가구주	55.2(474)	70.8(989)	64.9(1463)	$\chi^2=231.2$ df=1 p<0.0005
	비가구주	44.8(384)	29.2(407)	35.1(791)	
결혼상태	미혼	29.4(252)	17.5(244)	22.0(496)	$\chi^2=106.7$ df=2 p<0.0005
	기혼	49.8(427)	71.3(995)	63.1(1422)	
	이혼·사별	20.9(179)	11.2(156)	14.9(335)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장애유형을 비교해 보면, 肢體障礙는 전체 중에서 49.5%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34.8%,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5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視覺障礙와 聽覺障礙도 각각 전체 중에는 11.9%,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15.0%,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腦病變障礙는 전체 중 비율은 11.2%였으나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은 3.9%에 비해 경제활동참여가 상당히 낮았다. 또한, 정신지체와 精神障礙도 전체 중 비율은 각각 7.6%, 5.2%였으나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은 4.7%, 1.7%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發達障礙는 전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및 뇌병변장애가 중증장애가 많아서 특히 직업재활이 어려운 장애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表 2-2-2〉 經 濟 活 動 狀 態 에 따 른 障 碍 類 型 과 障 碍 原 因 比 較
(단위: %, 명)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전체	통계치
장애의 유형	지체장애	34.8(299)	58.5(817)	49.5(1116)	$\chi^2=434.4$ df=9 p<0.0005
	뇌병변장애	23.1(198)	3.9(54)	11.2(252)	
	시각장애	6.9(59)	15.0(210)	11.9(269)	
	청각장애	4.0(34)	10.7(149)	8.1(183)	
	언어장애	2.0(17)	2.4(33)	2.2(50)	
	정신지체	12.5(107)	4.7(65)	7.6(172)	
	발달장애	0.2(2)	0.0(0)	0.1(2)	
	정신장애	10.8(93)	1.7(24)	5.2(117)	
	신장장애	2.9(25)	1.6(22)	2.1(47)	
	심장장애	2.8(24)	1.6(22)	2.0(46)	
장애의 원인	선천적 원인	4.9(42)	5.0(69)	4.9(111)	$\chi^2=111.1$ df=6 p<0.0005
	출생시 원인	2.3(20)	1.4(20)	1.8(40)	
	질병	38.0(326)	28.4(396)	32.1(722)	
	교통사고	10.6(91)	12.6(175)	11.8(266)	
	산업재해	8.5(73)	15.3(213)	12.7(614)	
	기타 후천적 원인불명	20.5(176)	31.5(438)	27.3(614)	
자아의 장애인 인식	예	79.7(681)	65.4(911)	70.9(1592)	$\chi^2=52.4$ df=1 p<0.0005
	아니오	20.3(173)	34.6(481)	29.1(654)	

한편,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장애의 원인에서는 産業災害로 장애가 된 경우는 전체에서는 비중이 12.7%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서는 1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 또한, 기타 後天的 原因(가정에서의 사고 등)과 交通事故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3%, 11.8%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서는 각각 31.5%, 12.6%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 반면에 原因不明 또는 出生時 原因 등으로 장애가 된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 1.8%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서는 각각 5.8%, 1.4%로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의 원인이 장애유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원인불명 또는

출생시 원인 등은 認知能力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장애인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은 65.4%,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애인은 전체에서의 비중은 29.1%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은 34.6%로 나타나,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의 평균 年齡을 비교해보면, 비경제활동장애인은 47.6세, 경제활동장애인은 44.9세로 경제활동장애인의 연령이 약간 낮았다. 가구원 수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이 3.46명, 경제활동이 3.43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家口所得에 있어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가구는 월평균 87만 6천원, 경제활동가구는 115만 3천원으로 3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教育年限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은 7.57년, 경제활동은 8.74년으로 경제활동장애인의 교육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겪은 기간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이 15.89년, 경제활동이 22.72년으로 경제활동장애인이 상당히 더 오래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健康狀態를 비교해보면,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경제활동장애인이 약간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외부활동에서 불편한 정도에서는 비경제활동장애인이 경제활동장애인보다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정도와 외부활동에서 불편한 정도의 차이가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이 경험한 社會的 差別 程度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장

애인이 경제활동장애인보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장애인이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障 碍 程 度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表 2-2-3〉 經 濟 活 動 狀 態 에 따 른 連 續 變 數 比 較

변수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t 값
연령	47.6	44.9	4.991***
가구원 수	3.46	3.43	0.541
가구소득	87.6	115.3	-8.032***
교육연한	7.57	8.74	-5.926***
장애기간	15.89	22.72	-9.891***
건강상태	2.09	2.53	-13.808***
일상생활도움정도	3.23	4.48	-23.189***
외부활동불편도	2.79	3.68	-17.321***
차별경험정도	2.52	2.83	-6.643***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第 3 節 失 業 障 碍 人 과 就 業 障 碍 人 의 比 較

다음으로 경제활동장애인을 失 業 人 口와 就 業 人 口로 나누어 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의 就 業 率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얻고자 한다.

<표 2-3-1>은 취업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별은 취업여부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여부에 따른 취업여부를 비교해 보면, 비가구주는 취업의 비중에서는 27.9%인 반면 실업의 비중에서는 35.7%로 나타나 비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반면에 가구주는 취업인구의 비중에서는 72.1%를 차지하였으나, 실업인구에서는 64.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인 경우 취업에서의 비중이 75.1%였으나 실업에서의 비중은 52.0%로 취업률이 높았다. 그러나, 미혼, 이혼·사별인 경우에는 취업에서의 비중이 각각 15.0%, 9.9%였으나 실업에서의 비중은 30.4%, 17.6%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表 2-3-1〉 就業與否에 따른 人口學的 變數 比較

변수	범주	실업	취업	전체	통계치
성별	여자	17.6(40)	21.0(246)	20.5(286)	$\chi^2=1.37$ df=1 p=0.242
	남자	82.4(187)	79.0(923)	79.5(1110)	
가구주여부	가구주	14.6%	27.9(326)	29.2(407)	$\chi^2=5.59$ df=1 p=0.018
	비가구주	26.9%	72.1(843)	70.8(989)	
결혼상태	미혼	28.9%	15.0(175)	17.5(244)	$\chi^2=50.09$ df=2 p<0.0005
	기혼	14.0%	75.1(877)	71.3(995)	
	이혼·사별	30.3%	9.9(116)	11.2(156)	

〈表 2-3-2〉 就業與否에 따른 障礙類型과 障礙原因 比較

변수	범주	실업	취업	전체	통계치
장애의 유형	지체장애	55.5(126)	59.1(691)	58.5(817)	$\chi^2=23.96$ df=8 p=0.002
	뇌병변장애	7.0(16)	3.3(38)	3.9(54)	
	시각장애	13.7(31)	15.3(179)	15.0(210)	
	청각장애	6.6(15)	11.5(134)	10.7(149)	
	언어장애	2.2(5)	2.4(28)	2.4(33)	
	정신지체	7.5(17)	4.1(48)	4.7(65)	
	정신장애	3.5(8)	1.4(16)	1.7(24)	
	신장장애	2.6(6)	1.4(16)	1.6(22)	
장애의 원인	심장장애	1.3(3)	1.6(19)	1.6(22)	$\chi^2=12.39$ df=6 p=0.054
	선천적 원인	4.0(9)	5.2(60)	5.0(69)	
	출생시 원인	2.2(5)	1.3(15)	1.4(20)	
	질병	24.7(56)	29.2(340)	28.4(396)	
	교통사고	18.1(41)	11.5(134)	12.6(175)	
	산업재해	13.7(31)	15.6(182)	15.3(213)	
자아의 장애인 인식	기타 후천적 원인불명	29.5(67)	31.8(371)	43.8(315)	$\chi^2=6.05$ df=1 p=0.014
	예	7.9(18)	5.4(63)	5.8(81)	
	아니오	27.4(62)	35.9(419)	34.6(481)	
		72.6(164)	64.1(747)	65.4(911)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업여부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취업에서의 비율이 높은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업의 비율이 높은 장애는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장애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정신장애 및 뇌병변장애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의 원인에서는 선천적 원인, 질병, 産業災害이 각각 취업에서의 비율이 각각 5.2%, 29.2%, 1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출생시 원인, 교통사고, 원인불명이 각각 실업에서의 비율이 2.2%, 18.1%, 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자의 취업에서의 비율은 35.9%, 실업에서의 비율은 27.4%이며,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취업에서의 비율은 64.1%, 실업에서의 비율은 72.6%로,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보면, 실업장애인은 42.4세, 취업장애인은 45.4세로 취업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약간 높다. 가구원 수에 있어서는 실업이 3.43명, 취업이 3.42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실업가구는 월평균 81만 9천원, 취업가구는 월평균 121만 9천원으로 4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실업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경제활동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는 어느 정도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家口所得이 낮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教育年限에 있어서는 실업은 9.17년, 취업은 8.65년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업여부에 교육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를 겪은 기간에 있어서는 실업이 19.2

년, 취업이 23.4년으로 취업장애인이 상당히 더 오래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실업장애인보다 취업장애인이 약간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에 日常生活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나 外部活動에서 불편한 정도에서는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의 차이는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의 장애정도 차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여부는 장애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취업여부는 장애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업장애인이 취업장애인보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2-3-3〉 就業與否에 따른 連續變數 比較

변수	실업	취업	t 값
연령	42.4	45.4	-3.393***
가구원 수	3.43	3.42	0.072
가구소득	81.9	121.9	-8.013***
교육연한	9.17	8.65	1.665
장애기간	19.2	23.4	-3.830***
건강상태	2.44	2.55	-2.240*
일상생활도움정도	4.39	4.50	-1.715
외부활동불편도	3.60	3.70	-1.192
차별경험정도	2.52	2.89	-5.283***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第 4 節 障碍人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1. 理論的 背景

가. 人口學的 理論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性別, 年齡, 家口主 與否, 結婚狀態, 家口員 數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性役割에 대한 價値觀으로 인해 남성은 社會生活, 여성은 家庭生活을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차이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에서의 차별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에서의 地位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인 경우에 가구의 所得源으로서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령은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職業技術 및 經驗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혼상태도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데, 결혼을 하여 配偶者가 있으면 生計維持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원 수이다. 취업에 있어서 가구원 수가 많으면 장애인인 경우 생계를 위해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많으면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人的 資本 要因

Adelman & Vogel(1993), Johnson, Greenwood & Schriener(1988)는 장애인 求職技術이 부족하고 취업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며, 근로에 대한 습관이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아직까지 고용주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odmostko(2000)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일할 意思가 부족하다거나 能力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인의 教育水準이 낮고 職業訓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직업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人的 資本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중요한 요인이며, 재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일종의 예비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 또,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로 작업능력을 언급하며,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직업훈련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장애인의 기대수준을 현실에서 수용가능한 수준보다 높임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이선우, 1997).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특수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안마 또는 침구의 직업에 만족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을 원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직장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편, 직업훈련은 훈련을 받는 장애인이 너무 적어서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醫療的 要因

障碍類型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는데, DeLeire(2000)는 미국의 장애인법(ADA)이 장애인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장애인을 身體障碍, 精神障碍, 그리고 기타 장애로 구분하였다. Fuqua, Bathun & Gade(1984)와 Threlkeld & Dejong(1982)는 일반적으로 신체장애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Bordieri, Dreamer & Taylor(1997)와 Dreamer & Bordieri(1985)는 정신장애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Garske & Stewart(1999)와 West & Parent(1995)는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 선우(1997)도 장애유형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의 정도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變數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障碍等級이 한 변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은 아직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등급의 判定은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동등한 장애정도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등급은 장애인 登錄을 한 경우에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비등록장애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몇 가지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代理變數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主觀的 健康狀態,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외부활동의 불편정도가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의 도

움이 적게 필요할수록, 외부활동의 불편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DeLeire(2000)는 장애의 原因과 장애의 期間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의 원인은 産業災禍로 인한 장애와 非産業災禍로 인한 장애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의 기간은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라. 社會制度的 要因

Mank, O'Neill & Jensen(1998)은 社會保障制度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일정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회보장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 生活保護制度하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생계보호비를 받았지만,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액에 따라서 다른 생계보호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게 되면 그만큼 생계보호비가 감소하게 된다. 즉, 사회보장소득의 감소를 우려하여 경제활동을 축소하게 된다는 '受惠 陷穽(benefits trap)'을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적은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다.

마. 勞動市場의 構造的 要因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노동력 需要側

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많은 지원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不利益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Burnham & Housely, 1992; Kregel & Unger, 1993). Nietupski, Hamre-Nietupski, VanderHart & Fishback(1996)은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태도 및 우려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대해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장애인의 고용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從屬變數와 獨立變數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상태이며,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경제활동은 '0', 실업 '1', 취업 '2'로 부호화하였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는 勞動供給측면의 변수 뿐 아니라 노동수요측면의 변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노동공급측면의 변수만을 다루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을 조사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라든지 기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偏見 등 노동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독립변수에는 社會人口學的 變數로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 醫療的 변수로 장애유형, 장애기간,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장애의 원인, 心理的 변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을 사용하였다.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및 가구소득은 연속변수이며,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은 5점 척도로 서열변수이다. 도움의 필요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적게 필요한 것으로,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정도가 적은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것으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사회적 차별이 '매우 많다'에 1점, '거의 없다'에 4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성별,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장애유형, 장애의 원인, 장애인인식은 명목변수이다. 성별은 여성이 '0', 남성이 '1'이며, 가구주여부는 비가구주 '0', 가구주 '1', 장애의 원인은 비산재 '0', 산재 '1', 장애인인식은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0',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1'로 부호화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사별·이혼의 세 범주로 나누어 미혼, 사별·이혼의 두 假變數(dummy variable)로 만들었다.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정신과 내부의 두 가변수로 만들었다. 신체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포함되며, 정신장애에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가 포함되고, 내부장애에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가 포함되었다.

3. 다항로짓의 結果 分析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가 세 개이고, 다항로짓에서는 범주의 수에 따라 추정하는 계수의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범주가 3개인 경우, 추정하는 계수는 $\frac{2\text{범주}}{1\text{범주}}$, $\frac{3\text{범주}}{1\text{범주}}$, $\frac{3\text{범주}}{2\text{범주}}$ 의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1범주('0')는 비경제활동, 2범주('1')는 실업, 3범주('2')는 취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표 2-4-1>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칼

럼은 $\frac{\text{실업}}{\text{비경제활동}}$, $\frac{\text{취업}}{\text{비경제활동}}$, $\frac{\text{취업}}{\text{실업}}$ 의 계수이다.

우선, 실업을 비경제활동과 비교하면, 두 번째 칼럼에서 그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年齡, 教育年限, 障碍期間, 도움필요정도, 외부불편정도, 미혼, 精神障碍, 差別經驗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한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에 머무르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기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처음 장애를 입었을 때는 醫療再活의 필요성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움필요정도에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외부불편정도에서는 외부불편이 적을수록 비경제활동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불편한지 여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 보인다. 또, 결혼상태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기혼인 경우에 아무래도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더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表 2-4-1〉 障碍人の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짓의 分析結果

변수	실업/비경제	취업/비경제	취업/실업
상수	-1.899	0.689	2.587
연령	-0.063***	-0.076***	-0.013
가구원수	-0.048	-0.357***	-0.308***
가구소득	-0.003	0.007***	0.010***
성별	0.363	0.003	-0.360
가구주여부	0.167	0.304	0.137
교육연한	0.053*	-0.017	-0.069**
장애기간	0.019**	0.039***	0.020***
도움필요정도	0.623***	0.600***	-0.023
외부불편정도	0.254**	0.227***	-0.027
건강상태	0.154	0.366***	0.212
미혼	-0.937***	-2.097***	-1.161***
사별·이혼	-0.054	-1.247***	-1.193***
장애원인	-0.188	0.040	0.228
정신장애	-1.256***	-1.607***	-0.351
내부장애	-0.526	-0.769**	-0.243
차별경험	-0.250**	0.065	0.331***
비장애인인식	0.155	0.079	-0.225*
자아인식	-0.193	0.142**	-0.225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보다는 정신장애일수록 실업보다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시 말해서, 정신장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신체장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차별경험에서는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별경험이 적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社會的接觸이 적어서 실업자보다 차별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就業者를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장애기간, 도움필요정도, 외부불편정도, 건강상태, 미혼, 사별·이혼, 정

신장애, 내부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취업장애인과 비경제활동장애인의 특성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적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 수가 적으면 소득을 벌 수 있는 가구원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장애인도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유형의 因果關係의 방향에 대해 다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가구소득이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경제활동유형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障 碍 期 間 에 있어서는 장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움필요정도에서는 도움이 적게 필요할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외부불편정도에서는 외부불편이 적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結 婚 狀 態 에서는 기혼과 미혼의 비교, 기혼과 사별·이혼의 비교에서 모두 기혼인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기혼인 경우에 특히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나 내부장애일 수록 취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의 취업가능성이 낮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社會的 偏見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내부장애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취업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칼럼에서는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교육연한, 장애기간, 미혼, 사별·이혼, 차별경험, 비장애인인식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원 수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적을수록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도 就業을 해서 소득을 벌 필요성이 커지며, 대신 소득을 벌 가구원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실업보다는 취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취업/실업의 가구소득 계수와 취업/비경제의 가구소득 계수를 함께 보면, 취업여부가 가구소득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업/비경제활동의 가구소득 계수에서는 두 범주 모두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유형과 가구소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실업자이든 비경제활동인구이든 어차피 소득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經濟活動類型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한에서는 교육을 적게 받을수록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주의 선호도가 높아서 취업이 잘된다는 일반적인 인

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아지지만 장애인의 경우에 그 期待水準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선우, 1997).

장애기간에서는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재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장애를 입은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실업의 비교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도움필요정도와 외부불편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두 변수가 취업/실업의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자나 사별·이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差別經驗에서는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비장애인과 접촉을 肯定的으로 인식할수록 취업을 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비장애인과 접촉을 否定的으로 인식할수록 취업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취업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실업장애인보다 비장애인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인식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렇게 장애인이 판단하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과 접촉이 약간 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비장애인과 접촉이 많아질수록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

인 측면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계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함께 비교해 보면, 障碍期間은 장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보다는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입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結婚狀態에서는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일수록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 취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때, 미혼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과 취업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결과는 가구소득, 도움필요정도, 외부불편정도의 계수이다. 가구소득은 취업자인 경우에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가구소득이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교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이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조의 수급이 근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所得認定額 방식을 개선하여 근로동기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필요정도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실업자나 취업자가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낮지만, 실업자와 취업자를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취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외부불편정도에서는 취업과 실업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필요정도나 외부불편도에서 도움

이 적게 필요하고 외부불편이 적어야 하지만 그것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障 碍 類 型 中 에서 정신장애는 신체장애보다 실업자나 취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내부장애와 신체장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第 5 節 家 口 所 得 에 影 響 을 미 치 는 要 因 에 대 한 分 析

장애인의 經 濟 的 自 立 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 자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가구의 所 得 은 경제적 자립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回 歸 分 析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로는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와 함께 경제활동상태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5-1>은 회귀분석의 결과인데,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여부는 가구주인 경우에 비가구주보다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인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기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원인에 있어서는 산재와 비산재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장애의 유형에서는 정신장애가 신체장애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장애는 신체장애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경제활동장애인에 비해 失業障碍人の 家口所得이 낮으며, 반면에 就業障碍人の 가구소득은 비경제활동장애인보다 높았다. 연령은 높아짐에 따라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도 증가하면서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연한도 가구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연한이 비록 경제활동상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장애기간은 경제활동상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구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健康狀態는 좋다고 인식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았으나,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정도는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부활동에서의 불편도도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부활동에 불편이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의 수였으며, 교육연한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취업여부와 연령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表 2-5-1〉 障 碍 人 家 口 所 得 에 대 한 回 歸 分 析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상수	-43.530		-2.780**
남자	-7.571	-.042	-1.600
가구주	-13.228	-.078	-2.635**
미혼	19.377	.100	3.404**
이혼·별거	.296	.001	0.055
산재	-4.851	-.019	-0.950
정신장애	-13.345	-.056	-2.547*
내부장애	4.988	.012	0.620
자아인식	-9.695	-.053	-2.706**
실업	-17.053	-.063	-3.043**
취업	27.417	.163	6.671***
연령	1.212	.162	5.773***
가구원수	22.358	.371	17.969***
교육연한	4.458	.231	10.703***
장애기간	-.191	-.035	-1.644
도움필요도	-1.407	-.021	-0.862
외부활동불편도	3.651	.054	2.311*
건강상태	-4.989	-.045	-2.068*

F = 44.080, df=17, 2118; R² = 0.261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第 6 節 就 業 障 碍 人 에 대 한 分 析

1. 就 業 障 碍 人 의 特 性

이 절에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취업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취업장애인의 職 種 分 布 와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單 純 勞 務 職 (23.7%)이었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3.3%, 서비스근로

자 및 판매근로자 20.6%의 순으로 취업장애인이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도 12.6%로 상당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4 직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장애인은 모두 80.2%에 달하고 있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給與는 9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은 57.1만원에 불과하고, 農魚業은 74.1만원,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는 99.9만원으로 가장 낮은 세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취업장애인은 월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직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급여가 낮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表 2-6-1〉 就業障礙人과 常傭勤勞者의 職種別 月評均 給與 比較

(단위: %, 만원)

범주	취업장애인		상용근로자	
	비율	월급여	비율	월급여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4	256.7	5.5	231.2
전문가	2.3	190.0	10.4	178.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8	122.8	14.2	149.1
사무직원	5.7	137.8	24.5	117.1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20.6	99.9	5.3	100.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3.3	74.1	0.2	108.0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2.6	112.3	11.9	120.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7.4	103.1	21.5	117.0
단순노무직 근로자	23.7	57.1	6.5	81.0
전체	100.0	91.8	100.0	131.4

자료: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및 노동부, 노동통계 DB 검색 2000년.

반면에 상용근로자의 직종별 분포와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원(24.5%)와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21.5%)이었다. 또한, 좋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5.5%로 취업장애인이 동일 직종에서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의 10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도 10.4%로 취업장애인의 비율 2.3%보다 5배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취업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에서는 그 비율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6.5%로 취업장애인의 1/9에 불과한 비율이며,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는 0.2%로 1/10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월급여를 비교해보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는 오히려 취업장애인의 월급여가 상용근로자의 월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장애인도 월급여가 높은 직종에서는 전체 상용근로자와 비교해도 충분히 높은 월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에서는 취업장애인의 월급여가 상용근로자의 월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월급여는 108.0만원, 상용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81.0만원이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31.4만원으로 취업장애인의 91.8만원에 비해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自營業이 36.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常傭勤勞者(전일제)가 27.1%, 日傭勤勞者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雇用主가 159.7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전일제)가 112.1만원으로 자영업의 91.6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우 자영업이 영세하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53.4만원에 불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表 2-6-2〉 就業障碍人の 従事上 地位와 月評均 給與

(단위: %, 만원)

종사상 지위	비율	월급여
자영업자	36.5	91.6
고용주	3.7	159.7
상용근로자(전일제)	27.2	112.1
상용근로자(시간제)	1.3	59.9
임시근로자	5.4	74.2
일용근로자	15.1	53.4
무급가족종사자	10.8	63.8

이를 취업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형태로 살펴보면, 자영업이 가장 많아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一般事業體가 36.9%,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6.6%, 障碍人職業再活施設 0.4%, 장애인관련기관 0.9%, 기타 3.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크며, 아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도 대부분의 장애에서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장애는 일반사업체가 40.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에서 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가장 큰 것은 낮은 수입으로 47.9%가 이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4.2%로 많았으며, 業務過多도 12.7%로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2.8%로 상당히 적었으나, 낮은 수입과 업무과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출퇴근 불편과 장애인 便宜施設 未備도 2.8%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정신장애에서는 낮은 수입 못지 않게 장애인에 대한 差別待遇의 문제를 13.3%가 꼽고 있다. 정신장애(정신지체와 정신질환)가 가장 차별이 심한 장

애의 유형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내부장애에서는 23.3%가 업무과다를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도 내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직장에서의 차별에서 나온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2-6-3〉 就 業 障 碍 人 의 特 性

(단위: %)

변수	범주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전체
취업장소	자영업	52.2	49.2	36.7	51.6
	일반사업체	36.9	34.9	40.0	36.9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6.3	3.2	23.3	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2	3.2		0.4
	장애인관련기관	0.8	1.6		0.9
	기타	3.5	7.9		3.7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낮은 수입	48.7	36.7	43.3	47.9
	직장내의 대인관계	1.3	3.3	3.3	1.5
	승진문제	1.0			0.9
	업무과다	12.7	6.7	23.3	12.7
	직무관련기능부족	2.0	3.3		2.0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2.3	5.0		2.4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	2.2	13.3		2.8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0.6			0.6
	출퇴근 불편	2.4			2.2
	어려움 없음	23.8	30.0	26.7	24.2
기타	2.9	1.7	3.3	2.8	

〈表 2-6-4〉 일 에 대 한 滿 足 度

(단위: %)

변수	범주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전체
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4.6		13.3	4.6
	대체로 만족스럽다	45.7	46.7	46.7	45.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40.0	36.7	30.0	39.5
	매우 불만족스럽다	9.7	16.7	10.0	10.1

일에 대한 満足度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39.5%로 상당히 많았다. 또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0.1%였는데, 장애유형별로 정신장애에서는 16.7%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내부장애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3.3%에 달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表 2-6-5〉 就業希望障碍人の 特性

(단위: %)

변수	범주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전체
희망근무 형태	전일제	82.6	74.6	70.8	81.5
	시간제	17.4	25.4	29.2	18.5
희망직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0.6			0.5
	전문가	4.7	2.5	8.5	4.6
	기술공 및 준전문가	6.6	2.5	6.4	6.2
	사무직원	8.6	5.7	27.7	9.0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3.1	11.5	23.4	22.1
	농어업 숙련근로자	14.4	18.0	4.3	14.4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6.1	14.8	8.5	15.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7	2.5	2.1	6.2
단순노무직근로자	19.1	42.6	19.1	21.1	
희망취업 장소	자영업	48.3	27.9	37.5	46.1
	일반사업체	29.8	27.0	37.5	29.8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12.8	8.2	20.8	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3	15.6		3.3
	장애인관련기관	5.5	18.0	2.1	6.5
기타	1.5	3.3	3.4	1.6	
희망취업 형태	재택근무	16.9	14.9	18.8	16.8
	출근근무	76.9	59.5	72.9	75.3
	출근근무(보호고용)	0.6	13.2		1.7
	출근근무(지원고용)	0.7	5.8	2.1	1.2
	재택근무+출근근무	4.7	5.0	4.2	4.7
	재택근무+지원·보호고용	0.2	1.7	2.1	0.4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을 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희망하는 근무 형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81.5%가 全日制를, 18.5%가 時間制를 원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내부장애인의 29.2%가 시간제를 원해서 내부장애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희망하는 職種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가 22.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단순노무직근로자도 21.1%로 선호하고 있다. 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농어업 숙련근로자도 각각 15.8%, 14.4%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는 단순노무직근로자가 42.6%여서, 정신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농어업 숙련근로자 18.0%,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4.8%,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11.5%로 비교적 선호하는 직종으로 선택하였다.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직종으로 사무직원(27.7%)를 꼽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23.4%), 단순노무직근로자(19.1%) 등이 뒤를 이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어려운 내부장애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노무직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근거로 직종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장애인의 경우 특징은 전문가를 희망 직종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8.5%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희망하는 취업장소로는 자영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업체가 29.8%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3%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정신장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5.6%로 비교적 많았으며, 장애인관련기관도 18.0%로 많았다. 따라서, 차별이 가장 많이 따르는 장애유형인 정신장애의 경우 차별이 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관련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내부장애인은 자영업과 일반사업체 외에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 대

한 선호가 2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취업형태로는 출근근무가 75.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이 각각 13.2%, 5.8%로 신체장애나 내부장애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른 희망취업형태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就業障碍人 賃金에 대한 分析

취업장애인의 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로 취업장애인의 시간임금에 대한 대수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성별(여성이 기준범주), 가구주 여부(비가구주가 기준범주), 결혼상태(기혼이 기준범주), 장애원인(비산재가 기준범주), 장애유형(신체장애가 기준범주), 자아인식(비장애인으로 인식이 기준범주), 직업(사무직이 기준범주, 사무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농어업에는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와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노무직에는 단순노무직 포함), 종사상 지위(비정규직이 기준범주, 비정규직에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에는 전일제 및 시간제 상용근로자 포함) 등이 더미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도움필요도, 외부활동불편도, 건강상태, 연령의 제곱 등이 연속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연령의 제곱은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線型일 가능성 때문에 포함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이 모형은 전체 변량의 32.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독립변수에 대해 설명하면,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임금이

높았으며, 가구주여부에서는 가구주일수록 임금이 높았다. 또한, 기혼은 미혼과 사별·이혼에 비해 임금이 높아서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원인과 장애유형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表 2-6-6〉 就業希望障碍人の 時間當 賃金에 대한 回歸分析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상수	-2.854		-6.374***
남자	0.184	0.089	2.258*
가구주	0.202	0.109	2.630**
결혼상태(기준범주=기혼)			
미혼	-0.153	-0.071	-1.892
이혼·별거	-0.219	-0.082	-2.608**
산재	-0.079	-0.040	-1.296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			
정신장애	-0.089	-0.022	-0.728
내부장애	-0.084	-0.019	-0.650
장애인인식여부	-0.087	-0.055	-1.851
연령	0.076	0.944	3.905***
연령 ²	-0.001	-0.877	-3.748***
교육연한	0.044	0.246	6.649***
장애기간	-0.004	-0.101	-3.145**
도움필요도	-0.040	-0.044	-1.359
외부활동불편도	0.042	0.061	1.905
건강상태	0.022	0.019	0.629
직업(기준범주=사무직)			
서비스직	-0.496	-0.258	-5.619***
농어업	-0.606	-0.309	-6.070***
기능직	-0.218	-0.117	-2.651**
노무직	-0.499	-0.281	-5.360***
종사상지위(기준=비정규)			
자영업	-0.051	-0.033	-0.641
상용직	-0.048	-0.029	-0.692

F = 20.156, df=21, 882; R² = 0.324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으며, 연령의 제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곡선이며, 장기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연한도 높을수록 임금이 높게 나타나, 비록 교육연한이 취업 여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장애기간은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애기간이 길수록 임금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상생활의 도움필요도, 외부활동 불편도, 그리고 건강상태는 모두 임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세 변수들이 모두 경제활동상태나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단 취업으로 진입하고 나면 임금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장애인도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충분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취업장애인의 소득이 낮아서 輕症障礙人도 低賃金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重症障礙人과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장애인의 임금체계가 장애인의 生産性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또, 예상한 바와 같이 직업에서는 事務職에 비해 다른 모든 직업의 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사무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자영업이나 정규직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할 때,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연령의 제곱, 직업, 교육연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개발해야 하며, 또 教育年限이 임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章 障碍類型別 雇傭 現況

第 1 節 肢體障碍와 腦病變障碍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肢體障碍人이며, 그 다음이 腦病變障碍人이다. 2000년도 추정 장애인 1,449,496명 중 지체장애인은 635,737명이며 뇌병변장애인은 244,230명에 달한다(변용찬 외, 2001). 그 만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재활정책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직업재활과 관련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찰한 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原資料를 토대로 이들 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 현황과 욕구를 분석한다.

1. 職業的 特性

가. 肢體障碍人

지체장애는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疾病이나 外傷 등으로 損傷(impairment)이 발생하여 주로 운동기능에 장애(disability)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체장애는 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 변형으로 구분된다.

지체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運動(mobility)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몸 전체에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신체의 일부에 運動障碍가 발생한다. 신체의 일부에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상실된 운동 기능을

보조구나 작업 편의설비를 통해 상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Mackelprang과 Salsgiver(1999)는 지체장애를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지체장애인은 운동성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된 장애인의 대부분이 경증의 지체장애인이다.

문제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이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운동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運動性의 제약을 상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근이양증이다. 근이양증은 몸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병으로, 초기에는 넘어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점차 뛰고 걷기도 힘들어지며 나중에는 앉아 있기조차 어려워지다가 끝내는 누게 되고 호흡마저 힘들어지는 장애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명백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어려워진다.

지체장애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애정도가 비슷하더라도 활동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의 機能評價는 移動, 個人衛生이나 自己管理活動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냐는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의 정도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independent)부터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totally dependent)까지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지체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PULSE Profile, Modified Barthel Index, Katz Index of ADL 등에 의해 평가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Modified Barthel Index를 사용한다.

나. 腦病變障礙人

뇌병변장애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뇌의 氣質的 損傷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步行 또는 日常生活動作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中樞神經障礙를 총칭한다. 腦性麻痺(Cerebral Palsy: CP), 腦卒中(중풍:Stroke), 外傷性 腦損傷(Traumatic Brain Injury: TBI) 등이 이에 속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뇌병변장애인도 기본적으로 운동기능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지체장애인과 동일하다. 다만 뇌병변장애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는 신체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지체장애와 차이가 난다.

지체장애와 보다 큰 차이는 뇌병변장애인은 同伴障礙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기능 장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장애가 言語障礙이다. 청각 장애나 시각장애, 지능장애가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言語障礙가 중복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요컨대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지적하자면 운동기능의 제약과 언어장애로 인한 意思疏通 機能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더 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 實態 分析

여기서는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가. 分 析 對 象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지체장애인은 1,799명, 뇌병변장애인은 622명이었다. 이 중 經濟活動可能人口가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대상은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1,437명이었다.

나. 分 析 對 象 者 的 一 般 的 特 性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들은 다음의 <표 3-1-1> 및 <표 3-1-2>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먼저 기능제한 정도는 약 75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약 9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약 47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2.77로서 가끔 차별을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전체의 총소득은 평균 약 106만원이었으며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18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勤 續 年 數는 12년 6개월 정도였으며,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 소득은 평균 90만 5천원이었다.

〈表 3-1-1〉 肢體·腦柄變障礙人들의 特性(連續變數의 技術統計)

변수	기능 제한	교육 년수	연령	차별 경험	주당 근로 시간	총 가구 소득	희망 생활비	근속 년수	월 근로 소득
평균	74.74	9.46	47.05	2.77	56	105.89	117.70	12.51	90.50
표준편차	39.05	3.61	11.66	1.05	24.52	80.87	67.50	13.77	72.70
최저	0	3	15	1	2	0	10	0.08	4
최대	100	18	64	4	168	750	700	45.00	998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주요한 특성들의 분포는 다음의 <표 3-1-2>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실업자가 약 47.7%, 취업자가 약 52.3%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2.7%로 거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20.3%, 남성이 79.7%의 비율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장애인 중 72.5%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인 사람이 16.4%, 기혼인 사람이 70.4%, 이혼·사별인 사람이 13.3%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은 80.3%이고 뇌병변장애인은 19.7%의 분포를 보였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4.6%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한 장애인 중 專門事務職에는 12%의 장애인이 취업해 있었으며, 88%에 해당하는 대다수는 非專門·生産職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노동환경이 열악한 2次 勞動市場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는 가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44.2%, 상용직이 27.3%, 임시·일용직이 2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속 계층 의식은 94.1%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해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 장애인들 중 62.4%가 취업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생활에서는 49.2%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보다는 취업할 때에 더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2〉 肢體·腦柄變障礙人들의 特性 分布(名目 및 序列變數)

(단위: %)

변수명	범 주	비 율	변수명	범 주	비 율	
취업여부	취업	52.3	경제활동분야	전문·사무직	12.0	
	실업	47.7		비전문·생산직	88.0	
직업훈련	비이수	97.3	종사상 지위	자영업·고용주	44.2	
	이수	2.7		상용직	27.3	
성	여성	20.3		임시·일용직	28.5	
	남성	79.7	생보자	생보자	14.6	
가구주 여부	가구주	72.5	계층의식	비생보자	85.4	
				비가구주	27.5	상층
	결혼상태	미혼		16.4	중상층	5.8
					기혼	70.4
장애유형	지체	80.3	취업시 차별경험	하층	59.4	
				뇌병변	19.7	매우 많다
직장생활 차별경험	매우 많다	30.0	직장생활 차별경험	많은 편이다	21.9	
				가끔 있는 편이다	10.3	
				거의 없다	27.3	
				매우 많다	30.0	
직장생활 차별경험	많은 편이다	19.2	직장생활 차별경험	가끔 있는 편이다	13.1	
				가끔 있는 편이다	13.1	
				거의 없다	37.8	

다. 就業 關聯 要因 分析

여기서는 취업을 한 장애인과 실업중인 장애인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노동시장 관련

욕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다음의 <표 3-1-3>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표 3-1-3> 就業 肢體·腦炳變障礙人들의 勤務 場所

(단위: %)

분류	자영업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일반사업체	직업재활시설	기타	계
비율	53.4	6.7	0.8	35.3	0	3.7	100

<표 3-1-3>을 보면 취업한 장애인들의 절반 이상이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 다음이 일반사업체로서 취업 장애인의 35.3%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는 6.7%,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0.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시설 내부의 장애인들만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閉鎖性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 장애인과 실업 장애인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자. 먼저 성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4>와 같다.

<表 3-1-4> 性別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성 별		전 체	
	여 성	남 성		
취업여부	실 업	23.9(164)	76.1(521)	100.0(685)
	취 업	16.8(126)	83.2(624)	100.0(750)
전 체		20.2(290)	79.8(1145)	100.0(1435)

($\chi^2=11.324$, $df=1$, $p<0.0005$)

<표 3-1-4>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아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이거나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1-5>는 가구주여부에 따른 취업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가구주인 경우 실업자보다는 취업자 수가 더 많으나 비가구주인 경우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반대현상을 보였다. 이를 볼 때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가 비가구주에 비해 더 많이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5> 家口主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가구주 여부		전 체	
	비가구주	가구주		
취업여부	실 업	33.9(232)	66.1(453)	100.0(685)
	취 업	21.6(162)	78.4(588)	100.0(750)
전 체		27.5(394)	72.5(1041)	100.0(1435)

($\chi^2=27.055$, $df=1$, $p<0.0005$)

<표 3-1-6>은 직업훈련여부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직업훈련여부가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권유경, 1998; 이선우, 1997; 유동철, 2000; 이선우, 2001).

〈表 3-1-6〉 職業訓練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가구주 여부		전 체	
	비이수	이수		
취업여부	실 업	96.8(662)	3.2(22)	100.0(684)
	취 업	97.7(732)	2.3(17)	100.0(749)
전 체		97.3(1394)	2.7(39)	100.0(1433)

($\chi^2=1.210$, $df=1$, $p=0.174$)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職業訓練 施策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은 기능상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한 職業評價와 訓練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의 <표 3-1-7>은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表 3-1-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단위: %)

이유	비율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5.4
등록절차를 몰라서	3.4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22.1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7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	0.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	4.8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39.9
기타	2.8
계	100.0

<표 3-1-7>을 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약 40%는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애인을 보면 약 66%는 취업장애인이었다.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훈련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약 83%가 실업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는 모두 직업훈련 실시 主體의 준비 부족이나 방향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직업훈련이 있는지를 몰라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25.4%에 이르고 등록절차를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이 3.4%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직업훈련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와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라는 응답자가 5.7%였다. 직업훈련의 내용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중 컴퓨터정보처리분

야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계분야로 4.3%의 분포를 보였다. 나머지는 그렇게 높은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훈련 욕구는 IT(Informational Technology)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여부의 차이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 3-1-8>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8> 障碍類型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장애유형		전 체	
	뇌병변	지체		
취업여부	실 업	34.9(239)	65.1(446)	100.0(685)
	취 업	5.9(44)	94.1(706)	100.0(750)
전 체		19.7(283)	80.3(1152)	100.0(1435)

($\chi^2=190.491$, $df=1$, $p<0.0005$)

<표 3-1-8>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취업자가 실업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모두 運動機能의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 보다는 지체장애인이 취업에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차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Baldwin과 Johnson은 시각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사람과 내부장애 등 장애가 시각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기능제한정도를 통제한 후에 비교·분석해 보니 시각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즉, 사업주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취업 가능성과 임금이 더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Baldwin & Johnson, 1994). 시각적인 것이 장애인에 대한 평

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은 筋肉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同伴障 碍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육조절 능력의 차이는 일상생활동작능력 점수를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뇌병변 장애인의 ADL(Activity of daily living)점수의 평균은 2.65에 불과했으나 지체장애인의 평균은 92.42로 큰 차이를 보였다($t=-85.675$, $p<0.0005$).

다음은 교육 집단별 취업여부의 차이이다. <표 3-1-9>는 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無學 및 初等學校 교육 수준의 사람들은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으나 중학교 이상 교육 수준의 사람들은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人的資本論, 選別理論 등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론과 선별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모호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을 연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업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1997; 권유경, 1998). 본 자료를 이용해 로짓분석을 해 본 결과도 교육년수라는 연속변수는 취업여부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서는 교육수준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하는(Becker, 1965) 반면,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은 고용주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므로 교육수준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 뿐이며, 따라서 교육수준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pence, 1973). 그러나 두 이론 모두 교육수준이 취업과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表 3-1-9〉 教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분	교육정도						전 체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	대학	대학원 이상		
취업여부	실업	13.0(89)	34.0(233)	15.5(106)	29.3(201)	17.5(12)	5.7(39)	100.0(685)
	취업	5.7(43)	28.9(217)	17.5(131)	34.9(262)	4.0(30)	6.9(52)	100.0(750)
전 체		9.2(132)	31.4(450)	16.5(237)	32.3(463)	2.9(42)	6.3(91)	100.0(1435)

 $(\chi^2=38.980, df=6, p<0.0005)$

<표 3-1-10>은 결혼형태별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기혼인 경우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는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 책임 의식이 더 높아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表 3-1-10〉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분	결혼형태				전 체	
	미혼	기혼	사별	이혼		
취업여부	실업	20.6(141)	62.0(425)	10.4(71)	7.0(48)	100.0(685)
	취업	12.4(93)	78.0(585)	4.9(37)	4.7(35)	100.0(750)
전 체		16.3(234)	70.4(1,010)	7.5(108)	5.8(83)	100.0(1435)

 $(\chi^2=45.081, df=3, p<0.0005)$

다음의 <표 3-1-11>과 <표 3-1-12>는 차별 경험 정도에 따른 就業分布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취업할 때나 직장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지만, 나머지는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의 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차별이 장애인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勞 動 市 場 的 差 別 行 爲 를 설 明 하 는 이 論 으 로 는 趣 向 假 說 과 統 計 的 差 別 論 이 대 표 적 이 다. 5) 분 석 결 과 에 따 르 면 이 이 論 들 의 타 당 성 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表 3-1-11〉 就 業 時 差 別 經 驗 程 度 別 就 業 與 否 의 差 異

(단 위 : %, 명)

구 분	취업시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있는 편이다	거의 없음		
취업여부	실업	52.2(211)	21.3(86)	8.2(33)	18.3(74)	100.0(404)
	취업	32.8(200)	22.3(136)	11.7(71)	33.2(202)	100.0(609)
전 체		40.6(411)	21.9(222)	10.3(104)	27.2(276)	100.0(1,013)

($\chi^2=45.167$, $df=3$, $p<0.0005$)

5) 취향가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고용주의 선입견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가설이다. 베커(Becker, 1957)에 따르면 차별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preference) 및 선입견(prejudice)에 의해 발생한다. 즉, 고용주가 소수 집단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선입견에 의해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할 정도의 선입견 및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입견을 심하게 받는 인구집단일수록 취업 기회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다.

펠프스(Phelps, 1972), 아이그너와 케인(Aigner & Cain, 1977)은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통계적 차별론은 한 개인이 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처우를 받을 때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고용주가 고용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sex)이나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사용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계적 차별론에 의하면 고용주는 선입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Ehrenberg et al., 1998). 만일 소수 집단의 특성이 실질적인 생산성과 큰 연관이 없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집단의 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고용주들이 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특정 집단의 고용을 결정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로 귀결될 것이다.

〈表 3-1-12〉 職場生活에서의 差別 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취업여부	실업	43.2(163)	21.0(79)	10.1(38)	25.7(97)	100.0(377)
	취업	22.4(148)	18.2(120)	14.8(98)	44.5(294)	100.0(660)
전 체		30.0(311)	19.2(199)	13.1(136)	37.7(391)	100.0(1,037)

($\chi^2=62.306$, $df=3$, $p<0.0005$)

다음은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속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1-13>과 같다. <표 3-1-13>에 따르면 교육년수는 취업자가 더 높으며, 차별을 당한 경험은 취업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연령은 취업자 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總家口所得은 취업자 집단이 더 높았다. 일상생활동작능력 점수는 취업자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13〉 就業與否에 따른 障礙人 特性的 差異

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교육년수	실업	9.1091	3.5547	-3.283	p=0.001
	취업	9.7671	3.6319		
차별점수	실업	2.6270	1.0891	-5.111	p<0.0005
	취업	2.9076	0.9848		
연령	실업	49.18	12.53	6.653	p<0.0005
	취업	45.14	10.41		
총가구소득	실업	86.59	70.20	-8.735	p<0.0005
	취업	123.05	85.48		
일상생활 동작능력	실업	57.49	44.36	-17.664	p<0.0005
	취업	90.53	24.49		

6) 차별을 당한 경험은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6개 영역에서 차별의 정도에 대한 답을 합하여 평균치를 구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것이다.

라. 就 業 欲 求 分 析

이상의 분석 결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1-1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중인 장애인들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자의 43%였다. 나머지 57%는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 장애인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4> 失業者들의 就業 希望 與否

(단위: %)

희망 여부	비 율
희망함	43.0
원하지 않음	57.0
계	100.0

<표 3-1-15>는 失業障 碍 人들이 희망하는 勤務形態를 나타낸 것이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전일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29.9%에 달했다. 취업중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일제(87.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들이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운동기능상의 제약 때문이다. 운동기능을 생각할 때 짧은 노동시간이 훨씬 부담없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시장은 시간제·임시직·일용직 등의 구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을 생각해보면 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表 3-1-15〉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단위: %)

희망 근무형태	비 율
전일제	70.1
시간제	29.9
계	100.0

다음으로 실업장애인들의 希望職種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 3-1-16>은 희망 직종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장애인들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단순노무직 정도에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로서 전체의 17.1%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사무직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의 직종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16〉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단위: %)

희망 취업직종	비 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7
전문가	2.7
기술공 및 준전문가	5.5
사무직원	13.0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13.4
농어업 숙련근로자	5.1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7.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7.5
단순노무직 근로자	34.9
계	100.0

<표 3-1-17>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就業 場所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장애인들은 一般事業體에 취업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자영업, 정부기관, 장애인 단체나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취업장애인들은 自營業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반사업체, 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장애인들이 일반 사업체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혼자서 자영업을 하기에는 운동기능상의 제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과 근무조건도 양호하고 함께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체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장애인들의 절대 다수는 자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자영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表 3-1-17> 肢體·腦病變 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場所

(단위: %)

희망 취업장소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자영업	24.1	59.3
일반사업체	37.8	24.5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19.2	1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5	0.6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	12.4	2.4
기타	2.1	2.1
계	100.0	100.0

($\chi^2=128.318$, $df=5$, $p<0.0005$)

<표 3-1-18>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就業形態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자 취업자를 불문하고 절대 다수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在宅勤務는 의외로 많은 장애인들이 선호하지는 않았다. 이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는 욕구가 표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운동 기능상의 제약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호했을 것이다.

<表 3-1-18> 肢體·腦病變 障碍人の 希望 就業形態

(단위: %)

희망 취업 형태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재택근무	12.6	16.0
출근근무	77.6	78.6
출근근무(보호고용)	2.7	0.2
출근근무(지원고용)	1.4	0.8
재택근무+출근근무	5.8	4.4
재택근무+지원·보호고용	0	0.2
계	100.0	100.0

한편, <표 3-1-2>에서와 같이 직업훈련을 받은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이 원하는 직업훈련 분야는 없다는 응답이 거의 70%에 가까웠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분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결과는 <표 3-1-19>와 같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응답이 비슷하지만 실업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

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들은 직업능력 개발을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 임금보조와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취업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로 응답했다.

〈表 3-1-19〉 肢體·腦病變 障 碍 人 이 바 라 는 國 家 役 割

(단위: %)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 역할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22.7	18.9
취업정보 제공	12.6	13.6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17.4	20.9
취업상담·평가·알선	8.8	7.0
사후지도	0.8	1.4
임금보조	19.1	18.9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8	4.7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12.1	14.3
기타	0.6	0.3
계	100.0	100.0

마. 所 得 關 聯 要 因 分 析

여기서는 취업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1) 從 屬 變 數 (賃 金 水 準) 의 定 義 및 測 定

종속변수인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임금수준으로는 취업한 장애인의 時間 當 平 均 賃 金 의 로그값을 사용한다. 시간당 평균임금을 사용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임금수준은 장애인의 노동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짧다는 것을 간과하여 임금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正常分布를 이루지 못하고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에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에서는 임금이 자연대수를 취하여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임금분포를 감안하여 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사용하였다.

2) 獨立變數의 定義 및 測定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크게 人的資本 變數와 人口社會學的 變數, 그리고 勞動市場 變數로 분류하였다.

사람들이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과정은 크게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가능성(勞動 需要)과 구직자가 제안받은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勞動 供給)으로 이루어진다. 일자리를 제안받을 가능성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정도 등 노동시장적 조건을 토대로 개별 구직자의 교육, 熟練度, 건강이나 장애, 성별 등 고용주가 개별 노동자를 더 바람직스럽게(desirable) 인식하도록 유인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제안된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개별 노동자의 意中賃金(reservation wage)에 의해 결정된다(Lynch, 1989). 개별 구직자의 의중임금은 당사자의 인적자본이나 가구내의 위치, 개인적 선호 등에 의해 결정된다(Nickell, 1979).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취업과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적자본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노동시장 변수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⁷⁾

7)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적자본론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론은 1950년대말 이후 베커(Becker), 민서(Mincer) 등에 의하여 정교화되었는데, 인간의 생산적 능력을 자본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관점과 세련된 분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행위, 즉, 학교교육, 직업훈련, 건강유지 등이 소득결정 및 취업결정의 기본요인이므로 현재의 교육은

가) 人的資本 變數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인적자본 변수는 기능제한 정도, 교육수준, 직업훈련 이수여부, 근속년수로 이루어진다.

(1) 機能制限

장애인의 機能制限의 정도는 장애인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능제한은 장애의 생산성 정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투입될 것이다. 기능제한 정도는 ADL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Barthel Index⁸⁾로 측정된 연속 변수값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제한으로 장애의 영향을 추적한 연구는 없다. 반면 Bound(1995)는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많은 변수들 중에서 ADL을 측정한 身體機能(physical function) 변수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수였다고 한다. Loprest(1995) 또한 ADL을 통해 측정한 기능제한

미래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적자본 투자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Becker, 1964; Mincer, 1974). 이 이론에 의하면 교육이나 훈련은 사람들의 지식능력(cognitive ability)을 제고시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나중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이론은 고학력, 고기술 → 고생산성 → 고소득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직무의 선택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지위성취이론을 들 수 있다. 지위성취이론에 의하면(Blau and Duncan, 1967) 소득결정요인은 크게 개인의 가족적 배경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선천적 능력이라는 출발점과 지위 획득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성향이 매개됨으로써 개인의 지위이동과 사회적 지위의 결과로 소득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 요인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앞서 언급한 이중노동시장론이 있다.

8) Barthel Index는 Mahony와 Barthel이 1965년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10개의 항목(feeding, bathing, personal toilet, dressing, bowel control, toilet transfer, chair/bed transfer, ambulation, stair climb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15점, 10점, 5점의 점수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 능력이 좋다고 평가된다(Mahony & Barthel, 1965). 본 연구의 척도는 원래의 Barthel Index를 수정한 것이다.

정도는 노동시장활동에 외생적이며 노동에 미치는 영향의 훌륭한 측정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Barthel Index를 통해 측정된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機能制限程度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더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한 응답한 값을 합한 것이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2) 教育水準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生産性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과 기능의 습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賃金函數에서는 교육정도를 교육년수라는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어수봉(1995), 권유경(1998)의 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 연구에서도 교육년수를 사용하였는데,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원자료의 범주별 변수를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중퇴는 7.5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중퇴는 10.5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그 이상은 18년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職業訓練 履修與否

직업훈련은 Mincer가 강조한 부분으로 교육보다 더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를 입은 후에 직업훈련을 받

은 경우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임금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를 입은 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나 받고 있는 경우를 1, 받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사용하였다.

(4) 勤續年數

年功序列型 임금구조 하에서 근속년수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수봉(1995)의 연구에서는 근속년수를 임금함수 추정 에 사용하였는데, 장애인과 일반인 집단 모두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에서도 근속년수는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직업에 종사한 總年數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人口社會學的 變數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경제활동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투입하였다.

(1) 性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二重勞動市場論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은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勞動市場 參與率이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단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여성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을 분석한 모든 연구에서는 성이 주요한 변

수로 상정된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상의 가정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수봉(1995)의 연구에서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고용을 제외 받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중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선우(1997)와 권유경(1998)의 연구에서는 취업확률에 미치는 성별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장애인 사이에서는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권유경의 연구에서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은 더미 변수로서 남성일 경우는 1, 여성일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2) 年齡

연령이 높다는 것은 勞動市場 내에서 生産技術의 습득과 숙련 향상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은 賃金水準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年功序列型의 賃金構造下에서는 연령의 한 단위 증가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어수봉(1995), 권유경(1998)의 임금 분석에서도 만 나이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어수봉은 연령의 증가가 의중임금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유경의 연구에서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賃金函數에서는 연령을 연속변수인 만 나이를 그대로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 연령을 제공한 변수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상승이 非線型關係에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 때문이다(Bradbury et al., 1979).

(3) 結婚狀態

결혼상태는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취업에 대한 적극성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意中賃金(reservation wage)에도 차이가 있어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가구 규모가 커지므로 의중임금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상태를 미혼, 기혼, 이혼·사별로 原資料에 있는 그대로 3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4) 家口主 與否

가구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구주는 해당 가구의 主所得源으로서 가구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家口員에 비해 意中賃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0, 가구주인 경우는 1을 부여하였다.

(5) 障礙類型

장애유형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체장애인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은 근육조절 기능의 저하와 중복장애의 가능성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뇌병변장애인은 0, 지체장애인은 1을 부여하였다.

다) 勞動市場 變數

(1) 從事上 地位

상용직인 경우와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

으로 추정된다. 어수봉(1995)도 비상용직과 상용직으로 2분하여 임금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상용직이 비상용 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유경(1998)은 장애인의 임금함수에서 雇傭形態를 상용 전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직, 일용 직으로 4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상용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임시직 노동자만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수봉과 권유경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주로 자영업·고용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3분 범주를 선택해서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2) 經濟活動分野

經濟活動 分野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권유경(1998)은 고위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직, 생산직, 農漁業職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농어업직에 비해 고위관리·전문직과 사무 직만이 임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ldwin과 Johnson(1994)은 전문·관리직과 사무·기술 및 서비스직, 생산직으로 3 분하여 임금을 추정한 결과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전문·관리직은 사무·기술 및 서비스직에 비해 임금이 높은 반면 생산직은 사무·기술 및 서비스직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專門·事務職과 非專門·生産職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비전문·생산직으로 분류하였다.

(3) 差別

노동시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趣向假說(taste theory)에 따르면 고용주는 少數集團에 대한 차별이 금전적인 이윤을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차별 변수는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1점에서 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이다.

3) 分析 結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賃金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특성들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열악한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20>과 같다.

教育水準은 교육년수가 많아질수록 賃金水準이 높아지지만 기능제한과 직업훈련 이수여부는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세 가지는 人的資本의 기본적인 것인데 교육년수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론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다. 機能制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나면 장애정도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직업훈련이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非體系性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고용주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表 3-1-20〉 獨立變數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수준	0.05112	0.252***
기능제한	-0.00058	-0.017
직업훈련여부(비이수 기준)	-0.092	-0.017
근속년수	0.0095	0.159***
성(여성기준)	0.126	0.055
연령	0.089	1.181***
연령제곱	-0.001	-1.305***
결혼 상태(미혼 기준)		
- 기혼	0.063	0.035
- 이혼·사별	-0.140	-0.055
가구주(비가구주 기준)	0.327	0.164***
장애유형	0.052	0.014
활동분야(비전문직기준)	0.287	0.135***
종사상지위(임시·일용기준)		
- 자영업·고용주	-0.139	-0.094*
- 상용직	-0.015	-0.010
직장생활 차별 경험	0.0533	0.088**
상수		-2.410
R-square		0.264
(F)		13.428***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勤續年數는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연공서열형의 임금지급방식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증가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는 勞動市場에서 生産性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熟練度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는 곧 기술수준 및 경력의 증가로 나아가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본 분석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령제곱은 연령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상승이 비선형관계에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 때문에 연령의 영향이 과잉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였다(Bradbury et al., 1979; Rodgers, 1994).

한편, 결혼형태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중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주인 경우는 비가구주에 비해 모두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障 碍 類 型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장애인은 취업시에 장애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며 취업한 후에는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비슷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統 計 的 差 別 論 의 가정이 맞다고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생활 차별 경험에서는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이 직장생활에서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分 析 結 果 要 約

이상의 분석 결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취업률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여부와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연령, 성별, 결혼 형태, 가구주 여부, 장애유형, 일상생활동작능력, 차별 경험 정도, 교육정도, 총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훈련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人 的 資 本 變 數 에서는 교육 수준 및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職業訓練變數와 機能制限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非家口主에 비해 가구주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장애유형, 결혼형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勞動市場變數에서는 경제활동분야와 차별경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비전문·생산직에 비해 전문·사무직의 임금이 높았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視覺障礙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16만 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변용찬 외, 2001).

여기서는 먼저 직업재활과 관련된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찰한 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原資料를 토대로 이들 장애인의 취업 및 所得 現況과 欲求를 분석할 것이다.

1. 職業的 特性

보는 활동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기능이다. 따라서 視覺機能이 손상·저하된 시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업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는 활동의 어려움은 移動의 어려움, 文書的 意思疏通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과의 相互作用 制限 등의 실제적 기능 제한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직업생활의 참여를 제한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이계준, 1999). 視覺 損傷 그리고 이에 따른 기능적 제한 및 참여의 제한이 대부분의

직업생활 영역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職業再活 및 職業生活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배타적·우선적 접근을 보장하는 留保雇傭이나 優先雇傭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마직종을 시각장애인의 專業職種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효과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이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入職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高所得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 안정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러한 안마직종의 利點때문에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中途失明者의 경우에도 이전 직업으로 복귀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대부분 새로이 안마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안마는 시각장애인 職業生活의 根幹이다. 그러나 안마에 의해 모든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욕구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최근에도 통신판매나 컴퓨터속기 등을 시각장애인의 適合 職種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시각장애인이 해당 직종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을 통해 실제 취업을 하거나 자영을 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적 성과는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보상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移動能力, 文書의 意思疏通 能力을 지원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여러 가지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기술에 근거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 實態 分析

여기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가. 分析 對象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시각장애인은 513명이었다. 이 중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대상은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257명이었다.

나. 分析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들은 다음의 <표 3-2-1> 및 <표 3-2-2>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은 약 9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약 44세였다. 가구 전체의 총소득은 평균 약 128만원이었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34만원이었다.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2.94로서 가끔 차별을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14년 4개월 정도였으며,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 소득은 평균 96만 5천원이었다.

<表 3-2-1> 視 覺 障 碍 人 的 特 性 (連 續 變 數 的 技 術 統 計)

변수	교육 년수	연령	가구 소득 (만원)	차별 경험	주당 근로 시간	희망 생활비 (만원)	근속 년수	월근로 소득 (만원)
평균	8.94	44.3	127.8	2.94	60.44	134.1	14.03	96.52
표준편차	4.46	11.7	123.7	1.00	25.87	128.2	13.90	78.77
최소	0	15	0	1	2	20	0.1	10
최대	16	59	999	4	168	999	60	500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주요한 특성들의 분포는 다음의 <표 3-2-2>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視力은 양안 모두 교정시력이 0.02 미만인 경우가 28.8%였다. 취업자가 약 59.5%, 실업자가 약 40.5%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1.3%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실명 이후 按摩業의 종사를 희망하여 안마수련원 등에서 직업훈련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32.7%, 남성이 67.3%의 비율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장애인 중 61.9%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인 사람이 17.9%, 기혼인 사람이 67.3%, 이혼·사별인 사람이 14.7%로 나타났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19.8%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한 장애인 중 전문사무직에는 16.3%의 장애인이 취업해 있었으며, 83.7%에 해당하는 대다수는 비전문·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47.7%, 상용직이 22.3%, 임시·일용직이 30.0%를 차지하고 있었다.

所屬 階層 意識은 90.6%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해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 장애인들 중 54.6%가 취업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생활에서는 42.4%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보다는 취업할 때에 더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2〉 視覺障礙人的 特性 分包(名目 및 序列變數)

(단위: %)

변수명	범 주	비 율	변수명	범 주	비 율
취업여부	취업	59.5	경제활동 분야	전문·사무직	16.3
	실업	40.5		비전문·생산직	83.7
직업훈련	비이수	88.7	종사상 지위	자영업·고용주	47.7
	이수	11.3		상용직	22.3
성	여성	32.7	임시·일용직	임시·일용직	29.4
	남성	67.3		생보자	생보자
가구주 여부	가구주	61.9	계층의식		비생보자
		38.2		상층	0.1
	비가구주	61.9		중상층	9.4
		38.2		중하층	38.7
결혼상태	미혼	17.9	취업시 차별경험	하층	52.0
		67.3		매우 많다	34.5
	기혼	67.3		많은 편이다	20.1
		14.7		가끔 있는 편이다	7.2
이혼·사별	14.7	직장생활 차별경험	거의 없다	38.1	
			매우 많다	24.7	
			많은 편이다	17.7	
			가끔 있는 편이다	10.1	
			거의 없다	47.5	

다. 就業 關聯 要因分析

여기서는 취업을 한 장애인과 실업중인 장애인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각장애인의 노동시장 관련 욕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각장애인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59.5%였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다음의 <표 3-2-3>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표 3-2-3> 就業 視 覺 障 碍 人 의 勤 務 場 所

(단위: %)

분류	자영업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일반 사업체	직업 재활시설	기타	계
비율	58.2	3.9	1.3	32.7	0.0	3.9	100

주: n=153

<표 3-2-3>을 보면 취업한 장애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전업직종인 안마 등을 자영업하는 시각장애인 다수 있음에 따른 결과이다.

자영업 다음이 일반사업체로서 취업 장애인의 32.7%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는 3.9%,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1.3%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 장애인과 실업 장애인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보자. 먼저 성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2-4>와 같다.

<표 3-2-4> 性 別 에 따 른 就 業 與 否 의 差 異

(단위:%, 명)

구 분	성 별		전 체	
	여 성	남 성		
취업여부	실 업	41.3(43)	58.7(61)	100.0(104)
	취 업	26.8(41)	73.2(112)	100.0(153)
전 체		32.7(84)	67.3(173)	100.0(257)

($\chi^2=5.956$, $df=1$, $p=0.021$)

<표 3-2-4>에 의하면 性別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이거나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2-5>는 家口主與否에 따른 취업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가구주인 경우 실업자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생계에 대한 의무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한 결과이다.

<表 3-2-5> 家口主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분	가구주 여부		전 체	
	비가구주	가구주		
취업여부	실업	51.0(53)	49.0(51)	100.0(104)
	취업	29.4(45)	70.6(108)	100.0(153)
전 체		38.1(98)	61.9(159)	100.0(257)

($\chi^2=12.188$, $df=1$, $p=0.001$)

<표 3-2-6>은 職業訓練與否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직업훈련여부가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3-2-6> 職業訓練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분	직업훈련 이수여부		전 체	
	비이수	이수		
취업여부	실업	91.3(95)	8.7(9)	100.0(104)
	취업	86.9(133)	13.1(20)	100.0(153)
전 체		88.7(228)	11.3(29)	100.0(257)

($\chi^2=1.207$, $df=1$, $p=0.319$)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시각장애인 대상의 직업 훈련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사실 안마를 제외하고 시각장애인 대상의 職業訓練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低視力 시각장애인이 일반 직업훈련 시설에서 여러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履修가 어렵다.

<表 3-2-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단위: %)

이유	비율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9.5
등록절차를 몰라서	2.7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10.7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9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	1.8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	7.6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45.5
기타	1.3
계	100.0
(명)	(224)

주: ()안은 사례수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각장애인들도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표 3-2-7>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46.5%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가 1.8% 그리고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가 7.6%로 나타났다.

다음은 教育程度別 취업여부의 차이이다. <표 3-2-8>은 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학력이 취업여부와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特例入學의 실시 등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시각장애인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급학교의 졸업 이후 교육을 통해 人的 資本의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高學力 失職者가 되는 비율이 높으며, 상당수는 다시 안마를 시작하기도 한다.

〈表 3-2-8〉 敎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 분	敎育程度					전 체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	대졸 이상		
취업여부	실업	12.5(13)	25.0(26)	25.0(26)	24.0(25)	13.5(14)	100.0(104)
	취업	11.1(17)	24.2(37)	15.7(24)	35.9(55)	13.1(20)	100.0(153)
전 체		11.7(30)	24.5(63)	19.5(50)	31.1(80)	13.2(34)	100.0(257)

($\chi^2=5.708$, $df=4$, $p=0.222$)

<표 3-2-9>는 結婚形態別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을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노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表 3-2-9〉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 분	결혼형태		전 체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취업여부	실업	35.1(54)	64.9(50)	100.0(104)
	취업	19.6(30)	80.4(123)	100.0(153)
전 체		32.7(84)	67.3(173)	100.0(257)

($\chi^2=29.386$, $df=1$, $p<0.0005$)

다음의 <표 3-2-10>과 <표 3-2-11>은 差別 경험 정도에 따른 취업분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실업자의 比重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의 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차별이 시각장애인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2-10> 就業時 差別 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분	취업시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취업여부	실업	44.3(31)	24.3(17)	8.6(6)	22.9(16)	100.0(70)
	취업	29.0(36)	17.7(22)	6.5(8)	46.8(58)	100.0(124)
전 체		34.5(67)	20.1(39)	7.2(14)	38.1(74)	100.0(194)

($X^2=10.956$, $df=3$, $p=0.012$)

<表 3-2-11> 職場生活에서의 差別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취업여부	실업	40.3(25)	24.2(15)	6.5(4)	29.0(18)	100.0(62)
	취업	17.6(24)	14.7(20)	11.8(16)	55.9(76)	100.0(136)
전 체		24.7(49)	17.7(35)	10.1(20)	47.5(94)	100.0(198)

($X^2=18.674$, $df=3$, $p<0.0005$)

다음의 <표 3-2-12>는 障 碍 程度에 따른 취업분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兩眼이 모두 0.02 이하인 경우 즉, 重症度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일반적으로 중증도

는 全盲 및 準盲의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데, 안마 전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시각장애인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2-12〉 職場生活에서의 障碍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 명)

구 분	장애정도		전 체	
	경도	중증도		
취업여부	실업	60.6(63)	39.4(41)	100.0(104)
	취업	78.4(120)	21.6(33)	100.0(153)
전 체		71.2(183)	28.8(74)	100.0(257)

($\chi^2=9.626$, $df=1$, $p=0.003$)

다음은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속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2-13>과 같다. <표 3-2-13>에 따르면 教育年數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年齡에 있어서는 취업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실제적인 생계유지의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이 취업한다는 일반적 사실과 일치한다.

〈表 3-2-13〉 就業與否에 따른 障碍人 特性의 差異

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교육년수	실업	8.62	4.44	0.943	0.346
	취업	9.16	4.47		
연령	실업	42.46	13.46	2.032	0.044
	취업	45.61	10.09		

라. 就 業 欲 求 分 析

<표 3-2-1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중인 시각장애인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자의 55.8%였다. 나머지 44.2%는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전체의 43.3%가 장애로 인한 직업생활의 곤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적합한 職種이 없다는 이유가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안마관련 직종을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직종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전체의 7.7%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事業體의 否定的 態度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나 욕구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勞動市場에서의 拒否的 態度가 이들의 직업생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表 3-2-14> 失業者들의 就業希望 與否

(단위: %, 명)

희망 여부	비 율
희망함	55.8(58)
원하지 않음	44.2(46)
계(명)	100.0(104)

〈表 3-2-15〉 未就業의 主된 理由

(단위: %, 명)

	비율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7.7
임금이 너무 낮아서	1.0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5.4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3.3
다른 질병때문에	2.9
나이가 많아서	3.8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1.9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4.8
군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3.8
취업 이외의 준비때문에(진학·결혼 등)	1.9
재학 중이기 때문에	9.6
기타	3.8
계	100.0

주: n=104

<표 3-2-16>은 失業 障碍人들이 희망하는 勤務形態를 나타낸 것이다. 74.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일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25.9%에 달했다. 취업중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일제(86.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16〉 失業者들의 希望 勤務形態

(단위: %, 명)

희망 근무형태	비율
전일제	74.1(43)
시간제	25.9(15)
계	100.0(58)

다음으로 실업 장애인들의 希望 職種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 3-2-17> 희망 직종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 장애인들은 단순노무직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業務遂行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專門的 力量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비교적 단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 판매직은 시각장애인 전업직종인 안마가 해당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에 대한 욕구를 가졌다.

〈表 3-2-17〉 失業者들의 希望 職種

(단위: %)

희망 취업직종	비 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
전문가	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9.0
사무직원	5.2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29.3
농어업 숙련근로자	5.2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7
단순노무직 근로자	27.6
계	100.0

주: n=58

<표 3-2-18>은 희망하는 취업 장소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취업장애인들은 自營業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마업 자영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장애인의 경우에도 자영을 희망하는 인구가 많았다. 반면 실업장애인중에는 일반사업체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表 3-2-18〉 視覺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場所

(단위:%, 명)

희망 취업장소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자영업	39.7(23)	61.7(82)
일반사업체	36.2(21)	24.8(33)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13.8(8)	8.3(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2(3)	0.8(1)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	3.4(2)	4.5(6)
기타	1.7(1)	0.0(0)
계(명)	100.0(58)	100.0(133)

<표 3-2-19>는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취업 형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출근근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2-19〉 視覺障礙人들의 希望 就業形態

(단위: %, 명)

희망 취업 형태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재택근무	22.4(13)	27.8(37)
출근근무	69.0(40)	68.4(91)
출근근무(지원고용)	3.4(2)	0.8(1)
재택근무+출근근무	5.2(3)	3.0(4)
계(명)	100.0(58)	100.0(133)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결과는 <표 3-2-20>과 같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응답이 비슷하지만 실업자들은 ‘職業 能力 開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들은 賃金補助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認識改善活動과 就業情報提

供도 중요한 국가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表 3-2-20〉 視覺障礙人이 바라는 國家 役割

(단위: %, 명)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 역할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29.3(29)	19.9(30)
취업정보 제공	16.2(16)	10.6(16)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23.2(23)	24.5(37)
취업상담·평가·알선	3.0(3)	9.9(15)
사후지도	0.0(0)	1.3(2)
임금보조	13.1(13)	17.2(26)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0(2)	5.3(8)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13.1(13)	9.9(15)
기타	0.0(0)	1.3(2)
계(명)	100.0(99)	100.0(151)

마. 經濟活動 參加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變數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從屬變數는 경제활동 참가여부이며, 독립변수로는 1) 社會人口學的 變수로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모형 I), 2) 醫療的 變수로 장애의 중증도 여부,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모형 II), 3) 心理的 變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모형 III) 등을 설정하여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I (사회인구학적 모형)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 유무 그리고 성별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扶養義務의 발생 또는 가족단위의 생계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단순히 가구주이냐의 여부보다는 配偶者의 유무가 경제활동참여에 밀접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여성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도 특정직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일반적 사실과도 부합된다. 배우자 유무 그리고 성별을 제외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경제활동의 참가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모형 II(의료모형)에서 경제활동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일상생활 도움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외부활동 불편정도였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외부활동에서의 불편이 거의 없고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장애의 중증도 여부 그리고 장애시기 등은 경제활동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나 시기보다는 실제적인 기능 정도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모형 III(심리모형)에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 등의 심리적 변수에 의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의미를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통합모형인 모형 IV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유의미한 변수는 전혀 없었다.

〈表 3-2-21〉 經濟活動 參與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성별(남성)	0.6355*			-0.3615
연령	0.0012			-0.0854
가구주여부	0.5117			1.4182
결혼상태(배우자 유)	0.8042**			0.7527
교육연한	0.1136			0.0136
가구소득	0.0026			0.0032
장애중증도 여부		0.1265		-0.3186
장애발생시기		-0.0027		-0.0861
일상생활도움정도		-0.3657**		-0.1515
외부활동불편정도		0.2871*		-0.0920
건강상태		-0.4512**		0.4815
비장애인인식			0.1778	0.4687
자아인식			0.6614	-0.5660
차별경험			0.3430	0.6173
상수	-1.1153	2.2052	-0.6367	1.8377
Goodness of Fit	317.652	256.694	83.166	82.389
Model Chi-Square	28.283 (p=0.0001)	30.159 (p<0.0005)	3.742 (p=0.2908)	12.090 (p=0.5991)
Nagelkerke - R^2	0.149	0.163	0.076	0.240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바. 就業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變數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表 3-2-22〉 就業與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성별(남성)	0.2619			-0.3068
연령	-0.0033			-0.0467
가구주여부	0.6832*			0.9209
결혼상태(유배우)	1.2475***			1.4229*
교육연한	-0.0306			0.0861
가구소득	0.0060***			0.0053
장애중증도(중증)		0.1352		0.1931
장애발생시기		-0.0040		-0.0849
일상생활도움정도		-0.3862**		-0.3872
외부활동불편정도		0.1647		-0.1162
건강상태		-0.3449*		0.2224
비장애인인식			-0.1233	0.0404
자아인식			0.1087	-0.8864
차별경험			0.3904	0.4895
상수	-1.4249	1.6645	0.0240	1.4562
Goodness of Fit	765.380	251.523	80.068	75.528
Model Chi-Square	50.310 (p<0.00005)	24.643 (p=0.0002)	2.391 (p=0.4953)	17.695 (p=0.2210)
Nagelkerke - R^2	0.240	0.126	0.043	0.293

주: 유의수준 * $p < 0.1$, ** $p < 0.05$, *** $p < 0.01$

<표 3-2-22>의 모형 I (사회인구학적 모형)에 의하면 가구주여부, 배우자유무 그리고 家口所得 등이 취업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가구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 II (의료모형)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모형 III (심리모형)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통합모형인 모형 IV에서는 결혼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취업여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시각장애인

이 배우자가 없는 시각장애인보다 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근로소득을 從屬變數로 설정하고 1)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모형 I), 2) 의료적 변수로 장애의 중증도 여부,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모형 II), 3) 심리적 변수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인인식(모형 III), 4) 취업직종에서는 단순노무직을 기준범주로 하여 세개의 假變數 즉, ① 서비스직 여부, ② 전문직·준전문직 여부, ③ 사무직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I(사회인구학적 모형)에서는 결혼상태와 학력이 시각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았다.

모형 II(의료모형)에서는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시각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활동이 불편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많았다. 그러나, 모형 III(심리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모형IV에서는 직업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 그리고 준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사무직인 경우 단순노무직보다 소득이 많았다. 그러나 서비스직 여부는 소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전업직종인 안마가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직종의 취업여부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表 3-2-23〉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성별(남성)	23.265				34.128
연령	-4.39E-02				0.713
가구주여부	23.302				-4.471
결혼상태(유배우)	33.229**				10.760
교육연한	17.220***				12.219*
가구소득	0.278***				0.053
장애중증도(중증)		-29.236			-42.141*
장애발생시기		0.585			-1.002
일상생활도움정도		2.264			-3.539
외부활동불편정도		10.860*			5.482
건강상태		-15.686			-9.380
비장애인인식			4.055*		1.117
자아인식			10.071*		-2.100
차별경험			6.957		6.522
전문직·준전문직†				75.527***	57.204*
서비스·판매직†				47.638*	5.730
사무직†				-16.473	41.451*
상수	-79.041	95.505	40.794	90.473	-43.242
R square	0.481	0.130	0.051	0.129	0.764
F	20.676 (p<0.0005)	4.021 (p=0.002)	0.939 (p=0.428)	6.793 (p<0.0005)	3.125 (p=0.002)

주: 유의수준 * p < 0.1, ** p<0.05, ***p<0.01

† : 단순노무직이 기준범주.

통합모형(모형 V)에서는 연령, 장애중증도,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가 경증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았다. 또한, 직업에서는 전문직·준전문직과 사무직이 단순노무직보다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第 3 節 聽 覺 · 言 語 障 碍

1. 聽 覺 · 言 語 障 碍 人 的 概 念

청각장애란 聽力障 碍과 平衡機能障 碍로 구분되는데,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聾人과 難聽人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平衡機能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시각, 고유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判別基準은 다음과 같다.

-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社會生活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일컫는데, 언어장애인 調音障礙, 音聲障礙, 유창성장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언어장애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聽覺·言語障礙人的 職業的 特性¹⁰⁾

가. 聽覺障礙人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의 문제는 실업보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데 意思疏通의 어려움이 가장 주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는 전화기에 전신타자기를 장착한다든지, 컴퓨터

9)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란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함. 음성장애(voice disorder)란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함. 유창성장애는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함.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이 있음. 기타 뇌성마비·정신지체·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음.

10) 이 부분은 강위영, 나운환,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2001. pp.230~236의 내용을 참조함.

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통역하는 등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고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밝은 조명을 필요로 한다. 특히 讀話를 할 때에는 충분한 조명을 받는 얼굴을 보아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 중 소음이 진동감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할 경우 더욱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특히 騒音誘發性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음이 심한 환경은 청력손실을 더욱 심하게 한다. 따라서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을 막기 위하여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셋째, 보청기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室內音響을 고려해야 한다. 실내에 양탄자와 커튼같은 음향흡수물질을 두어 반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청각장애인은 구화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보청기 착용자가 말하는 사람 가까이 이동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고용계획수립과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시 재활상담사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전문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화통역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初期面接에서 평가, 훈련, 직업배치에 이르기까지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구직면접시 통역사를 배치하면, 고용주는 자신과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용주가 통역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주위환경에 익숙해지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담사는 청각장애인 내담자와 고용주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고용주와 동료근로자가 청각장애인에게 말할 때 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모양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시각적인 장애물 및 그늘에서, 그리고 돌아선 채로 말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言語障礙人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동일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직업환경은 口話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를 수반할 경우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언어장애 내담자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언어병리학자의 도움으로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구개 파열자나 구순파열을 가진 경우에는 치과교정치료 및 성형수술 등을 할 수 있다. 그외 인공보장구 및 인공성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언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家族支援과 職業相談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상담은 직업상의 대인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3. 實態分析

2000년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하나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각장애의 문제는 인지발달과 사회발달 뿐만 아니라 언어습득에도 영향을 미쳐 언어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Meadow(1980)는 청각장애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한 言語習得이 손상되고 파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각-구화 결함으로 인해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社會發達과 認知發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청각장애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정과 관련문헌에서 언어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雇傭現況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반적인 고용현황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고용현황을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 취업장애인과 실업장애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고용특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유형(비경제활동장애인, 실업장애인, 취업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 聽覺·言語障 碍 人 的 一 般 的 特 性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추정된 재가 장애인은 모두 144만 9천명인데, 이 중 청각·언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3%인 약 34만 9천명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자료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4,500명의 장애인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연령대의 청각·언어장애인 511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청각·언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3-1>과 같다. 청각·언어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4.8세이고, 가구소득은 104만 3천원으로 전체장애인의 평균가구소득액인 108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연한은 8.89년으로 중학교 중퇴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기간은 21.8년, 그리고 사회차별경험은 2.57로 차별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 필

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약 1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1〉 聽覺·言語障礙人의 特性(連續獨立變數의 技術統計)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대
연령	44.80	14.37	15	64
총가구소득	104.32	80.58	0	500
교육연한	8.89	3.59	3	18
장애기간	21.86	16.91	1	61
사회차별정도	2.57	1.09	1	4
희망생활비	119.35	75.00	10	600
취업기간	185.43	190.97	1	600
월근로소득	71.21	63.63	5	500
주당 근로시간	54.23	21.67	3	112

청각·언어장애인 중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취업기간은 15년 4개월로 전체 장애인의 평균 취업기간인 15년과 동일한 기간을 보였다. 취업 청각·언어장애인의 월 근로소득은 71만원으로 전체 장애인의 월근로소득인 79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이었다. 이를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1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알아보면,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8일로 전체 장애인의 평균근무일수보다 약간 많았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근무시간에 비해 약간 적은 편이었다¹¹⁾.

청각·언어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장애인 평균소득액과 비교해 볼 때, 가구월평균소득액과 개인월평균소득액이 각각 4만원, 8만원씩 낮았다. 이는 2000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액인 2백 33만원의 약 45%에 해당하는 정도로 전체 장애인 평균치 보다 비교적 높은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액이 더 낮은 상태에 있어, 가구

11)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주당 근무일수는 5.7일이었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4시간이었다.

측면에서나 개인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분석대상 청각·언어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전체의 14.4%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表 3-3-2〉 聽覺·言語障 碍 人 的 月 平 均 所 得

(단위: 만원)

	전체 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가구월평균소득	108	104
개인월평균소득	79	71

다음으로 명목·서열독립변수의 분포를 인구사회적, 의료적, 심리적 변수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人 口 社 會 的 特 性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家口主與否, 결혼상태, 자가용 및 컴퓨터 보유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64.6%, 여자가 35.4%를 차지하여 남자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상태는 有配偶(56.4%), 未婚(31.1%), 死別·離婚(12.5%)의 순으로 나타나 유배우상태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의 45.4%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인 청각·언어장애인이 절반 보다 약간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의 自家用 保有與否를 알아보면, 전체의 16.4%만이 자가용을 보유 내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장애인의 자가용 평균보유율인 11.0%와 비교해 보면 약 5% 정도 더 많이 자가용을 보유 내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경우는 7.6%의 청각·언어장애인만이 보유 내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전체 장애인 평균보유율인

11.9%와 비교해보면 더 낮은 보유율이다.

〈表 3-3-3〉 聽覺·言語障礙人的 人口社會的 特性

(단위: 명, %)

구분	내용	비율 (명)
성별	남자	64.6 (330)
	여자	35.4 (181)
	전체	100.0 (511)
결혼상태	미혼	31.1 (159)
	유배우	56.4 (288)
	사별·이혼	12.5 (64)
	전체	100.0 (511)
가구주 여부	가구주	45.4 (232)
	가구주 아님	54.6 (279)
	전체	100.0 (511)
자가용 보유여부	보유함	16.4 (84)
	보유하지 않음	83.6 (427)
	전체	100.0 (511)
컴퓨터 보유여부	보유함	7.6 (39)
	보유하지 않음	92.4 (472)
	전체	100.0 (511)

2) 醫療的 特性

의료적 특성은 일상생활 의존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장애원인 변수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일상생활 의존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18.6%,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가 13.7%,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13.3%,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10.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57.9%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약간 높았다.

외부활동의 불편정도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한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내지 매우 불편하다’고 한 경우는 모두 합하여 58.1%인 것으로 나타나 청각·언어장애인의 반 이상이 외부활동을 하는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건강하다’가 43.6%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나쁜 편이다’ 35.8%, ‘매우 건강이 나쁘다’ 16.4%, ‘매우 건강하다’ 4.1%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47.7%) 보다 건강이 나쁜 편(52.2%)이라고 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表 3-3-4〉 聽覺·言語障 碍 人 的 醫 療 的 特 性

(단위: 명, %)

구분	내용	비율 (명)
일상생활 의존정도	모든 일을 혼자할 수 있음	44.2 (226)
	대부분 혼자할 수 있음	13.7 (70)
	일부 남의 도움 필요함	18.6 (95)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함	10.2 (52)
	거의 모든 일에 도움 필요함	13.3 (68)
	전체	100.0 (511)
외부활동 불편정도	매우 불편	28.5 (135)
	약간 불편	29.6 (140)
	불편하지 않음	8.7 (41)
	전혀 불편하지 않음	33.2 (157)
	전체	100.0 (473)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4.1 (21)
	비교적 건강함	43.6 (223)
	건강이 나쁜 편임	35.8 (183)
	매우 건강이 나쁨	16.4 (84)
	전체	100.0 (511)
장애원인	비산재	97.8 (500)
	산재	2.2 (11)
	전체	100.0 (511)

청각·언어장애인들의 障礙原因에 대해서는 비산재인 경우가 97.7%, 산재에 의한 경우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에 서와 마찬가지로 청각·언어장애도 後天的 原因에 의한 장애발생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지만, 산재에 의해 장애가 발생되었다기보다는 疾患 등의 질병이나 老人性 難聽 등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3) 心理的 特性

청각·언어장애인들의 心理的 特性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장애인식, 사회차별 정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社會的 差別程度는 앞의 <표 3-3-1>에서 제시되었듯이 평균 2.57로 비교적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차별 정도를 구체적으로 就學, 學校生活, 結婚, 就業, 職場生活, 地域社會生活로 구분하여 평균점수로 알아보면 아래의 <표 3-3-5>와 같다. 즉, 구체적으로는 취업, 결혼, 학교생활 등에서 더 많은 사회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5> 聽覺·言語障礙人的 社會的 差別程度

구분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평균	2.41	2.32	2.25	2.10	2.35	2.87

주: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가끔 있는 편이다 4. 거의 없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이다’ 52.4%, ‘보통’ 27.6%, ‘긍정적이다’ 10.1%, ‘매우 부정적이다’ 9.7%, ‘매우 긍정적이다’ 0.2%로 나타나, 전체 청각·언어장애인의 62%는 비장애인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

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78.2%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表 3-3-6〉 聽 覺 · 言 語 障 碍 人 的 心 理 的 特 性

(단위: 명, %)

구분	내용	비율 (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매우 부정적임	9.7 (49)
	부정적임	52.4 (264)
	보 통	27.6 (139)
	긍정적임	10.1 (51)
	매우 긍정적임	0.2 (1)
	전체	100.0 (504)
장애인의 장애인식	장애인으로 인식	78.2 (399)
	장애인으로 인식않음	21.8 (111)
	전체	100.0 (510)

4) 職 業 的 特 性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중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청각·언어장애인의 經濟活動分野를 보면, 주로 농어업(39.5%), 단순노무직(29.5%), 서비스·판매직(12.0%)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 80% 이상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구와 개인소득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자영업(36.0%), 전일제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21.0%), 무급가족종사자(17.5%)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¹²⁾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12) 전체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40.2%), 전일제 상용근로자(23.8%), 일용근로자(15.8%), 무급가족종사자(10.5%), 임시근로자(5.2%), 고용주(3.4%), 시간제 상용근로자(1.2%)의 순으로 나타남.

〈表 3-3-7〉 就業 聽覺·言語障碍人の 經濟活動分野

(단위: %)

구분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능원·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명)
비율	0.5	2.0	2.5	12.0	39.5	10.0	4.0	29.5	100.0(200)

〈表 3-3-8〉 就業 聽覺·言語障碍人の 從事上 地位

(단위: %)

구분	자영업	고용주	상용 근로자 (전일제)	상용 근로자 (시간제)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명)
비율	36.0	2.0	21.0	0.5	2.0	21.0	17.5	100.0(200)

이외 구체적인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알아보면, <표 3-3-9>와 같다. 우선 전체 청각·언어장애인의 약 38%가 취업한 상태이며, 취업장소는 자영업(56.0%), 일반사업체(34.7%)에 가장 많이 취업하였고, 그 외에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4.1%)과 기타 기관(3.1%)에 조금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는 오히려 각각 1.6%, 0.5%에 해당하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취업하고 있었다.

취업된 장애인들의 경우 직장생활상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수입(48.7%)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생활이 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 업무과다(16.2%),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3.7%)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다고 한 경우도 22%나 되어 많은 수의 청각·언어장애인 자신들은 취업하는데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満足 程度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불만족스럽다(40.8%), 매우 불만족스럽다(10.5%), 매우 만족스럽다(4.2%)의 순으로 나타나, 불만족한 정도가 만족한 정도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求職活動 여부에 대해서는 94%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구직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취업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65.0%로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아서(7.0%), 재학중이기 때문에(6.7%),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한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취업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됨을 의미하며,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 就業希望 여부에 대해서는 52.2%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희망하는 근무형태로는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전일제 근무가 81.9%로 매우 높았다. 또한 희망하는 職種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로자(29.8%), 농·어업숙련노동자(24.2%),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17.4%)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취업장애인의 취업직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곳으로는 자영업(41.1%), 일반사업체(32.7%),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1.4%)의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 就業形態로는 출근근무(78.3%)가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12.2%), 재택근무+출근근무(4.9%)의 순으로 나타나 출근근무를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94.5%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35.0%),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힘들어서(31.6%),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23.8%)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유형별 적합 훈련직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향후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받고 싶은 분야로는 컴퓨터 정보처리분야(5.6%), 전기·전자분야(3.2%), 토목·건축분야(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3-3-9〉 聽覺·言語障礙人的 雇傭 現況

구분		비율 (명)
취업여부	취업	38.0 (194)
	미취업	62.0 (317)
	전체	100.0 (511)
취업장소	자영업	56.0 (108)
	일반사업체	34.7 (67)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4.1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6 (3)
	장애인 관련기관	0.5 (1)
	기타	3.1 (6)
	전체	100.0 (193)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낮은수입	48.7 (93)
	직장내 대인관계	2.6 (5)
	승진문제	0.5 (1)
	업무과다	16.2 (31)
	직무관련기능 부족	2.6 (5)
	적성과 맞지 않은 업무	1.0 (2)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3.7 (7)
	출퇴근 불편	1.0 (2)
	어려움 없음	22.0 (42)
	기타	1.6 (3)
	전체	100.0 (191)
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4.2 (8)
	대체로 만족스럽다	44.5 (85)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40.8 (78)
	매우 불만족스럽다	10.5 (20)
	전체	100.0 (191)
구직활동 여부	예	5.7 (18)
	아니오	94.3 (297)
	전체	100.0 (315)

〈表 3-3-9〉 계속

구분	비율 (명)
미취업된 주된 이유	3.5 (11)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주어서	3.5 (11)
임금이 너무 낮아서	- (-)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5.1 (16)
작업환경(편의시설)이 열악해서	0.3 (1)
출퇴근이 힘들어서	- (-)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65.0 (204)
다른 질병때문에	2.9 (9)
나이가 많아서	7.0 (22)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3.5 (11)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0.6 (2)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0.6 (2)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4.1 (13)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0.3 (1)
재학 중이기 때문에	6.7 (21)
기타	0.3 (1)
전체	100.0 (314)
취업희망여부	52.2 (265)
예	52.2 (265)
아니오	47.8 (243)
전체	100.0 (508)
희망근무형태	81.9 (217)
전일제	81.9 (217)
시간제	18.1 (48)
전체	100.0 (265)
희망 직종	0.4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0.4 (1)
전문가	3.0 (8)
기술공 및 준전문가	4.5 (12)
사무직원	4.9 (13)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10.9 (29)
농·어업 숙련근로자	24.2 (64)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7.4 (46)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9 (13)
단순노무직 근로자	29.8 (79)
전체	100.0 (265)

〈表 3-3-9〉 계속

구분		비율 (빈도)	
희망	자영업	41.1 (108)	
취업장소	일반사업체	32.7 (86)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11.4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3 (14)	
	장애인 관련단체나 기관	6.8 (18)	
	기타	2.7 (7)	
	전체	100.0 (263)	
희망	재택근무	12.2 (32)	
	취업형태	출근근무	78.3 (206)
		출근근무(보호고용)	3.4 (9)
		출근근무(지원고용)	0.8 (2)
		재택근무+출근근무	4.9 (13)
		재택근무+지원·보호고용	0.4 (1)
전체	100.0 (263)		
장애후	예	4.9 (25)	
직업훈련	경험	0.6 (3)	
	아니오	94.5 (480)	
여부	전체	100.0 (508)	
	전체	100.0 (508)	
훈련받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3.8 (113)	
	등록절차를 몰라서	2.5 (12)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힘들어서	31.6 (150)	
	직업훈련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0.6 (3)	
	직업훈련내용이 맘에 안들어서	0.2 (1)	
	직업훈련이 취업도움에 안되어서	3.2 (15)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35.0 (166)	
	기타	3.0 (14)	
	전체	100.0 (474)	
	전체	100.0 (474)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은 국가에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 장애인에 대한 認識改善(24.3%), 職業能力 開發(23.3%), 賃金補助(20.9%), 취업정보 제공(13.5%)의 순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表 3-3-10〉 聽覺·言語障 碍 人 的 職 業 再 活 을 爲 的 國 家 役 割

(단위: 명, %)

구분	비율	(명)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3	(112)
취업정보 제공	13.5	(62)
직업능력개발(직업적응훈련)	23.3	(107)
취업상담·평가·알선	4.3	(20)
사후지도	0.9	(4)
임금보조	20.9	(96)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0	(14)
의무고용 준수 유도	8.7	(40)
기타	1.1	(5)
전체	100.0	(460)

나. 經 濟 活 動 類 型 別 雇 傭 現 況

1) 非 經 濟 活 動 障 碍 人 과 經 濟 活 動 障 碍 人 的 雇 傭 現 況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경제활동과 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하여 특성을 t-검증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연령, 교육연한, 가구소득, 장애기간, 사회차별 정도에 대한 비경제 활동·경제활동장애인간의 t-검증 결과 <표 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기간, 사회차별 정도에서 양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障 碍 期 間 的 經 濟 活 動 障 碍 人 的 經 濟 活 動 障 碍 人 的 平 均 障 碍 期 間 은 16년인데 반 해 경제활동장애인은 29년으로 경제활동장애인들의 장애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양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재활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직업재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社會差別程度의 경우 비경제활동장애인은 사회차별 평균점수가 2.47 즉,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경제활동장애인의 경우는 사회차별 평균점수가 2.69로 비경제활동장애인 보다 약간 더 사회차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양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年齡, 教育年限이나 家口所得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 양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 3-3-11〉 聽覺·言語障礙人的 非經濟活動·經濟活動狀態에 대한 t-檢證

구분		빈도	평균	SD	t	P
연령	비경제활동	286	43.99	15.633	-1.471	0.142
	경제활동	225	45.83	12.547		
교육연한	비경제활동	229	9.12	3.471	1.520	0.129
	경제활동	176	8.58	3.731		
가구소득	비경제활동	283	104.02	83.253	-0.096	0.924
	경제활동	222	104.71	77.238		
장애기간***	비경제활동	227	16.13	14.275	-8.168	P<0.0005
	경제활동	176	29.26	17.226		
사회차별**	비경제활동	284	2.47	1.163	-2.395	0.017
	경제활동	222	2.69	0.980		

주: 유의수준 ***p<0.01, **p<0.05, *p<0.1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의료적·심리적 변수와의 카이제곱 분석결과를 보면 <표 3-3-12>와 같다.

분석결과 비경제활동장애인과 경제활동장애인간의 가구주 여부, 성별, 결혼상태, 자가용 보유여부, 컴퓨터 보유여부, 장애정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일반적인 건강상태, 장애인의 자아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家口主 與否의 경우 비가구주일수록 비경제활동상태에, 가구주일수록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일수록 경제활동참여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性別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비경제활동상태에 많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반면,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상태보다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가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구주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볼 때 가구주이면서 남성일수록 경제활동상태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結婚狀態는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의 장애인이 많으나,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유배우의 경우에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미혼, 이혼·사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혼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의 50%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미혼, 이혼·사별상태에서 보다는 유배우 상태인 경우에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앞의 분석결과와 연관시켜서 보면 유배우상태의 남성가구주일수록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가용과 컴퓨터 보유여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유율이 저조한 편이나 자가용 및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가용 및 컴퓨터 보유여부가 경제활동상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장애정도와 의 관계에서는 장애정도가 경미할수록 경제활동상태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정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도움정도에서는 외부 도움 없이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 비경제활동상태에 비해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2배 이상 많았고, 도움필요정도가 많아질수록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적어지고 있어 일상생활 도움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외부활동 불편정도와외의 관계에서는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활동 불편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건강상태와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장애인의 자아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비경제활동상태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자아인식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외의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表 3-3-12〉 聽 覺 · 言 語 障 碍 人 的 非 經 濟 · 經 濟 活 動 狀 態 에 따 른 χ^2 分 析

구분	경제활동유형			χ^2	df	P	
	비경제	경제활동	계(n)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66.7(186)	33.3(93)	100.0(279)	28.539	1	P<0.0005
	가구주	43.1(100)	56.9(132)	100.0(232)			
성별***	여자	65.7(119)	34.4(62)	100.0(181)	10.872	1	0.001
	남자	50.6(167)	49.4(163)	100.0(330)			
결혼상태***	미혼	66.0(105)	34.0(54)	100.0(159)	9.835	2	0.007
	유배우 사별·이혼	50.7(146) 54.7(35)	49.3(142) 45.3(29)	100.0(288) 100.0(64)			
자기용 보유여부***	보유하지 않음	59.7(255)	40.3(172)	100.0(427)	14.825	1	P<0.0005
	보유함	36.9(31)	63.1(53)	100.0(84)			
컴퓨터 보유여부**	보유하지 않음	57.2(270)	42.8(202)	100.0(472)	3.826	1	0.050
	보유함	41.0(16)	59.0(23)	100.0(39)			
장애정도***	중증	65.4(134)	34.6(71)	100.0(205)	15.491	2	P<0.0005
	중도	48.1(52)	51.9(56)	100.0(108)			
	경증	33.3(9)	66.7(18)	100.0(27)			
일상생활 도움정도***	모두 혼자함	31.4(71)	68.6(155)	100.0(226)	127.987	4	P<0.0005
	대부분 혼자함	54.3(38)	45.7(32)	100.0(70)			
	일부 도움 필요	69.5(66)	30.5(29)	100.0(95)			
	대부분 도움 필요	88.5(46)	11.5(6)	100.0(52)			
	거의 모두 도움필요	95.6(65)	4.4(3)	100.0(68)			
외부활동 불편정도***	매우 불편	75.6(102)	24.4(33)	100.0(135)	44.275	3	P<0.0005
	약간 불편	48.6(68)	51.4(72)	100.0(140)			
	불편하지 않은 편	46.3(19)	53.7(22)	100.0(41)			
일반적인 건강상태***	거의 불편 없음	37.6(59)	62.4(98)	100.0(157)	19.177	3	P<0.0005
	매우 건강	52.4(11)	47.6(10)	100.0(21)			
	비교적 건강	47.5(106)	52.5(117)	100.0(223)			
	건강이 나쁜 편	57.9(106)	42.1(77)	100.0(183)			
	매우 건강이 나쁨	75.0(63)	25.0(21)	100.0(84)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表 3-3-12〉 계속

구분	경제활동유형			χ^2	df	P	
	비경제	경제활동	계(n)				
비장애인의 인식	매우 부정적	69.4(34)	30.6(15)	100.0(49)	5.846	4	0.211
	부정적	56.8(150)	43.2(114)	100.0(264)			
	보통	53.2(74)	46.8(65)	100.0(139)			
	긍정적	51.0(26)	49.0(25)	100.0(51)			
	매우 긍정적	-	100.0(1)	100.0(1)			
장애인의 자아인식**	장애인이 아니다	45.9(51)	54.1(60)	100.0(111)	5.914	1	0.015
	장애인이다	58.9(235)	41.1(164)	100.0(399)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2) 失業障礙人과 就業障礙人의 雇傭 現況

청각·언어장애인을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실업과 취업상태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t-검증과 카이제곱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간의 연령, 교육연한, 가구소득, 장애기간, 사회차별정도에 대한 t-검증 결과, 家口所得의 경우에만 실업과 취업 장애인 양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취업한 청각·언어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사회차별 정도는 실업·취업장애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실업자와 취업자 특성 사이에 소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교육이나 장애기간, 연령 등에서 거의가 차이가 없는 동질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업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쉬울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表 3-3-13> 聽覺·言語障礙人的 失業·就業狀態에 대한 t-檢證

	구분	빈도	평균	SD	t	P
연령	실업	31	44.13	15.494	-0.811	0.418
	취업	194	46.10	12.036		
교육연한	실업	24	8.85	3.167	0.383	0.702
	취업	152	8.53	3.820		
가구소득*	실업	31	81.97	66.319	-1.776	0.077
	취업	191	108.40	78.399		
장애기간	실업	24	26.12	17.801	-0.960	0.339
	취업	152	29.75	16.142		
사회차별	실업	29	2.42	1.003	-1.622	0.106
	취업	193	2.74	0.972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간의 가구주 여부, 성별, 결혼상태, 자가용 보유여부, 컴퓨터 보유여부, 장애정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자아 인식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를 보면 <표 3-3-1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변수에서 실업장애인과 취업장애인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취업 여부(실업과 취업)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우 실업과 취업의 차이보다 경제활동상태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이나의 차이가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은 일단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취업은 쉽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表 3-3-14〉 聽覺·言語障礙人的 失業·就業狀態에 따른 χ^2 分析

구분	경제활동유형			χ^2	df	P
	실업	취업	계(n)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14.0(13)	가구주 86.0(80)	100.0(93)	0.005	1	0.942
	13.6(18)	86.4(114)	100.0(132)			
성별	여자 11.3(7)	남자 88.7(55)	100.0(62)	0.446	1	0.504
	14.7(24)	85.3(139)	100.0(163)			
결혼상태	미혼 18.5(10)	유배우 81.5(44)	100.0(54)	1.411	2	0.494
	12.0(17)	88.0(125)	100.0(142)			
	사별·이혼 13.8(4)	86.2(25)	100.0(29)			
자가용 보유여부	보유하지 않음 15.7(27)	보유함 84.3(145)	100.0(172)	2.266	1	0.132
	7.5(4)	92.5(49)	100.0(53)			
컴퓨터 보유여부	보유하지 않음 13.4(27)	보유함 86.6(175)	100.0(202)	0.282	1	0.596
	17.4(4)	82.6(19)	100.0(23)			
장애정도	중증 14.1(10)	중도 85.9(61)	100.0(71)	0.080	2	0.961
	14.3(8)	85.7(48)	100.0(56)			
	경증 16.7(3)	83.3(15)	100.0(18)			
일상생활 도움정도	모두 혼자함 12.9(20)	대부분 혼자함 15.6(5)	100.0(155)	2.603	4	0.626
	대부분 혼자함 15.6(5)	일부 도움 필요 84.4(27)	100.0(32)			
	일부 도움 필요 13.8(4)	대부분 도움 필요 86.2(25)	100.0(29)			
	대부분 도움 필요 33.3(2)	거의 모두 도움 필요 66.7(4)	100.0(6)			
	거의 모두 도움 필요 -	100.0(3)	100.0(3)			
외부활동 불편정도	매우 불편 12.1(4)	약간 불편 87.9(29)	100.0(33)	1.680	3	0.641
	12.5(9)	87.5(63)	100.0(72)			
	불편하지 않은 편 22.7(5)	77.3(17)	100.0(22)			
	거의 불편 않음 13.3(13)	86.7(85)	100.0(98)			
일반적인 건강상태	매우 건강 -	비교적 건강 100.0(10)	100.0(10)	3.912	3	0.271
	12.0(14)	88.0(103)	100.0(117)			
	건강이 나쁜 편 15.6(12)	84.4(65)	100.0(77)			
	매우 건강이 나쁨 23.8(5)	76.2(16)	100.0(21)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表 3-3-14〉 계속

구분	경제활동유형			χ^2	df	P	
	실업	취업	계(n)				
비장애인의 인식	매우 부정적	20.0(3)	80.0(12)	100.0(15)	2.912	4	0.573
	부정적	15.8(18)	84.2(96)	100.0(114)			
	보통	9.2(6)	90.8(59)	100.0(65)			
	긍정적	8.0(2)	92.0(23)	100.0(25)			
	매우 긍정적	-	100.0(1)	100.0(1)			
장애인의자 아인식	장애인이 아니다	8.3(5)	91.7(55)	100.0(60)	2.084	1	0.149
	장애인이다	15.9(26)	84.1(138)	100.0(164)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3)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經濟活動類型(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취업)으로, 비경제활동은 ‘0’, 경제활동은 ‘1’, 취업은 ‘2’로 부호화하였다.

獨立變數는 人口社會學的 變數로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교육연한, 가구소득, 자가용 보유여부, 컴퓨터 보유여부를 사용하였고, 醫療的 變數로는 장애기간, 도움의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장애원인을, 그리고 心理的 變數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차별정도, 장애인식 등을 사용하였다.

연령, 교육연한, 장애기간, 가구소득은 연속변수이며, 외부의 도움의 필요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의 序列變數이다. 도움의 필요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며,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불편정도가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符號化하였다.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

다. 사회적 차별정도는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사회적 차별이 ‘매우 많다’ 1점에서 ‘거의 없다’ 4점으로 부여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성별은 ‘1’ 남성, ‘0’ 여성이며, 가구주 여부는 ‘1’ 가구주, ‘0’ 비가구주, 그리고 자가용 및 컴퓨터 보유여부는 ‘1’ 보유, ‘0’ 미보유이다. 장애인식 여부는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1’,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고, 결혼상태는 유배우, 미혼, 사별·이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세 범주의 名目變數를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이며, 이를 위해 SPSS WIN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本節의 로짓분석에서는 범주를 3개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정하는 계수는 2범주/1범주, 3범주/1범주의 두 개이다. 이는 <표 3-3-15>에 제시된 두 번째, 세 번째 계수이다. 이 외에 앞의 두 계수를 이용하여 범주를 바꾼 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네 번째 계수를 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칼럼의 계수는 두 번째 칼럼부터 비경제/취업, 실업/취업, 실업/비경제의 계수가 된다.

우선 비경제활동을 취업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칼럼에서 그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가구주 여부, 연령, 자가용 보유여부, 장애기간, 장애정도, 일상생활 도움정도, 장애인 자아인식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비가구주일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가구의 생계는 가구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통념이 있기 때문으로, 다시 말해 가구주일수록 더욱 취업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보유여부의 경우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취업으로 인해 이동수단으로써 자가용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즉, 자가용 보유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가보다는 취업이 자가용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기간의 경우는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앞의 연령변수에서 제시되었듯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연령이 많은 편이었고 장애기간 또한 길며, 취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활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장애정도의 경우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욱 커 취업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 도움정도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장구나 자원봉사자(수화통역사)와 같은 인력의 지원 등이 제공된다면 좀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경우 본인을 장애인으로 인식할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장애인 본인에 대한 장애인식이 취업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함으로써 동반되는 부정적인 장애인식은 장애인을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실업자를 취업장애인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결혼상태, 자가용 보유여부, 장애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의 상태일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의 경우에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가용 보유여부의 경우는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서도 제시되었듯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이 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취업에 의해 자가용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정도의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이어도 취업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취업은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이 안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외부활동 불편정도의 경우는 외부활동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외부활동에 불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고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건강상태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취업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15〉 聽覺·言語障碍人的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지트 分析結果

변수	비경제/취업	실업/취업	실업/비경제
상수	-0.640	-32.343	-31.702
가구주여부	-1.523**	0.277	1.801
성별	-0.046	1.620	1.666
연령	0.066**	0.044	-0.022
결혼상태	-0.540	-2.968*	-2.428
교육연한	0.185	0.121	-0.064
가구소득	-0.003	0.000	0.002
자가용 보유여부	-1.501***	-2.931*	-1.429
컴퓨터 보유여부	-0.485	-0.457	0.028
장애기간	-0.059***	-0.018	0.041
장애정도	-0.579*	1.441*	2.020***
일상생활 도움정도	0.607***	0.650	0.043
외부활동 불편정도	-0.091	1.051**	1.142**
건강상태	-0.035	2.316***	2.351***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0.148	0.045	0.193
사회차별 정도	-0.066	0.002	0.067
장애인 자아인식	1.074**	18.767	17.693

주: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네 번째 칼럼에서는 실업자를 비경제활동장애인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장애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경증일수록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더욱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활동 불편정도에서는 불편정도가 적을수록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건강

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와 달리 장애가 외형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계수를 모두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계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장애정도였고, 두 가지 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자가용 보유여부,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의 경우 중증일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경증일수록 취업이나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어질수록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실제로 취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업상태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직장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업장내 의사소통 가능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자가용 보유여부에서는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가용 보유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취업의 영향으로 자가용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활동 불편정도에서는 외부활동이 불편하지 않을수록 취업이나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앞의 장애정도에서 장애정도가 경증이어도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것과 동일하게 외부활동을 하는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어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실업에 있는 장애인

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이 나쁠수록 취업이나 비경제활동에 비해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나쁜 상태이여도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되고 있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第 4 節 精 神 遲 滯¹³⁾

정신지체란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저하되고 가정, 사회, 직장에서의 적응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서 18세 이전의 發達時期에 나타나는 장애를 말한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추정된 장애인 1,449,496명 중 정신지체인은 143,162명에 달한다(변용찬 외, 2001). 정신지체장애인은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집단 중 하나이다. 실제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지체인 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인의 비중은 74.9%에 이른다. 이런 만큼 한 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의 성공여부는 정신지체인의 職業再活에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느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먼저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신지체인 직업적 특성을 고찰한 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原資料를 토대로 이들 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 현황과 욕구를 분석할 것이다.

1. 職 業 的 特 性

정신지체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

13) 발달장애는 취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만큼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職務遂行能力의 부족이다. 정신지체인들은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복잡한 職務를 수행하거나 知識의 적용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정신지체인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술습득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비율이 높고, 망각된 기술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며, 학습의 轉移 및 一般化의 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둘째, 對人關係 등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 정신지체인이 직업현장에서 適應能力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 기능의 저하 때문이 아니라 社會適應能力의 결함 때문인 경우가 많다(이청자, 1998)는 지적이 있다. 주의산만, 자해행위, 공격적 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등의 문제가 정신지체인의 직업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란 것이다. 정신지체 고등부 졸업생의 전환과정 결과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지체인의 離職率이 다른 장애인보다 높으며, 이직원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일이 너무 어려워 이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료나 상사와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장애가 너무 심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곽준기, 1995).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정신지체인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心理的, 學習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에 임해야 한다. 정신지체인들은 지적 능력, 기억력, 언어, 동기, 자아개념 등의 영역에서 다른 유

형의 장애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2. 實 態 分 析

여기서는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가. 分 析 對 象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지체장애인은 278명이었다. 이 중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대상은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는 총 211명이었다.

나. 分 析 對 象 者 的 一 般 的 特 性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들은 다음의 <표 3-4-1> 및 <표 3-4-2>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먼저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言語障 碍는 평균 2.40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¹⁴⁾ 학습능력은 평균 4.47로서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교육은 약 8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약 33세, 가구소득은 약 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 점수는 평균 1.91로서 차별

14) 언어장애는 서열변수로 측정된 변수로서 1. 언어발달이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다, 2.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언어의 발달이 있으나 아주 늦다, 3. 초등학교 입학 한 후에야 언어의 발달이 일어난다, 4. 언어발달이 거의 없다고 측정하였다.

15) 학습능력은 서열변수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내용은 0. 언어발달이 거의 없다, 4. 가나나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 5.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 6.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구성되어 있다.

을 많이 받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10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應答者 중 취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약 53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勤續年數는 약 8년 9개월 정도였으며,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소득은 평균 약 40만 5천원이었다.

<表 3-4-1> 精神遲滯人の 特性(連續變數의 技術統計)

변 수	장애정도		교육 년수	연령	차별 경험	주당 근로 시간	총가구 소득	희망 생활 비	근속 년수	월근로 소득
	언어	학습								
평 균	2.40	4.47	7.69	32.93	1.91	53.49	85.40	99.87	8.75	40.52
표준편차	1.18	2.69	3.59	10.55	.87	25.77	69.99	62.53	8.24	25.84
최 저	1	0	3	16	1	10	0	10	0.08	4
최 대	4	7	16	61	4	112	410	420	30.00	120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주요한 특성들의 분포는 다음의 <표 3-4-2>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실업자가 약 74.9%, 취업자가 약 25.1%로 나타나 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면 높지만 거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32.2%, 남성이 77.8%의 비율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장애인 중 17.1%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인 사람이 76.3%, 기혼인 사람이 13.7%, 이혼·사별인 사람이 9.9%로 나타나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生活保護對象者는 23.7%를 차지해 많은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表 3-4-2〉 精神遲滯人の 特性 分布(名目 및 序列變數)

(단위: %)

변수명	범 주	비율	변 수 명	범 주	비율
취업여부	취업	25.1	경제활동	전문·사무직	0.0
	실업	74.9	분야	비전문·생산직	100.0
직업훈련	비이수	94.3	종사상 지위	자영업·고용주	9.3
	이수	5.7		상용직	22.2
성	여성	32.2	임시·일용직	임시·일용직	68.5
	남성	67.8		생보자	23.7
가구주 여부	가구주	17.1	생보자	비생보자	76.3
	비가구주	82.9		상층	0.5
결혼상태	미혼	76.3	계층의식	중상층	2.4
	기혼	13.7		중하층	23.8
이혼·사별	이혼·사별	9.9	하층	하층	73.3
				매우 많다	70.7
취업시 차별경험	매우 많다		취업시 차별경험	많은 편이다	14.0
	가끔 있는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6.7
직장생활 차별경험	가끔 있는 편이다		직장생활 차별경험	거의 없다	8.7
	거의 없다			매우 많다	65.0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17.1	
	가끔 있는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8.1	
	거의 없다		거의 없다	9.8	

한편, 취업한 장애인 중 전문사무직에는 한 명도 취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든 정신지체인들이 비전문·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지체인의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從事上 地位의 분포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고용주가 총 9.3%, 상용직이 22.2%, 임시·일용직이 68.5%를 차지하고 있었다. 所屬 階層 意識은 97.1%나 되는 대부분이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해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 장애인들 중 84.7%가 취업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생활에서는 82.1%가 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해, 특히 정신지체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就業 關聯 要因 分析

여기서는 취업을 한 장애인과 실업(실망 실업자 포함)중인 장애인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신지체인의 노동시장 관련 욕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지체인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다음의 <표 3-4-3>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표 3-4-3> 就業 障礙人들의 勤務 場所

(단위: %)

분류	자영업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일반 사업체	직업재활 시설	기타	계
비율	50.9	0.0	1.9	39.6	3.8	3.8	100.0

<표 3-4-3>을 보면 취업한 장애인들의 절반 가량이 自營業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 다음이 一般事業體로서 취업 장애인의 39.6%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는 한 명도 취업하고 있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1.9%, 직업재활시설에는 3.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취업 방침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취업 장애인과 실업 장애인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자. 먼저 성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4-4>와 같다.

<表 3-4-4> 性別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성 별		전 체	
	여 성	남 성		
취업여부	실 업	37.3(59)	62.7(99)	100.0(158)
	취 업	17.0(9)	83.0(44)	100.0(53)
전 체		32.2(68)	67.8(143)	100.0(211)

($\chi^2=7.533$, $df=1$, $p=0.006$)

<표 3-4-4>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이거나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4-5>는 가구주여부에 따른 취업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 가구주여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表 3-4-5> 家口主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분	가구주 여부		전 체	
	비가구주	가구주		
취업여부	실 업	84.2(133)	15.8(25)	100.0(158)
	취 업	79.2(42)	20.8(11)	100.0(53)
전 체		82.9(175)	17.1(36)	100.0(211)

($\chi^2=0.682$, $df=1$, $p=0.409$)

<표 3-4-6>은 직업훈련여부에 따라 취업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직업훈련여부가 취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인은 직업훈련의 효과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表 3-4-6〉 職業訓練與否에 따른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분	직업훈련 이수여부		전 체	
	비이수	이수		
취업여부	실 업	94.3(148)	5.7(9)	100.0(157)
	취 업	94.3(50)	5.7(3)	100.0(53)
전 체		94.3(198)	5.7(12)	100.0(210)

(X²=0.000, df=1, p=0.984)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原因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 훈련 施策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정신지체인은 認知能力의 장애와 더불어 기능상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한 직업평가와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표 3-4-7>과 같다.

〈表 3-4-7〉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理由

(단위: %)

이유	비 율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6.5
등록절차를 몰라서	3.6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51.5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5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	0.0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	16.3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0.0
기타	1.5
계	100.0

<표 3-4-7>을 보면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정신지 체인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職業訓練 運營過程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을 넘는 51.5%에 해당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부모가 정확한 평가나 지식 없이 선부른 판단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16.3%나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업훈련이 있는지를 몰라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26.5%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직업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다음은 教育集團別 취업여부의 차이이다. <표 3-4-8>은 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육수준에 비해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의 유형이 교육정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는 단순작업만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욕구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3-4-8> 教育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교육정도				전 체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		
취업여부	실 업	31.0(49)	25.3(40)	17.7(28)	24.7(39)	100.0(158)
	취 업	18.9(10)	56.6(30)	7.5(4)	15.1(8)	100.0(53)
전 체		28.0(59)	33.2(70)	15.2(32)	22.3(47)	100.0(211)

($\chi^2=21.803$, $df=5$, $p=0.001$)

<표 3-4-9>는 결혼형태별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기혼인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을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려는 노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表 3-4-9〉 結婚形態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 분	결혼형태			전 체	
	미혼	기혼	이혼		
취업여부	실 업	82.9(126)	10.5(16)	6.6(10)	100.0(152)
	취 업	67.3(35)	25.0(13)	7.7(4)	100.0(52)
전 체		78.9(161)	14.2(29)	6.9(14)	100.0(204)

($\chi^2=12.049$, $df=4$, $p=0.017$)

다음의 <표 3-4-10>과 <표 3-4-11>은 差別 經驗 程度에 따른 취업분 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취업할 때나 직장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의 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차별이 정 신지체인들의 취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4-10〉 就業時 差別經驗 程度別 就業與否의 差異

(단위:%, 명)

구분	취업시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취업 실 업	75.5(83)	15.5(17)	3.6(4)	5.4(6)	100.0(110)
여부 취 업	57.5(23)	10.0(4)	15.0(6)	17.5(7)	100.0(40)
전체	70.7(106)	14.0(21)	6.7(10)	8.6(13)	100.0(150)

($\chi^2=12.554$, $df=3$, $p=0.006$)

<表 3-4-11> 職 場 生 活 에 서 의 差 別 經 驗 程 度 別 就 業 與 否 의 差 異

(단위:%, 명)

구분	취업시 차별 경험 정도				전 체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취업 실업	73.2(60)	17.1(14)	6.1(5)	3.7(3)	100.0(82)
여부 취업	48.8(20)	17.1(7)	12.2(5)	22.0(9)	100.0(41)
전체	65.0(80)	17.1(21)	8.1(10)	9.8(12)	100.0(123)

($\chi^2=13.125$, $df=3$, $p=0.004$)

다음은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속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4-12>와 같다. <표 3-4-12>에 따르면 教育年數는 취업자가 오히려 실업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을 당한 경험과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障 碍 程 度 에 있어서는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에서 취업자 집단의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12> 就 業 與 否 에 따 른 精 神 遲 滯 人 特 性 의 差 異

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교육년수	실업	8.2890	3.5121	3.405	0.001
	취업	6.1429	3.3592		
차별점수	실업	1.8955	.8847	-0.413	0.680
	취업	1.9528	.8352		
연 령	실업	32.54	10.84	-0.925	0.356
	취업	34.09	9.61		
장애 정도	언어 능력	실업 2.51 취업 2.06	1.21 1.01	2.472	0.014
	학습 능력	실업 4.14 취업 5.47	2.83 1.95		

라. 就業欲求 分析

이상의 분석 결과 정신지체인의 취업률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4-1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중인 정신지체인들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자의 23.6%였다. 나머지 76.4%는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13> 精神遲滯失業者의 就業希望 與否

(단위: %)

희망 여부	비율
희망함	23.6
원하지 않음	76.4
계	100.0

<표 3-4-14>는 실업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근무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5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全日制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時間制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40.5%에 달했다. 취업중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일제(93.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장애인들이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오랜 시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表 3-4-14>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勤務形態

(단위: %)

희망 근무형태	비율
전일제	59.5
시간제	40.5
계	100.0

다음으로 실업 장애인들의 희망 직종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 3-4-15>는 希望 職種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 장애인들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단순노무직 정도에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로서 전체의 24.3%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技術工 및 準專門家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의 직종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15>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職種

(단위: %)

희망 취업직종	비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
전문가	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1
사무직원	2.7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13.5
농어업 숙련근로자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24.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7
단순노무직 근로자	48.6
계	100.0

<표 3-4-16>은 정인지체장애인들이 희망하는 就業 場所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장애인들은 障礙人 關聯 團體나 機關에 취업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사업체, 정부기관,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취업장애인들은 일반사업체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表 3-4-16〉 精神遲滯失業者의 希望 就業場所

(단위: %)

희망 취업장소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자영업	10.8	36.4
일반사업체	18.9	43.2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16.2	2.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1.6	4.5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	32.4	9.1
기타	-	4.5
계	100.0	100.0

($\chi^2=25.495$, $df=5$, $p<0.0005$)

<표 3-4-17>은 정신지체인들이 희망하는 就業 形態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 중인 정신지체인들은 出勤勤務와 在宅勤務를 혼합한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 장애인들은 출근근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장애인들이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支援雇傭이며, 그 다음이 순수한 出勤勤務, 다음이 保護雇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 장애인들의 경우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취업장애인은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4-17〉 精神遲滯人의 希望 就業形態

(단위: %)

희망 취업 형태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재택근무	10.8	36.4
출근근무	18.9	43.2
출근근무(보호고용)	16.2	2.3
출근근무(지원고용)	21.6	4.5
재택근무+출근근무	32.4	9.1
재택근무+지원·보호고용	0	4.5
계	100.0	100.0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결과는 <표 3-4-18>과 같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응답이 비슷하지만 실업자들은 ‘職業 能力 開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들은 賃金補助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다. 이 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취업정보제공도 중요한 국가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表 3-4-18> 精神遲滯인이 바라는 國家 役割

(단위: %)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 역할	비 율	
	실업자	취업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23.0	8.7
취업정보 제공	9.5	15.2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28.6	30.4
취업상담·평가·알선	6.3	4.3
사후지도	0.8	2.2
임금보조	23.0	34.8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2	2.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5.6	2.2
계	100.0	100.0

마. 所得 關聯 要因 分析

여기서는 취업한 정신지체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다른 변수들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분석할 때와 똑같으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의 평균점을 사용한 것과 장애유형이라는 변수가 빠졌다는 것만 다르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4-19>와 같다.

<표 3-4-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하나도 없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경

우 일반 노동시장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메카니즘으로 임금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表 3-4-19〉 獨立變數들의 回歸計數 分析結果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교육수준	-0.154	-0.632*
언어능력제한	-0.204	-0.214
학습능력	-0.178	-0.318
직업훈련여부(비이수 기준)	1.029	0.365
근속년수	-0.048	-0.436
성(여성기준)	-2.101	-0.745
연령	0.258	2.576
연령제곱	-0.0048	-3.156
결혼 상태(미혼 기준)		
- 기혼	-0.731	-.349
- 이혼·사별	-3.729	-0.956*
가구주(비가구주 기준)	0.729	0.437
종사상지위(임시·일용기준)		
- 자영업·고용주	0.983	0.398
- 상용직	-0.145	-0.090
직장생활 차별 경험	0.042	0.057
상수		1.110
R-square		0.200
(F)		1.393

주: 유의수준 * p< 0.1, ** p<0.05, ***p<0.01

2. 分析結果 要約

이상의 분석 결과 정신지체인의 경우 취업률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여부와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성별, 결혼 형태, 장애정도, 차별 경험 정도, 교육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여부, 직업훈련 이수여부, 연령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 남성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미

혼에 비해 기혼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년수는 증가할수록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第 5 節 精 神 障 碍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出現率은 인구 천명당 1.2건이며, 이를 전국 재가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 정신장애인은 56,461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설장애인을 합칠 경우 정신장애의 출현율은 인구 1천명당 1.7건으로 전국의 법정 정신장애인은 78,568명으로 추정된다(변용찬외, 2001).

정신장애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장애확대범주에 포함된 장애유형이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治療歷을 제출하여야 한다(변용찬 외, 2001).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만성적 성격과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며, 특히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개별화하여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본다.

1. 調査對象自의 一般的 特性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된 정신장애인은 179명이며, 이 중 본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장애인 159명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55.3%, 여자가 44.7%를 차지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30대(33.6%), 40대(30.2%)가 가장 많으며, 50대(18.9%), 20대(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이상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중학교 이상이 23.9%, 초등학교 이상이 20.8%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은 13.2%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5.2%, 이혼한 경우가 20.8%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이혼률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정신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24.5%를 차지하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와 결혼상태와 함께 비교해보면, 성인 정신장애인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에서 하나의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다른 가구주의 보호아래 가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는 無職인 경우가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가 15.7%로 대부분이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농·어업 근로자(5.7%)와 단순노무직 근로자(5.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5-1〉 精神障碍人の 人口學的 變數의 記述統計置(頻度分布)

	비율 (N)		비율 (N)
성별		종사상의 지위 ¹⁾	
남자	55.3 (88)	자영업자	20.0 (4)
여자	44.7 (71)	상용근로자(전일제)	10.0 (2)
연령		상용근로자(시간제)	5.0 (1)
10대	1.9 (3)	임시근로자	10.0 (2)
20대	11.3 (18)	일용근로자	25.0 (5)
30대	33.6 (55)	무급가족종사자	30.0 (6)
40대	30.2 (48)	연급가입여부	
50대	18.9 (30)	예	6.9 (11)
60대	3.1 (5)	아니오	93.1 (148)
교육정도		주택소유형태	
무학	4.4 (7)	자가	60.4 (96)
초등학교	20.8 (33)	전세	15.7 (25)
중학교	23.9 (38)	보증금 있는 월세	6.9 (11)
고등학교	37.7 (60)	보증금 없는 월세	5.0 (8)
대학교 이상	13.2 (21)	사글세	1.3 (2)
결혼상태		무상	10.7 (17)
미혼	42.1 (67)	의료보험 가입형태	
유배우	35.2 (56)	미가입	1.9 (3)
사별	1.9 (3)	직장의료보험	17.0 (27)
이혼	20.8 (33)	공교의료보험	3.1 (5)
가구주여부		지역의료보험	43.4 (69)
예	24.5 (39)	의료보호1종	20.1 (32)
아니오	75.5 (120)	의료보호2종	14.5 (23)
경제활동분야		생활보호대상자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1.3 (2)	아님	68.6 (109)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5.7 (9)	거택보호대상자	15.7 (25)
단순노무직 근로자	5.7 (9)	자활보호대상자	11.3 (18)
학생	1.9 (3)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4 (7)
주부	15.7 (25)		
무직	69.8 (111)		
전체	100.0 (159)	전체	100.0 (159)

주: 1) 학생, 주부, 무직 139명 제외

종사상의 지위는 학생, 주부, 무직을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無給家族從事者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25.0%), 자영업자(20.0%), 상용근로자(15%), 임시근로자(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이 年金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6.9%로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는 自家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가 15.7%로 나타났다. 무상임대의 경우도 10.7%를 차지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관리와 통원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의 정신장애인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43.4%), 의료보호인 경우도 34.6%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정신장애인은 비생활보호대상자가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택보호(15.7%), 자활보호(11.3%),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인구학적 변수 중 연속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평균연령은 약 41.3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한은 약 10.0년(중학교 졸업이상)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3.26명이며, 가구소득은 평균 약 88만원이었다. 월평균 지출은 평균 84만 1천원이었으며, 이 중 의료비는 한달 평균 약 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가구가 한 달동안 '그럭저럭'살아가는데 필요한 희망 생활비는 평균 약 99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表 3-5-2〉 精神障礙人の 人口學的 特性의 記述統計置(平均)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8	64	41.31	10.01
교육연한	0	18	10.03	3.77
가구원수	1	7	3.26	10.01
가구소득(만원)	0	400	87.98	77.68
월평균지출(만원)	10	250	84.09	54.92
주부식비(만원)	2	70	25.81	14.78
의료비(만원)	0	70	13.07	14.78
주거비(만원)	0	70	12.74	9.04
교통비(만원)	0	50	10.02	9.04
희망생활비(만원)	20	400	99.57	65.88

주: 전체 159명

2. 精神科的 特性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발생시기는 98% 이상이 20대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발생연령은 20대가 가장 높으며 (32.9%), 10대(26.3%), 30대(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정신장애인이 10대 및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신질환명을 보면 정신분열증이 58.9%를 차지하였으며, 반복성 우울장애가 18.4%, 양극성 정동장애가 9.5%를 차지하였다. 정신장애 중 정신분열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또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같다.

〈表 3-5-3〉 精神科의 特性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발생시기	
출생전 또는 출생기	0.6 (1)
돌 이전	1.3 (2)
돌 이후	98.1 (154)
전체	100.0 (157)
발생연령	
0세	2.0 (3)
1~9세	2.6 (4)
10~19세	26.3 (40)
20~29세	32.9 (50)
30~39세	21.1 (32)
40~49세	9.8 (15)
50~59세	4.6 (7)
60세	0.7 (1)
전체	100.0 (150)
정신질환명	
정신분열증	58.9 (93)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9.5 (15)
반복성 우울장애	18.4 (29)
분열정동장애	2.5 (4)
편집증	- -
불안장애	3.2 (5)
기타	2.5 (4)
미상	5.1 (8)
전체	100.0 (156)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인 6가지 능력(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능력) 장애판정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는 <표 3-5-4>와 같다. 먼저, 적절한 음식섭취 및 대소변·세면·목욕·청소 등의 清潔維持와 같은 일상생활수행에 있어서는 ‘거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

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소지품 및 돈관리나 구매행위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상 만성적인 질환을 겪게 되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약물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기술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장애기간은 평균 약 15년으로 나타났다.

〈表 3-5-4〉 精神障碍人の 障碍程度

(단위: %, 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가끔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도움이 필요없다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적절한 음식섭취	11.4 (18)	15.2 (24)	73.4 (116)
대소변, 세면, 청소 등 청결유지	12.7 (20)	24.7 (39)	62.7 (99)
적절한 대화기술 및 대인관계	43.0 (68)	36.1 (57)	20.9 (33)
규칙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50.0 (79)	20.3 (32)	29.7 (47)
소지품 및 돈관리나 구매행위	43.0 (68)	24.7 (39)	32.3 (51)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38.6 (61)	17.7 (28)	43.7 (69)
전체	100.0 (158)	100.0 (158)	100.0 (158)

〈表 3-5-5〉 精神障碍人の 障碍期間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기간	1	43	14.82	9.80

3. 精神障碍人の 就業 및 職業再活 現況

전체 정신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은 10.8%를 차지하여, 취업한 장애인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취업 장애인 중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사업체(23.5%), 기타(17.6%),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장애인 중 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이 25.0%, 30년 미만이 18.7%, 30년 이상이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3-5-6〉 精神障礙人の 雇傭現況

(단위: %, 명)

변수	범주	비율 빈도
취업여부	예	10.8 (17)
	아니오	89.2 (141)
	전체	100 (158)
일하는 장소	자영업	47.1 (8)
	사업체	23.5 (4)
	정부기관	11.8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 관련기관	- -
	기타	17.6 (3)
일한 기간	전체	100.0 (17)
	1년 미만	37.5 (6)
	1~10년 미만	25.0 (4)
	10~30년 미만	18.7 (3)
	30년 이상	18.7 (3)
	전체	100.0 (16)

평균 근무기간은 약 9.4년 정도이나 편차가 매우 크다. 취업장애인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47일이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나타났으나 편차가 매우 크다. 주당 근무일수와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한 결과, 61.53시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37만 1천원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表 3-5-7〉 精神障碍人の 就業

변수	평균	표준편차
근무년한	9.40	13.40
주당근무일수	5.47	1.42
1일근무시간	11.00	12.83
주당시간	61.53	78.9
월평균수입	37.08	17.52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9.4%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무관련 기능 부족과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에서도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52.9%,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가 35.3%,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1.8%로 정신장애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5-8〉 精神障碍人の 就業關聯 厓路事項 및 満足度

(단위: %, 명)

		비율 빈도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낮은수입	41.2 (7)
	직무관련기능부족	5.9 (1)
	적성과 맞지 않은 업무	5.9 (1)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7.6 (3)
	어려움 없음	29.4 (5)
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 -
	대체로 만족스럽다	52.9 (9)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3 (6)
	매우 불만족스럽다	11.8 (2)
전체		100.0 (17)

다음은 정신장애인의 실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직여부 및 미취업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취업하고 있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8%로 대부분의 취업하지 않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5-9〉 精神障礙人の失業關聯 現況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구직활동여부	예	2.8	4
	아니오	97.2	137
	전체	100.0	141
미취업된 주된 이유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주어서	1.4	2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9	4
	출퇴근이 힘들어서	0.7	1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82.6	114
	다른 질병때문에	3.6	5
	나이가 많아서	1.4	2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0.7	1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1.4	2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0.7	1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1.4	2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0.7	1
	재학 중이기 때문에	1.4	2
	기타	0.7	1
	전체	100.0	138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질병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6%,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가 2.9%로 나타났다. 질병 및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주는 경우와 취업정보 및 취업방법을 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0.7%로 나타났다. 대체로 노동 수요적인 측면(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주거나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공급적 측면(기술부족 등)은 낮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취업욕구는 31.2%로 나타났으며, 취업욕구가 없는 경우가 68.8%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형태는 전일제가 69.4%, 시간제가 30.6%로 나타났다. 취업욕구에 있어 희망 직종은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7%),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16.3%), 그 외 사무직원,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등이 14.3%를 차지하였다. 희망 취업 장소는 자영업과 일반사업체가 모두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각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취업형태는 출근근무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택근무도 16.3%로 나타났다. 지원고용 10.2%, 보호고용 6.1%, 출근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4.1%를 차지하였다. 지원고용 및 보호고용보다 일반적인 출근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취업형태에 있어 비장애인과 통합된 취업형태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형태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만큼 취업형태가 더욱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후에라도 직업훈련과 같은 지속적인 직업관련 기술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후 직업훈련 경험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정신장애인 전체의 9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운 경우

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5%로 나타났다.

〈表 3-5-10〉 精神障碍人の 就業欲求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취업희망여부	예	31.2	49	
	아니오	68.8	108	
	전체	100.0	157	
희망근무형태	전일제	69.4	34	
	시간제	30.6	15	
	전체	100.0	49	
희망직종	전문가	4.1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2.0	1	
	사무직원	14.3	7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16.3	8	
	농·어업 숙련근로자	14.3	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14.3	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0	1	
	단순노무직 근로자	32.7	16	
	전체	100.0	49	
	희망취업장소	자영업	32.7	16
		일반사업체	32.7	16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6.1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2	6	
장애인 관련단체나 기관		12.2	6	
기타		4.1	2	
전체		100.0	49	
희망 취업형태	재택근무	16.3	8	
	출근근무	63.3	31	
	출근근무(보호고용)	6.1	3	
	출근근무(지원고용)	10.2	5	
	재택근무+출근근무	4.1	2	
	전체	100.0	49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중 직업훈련조차 받을 수 없는 중증의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¹⁶⁾, 또한 경증

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기술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노동공급적 측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도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노동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7.9%를 차지해 정부의 직업훈련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表 3-5-11〉 精神障碍人的 職業再活現況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장애후 직업훈련 경험여부	예	2.5	4
	아니오	97.5	153
	전체	100.0	157
훈련받지 않은 주된 이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17.9	27
	등록절차를 몰라서	2.0	3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힘들어서	51.7	78
	직업훈련이 취업도움에 안되어서	2.0	3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26.5	40
	전체	100.0	151

조사대상 정신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주요 분야는 ‘희망분야가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79.1%로 직업훈련 분야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내용을 多樣性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조사내용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서는 컴퓨터 정보처리 분야와 제과제빵 분야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18)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중도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가 경도 장애가 다소 많은 반면 여자는 중도 장애가 다소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5-12〉 精神障碍人の 希望職業訓練分野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희망직업훈련분야		
기계분야	1.3	2
화공·요업분야	0.7	1
전기·전자분야	1.3	2
토목·건축분야	1.3	2
섬유분야	2.6	4
컴퓨터정보처리분야	3.3	5
침술·의술분야	1.3	2
사무분야	1.3	2
제과·제빵분야	3.3	5
기타서비스 분야	2.0	3
없다	79.1	121
기타	2.6	4
전체	100.0	153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적응훈련(22.2%), 임금보조(19.3%), 취업정보 제공(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3-5-13〉 精神障碍人の 職業再活을 위한 國家役割 希望分野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7.4	37
취업정보 제공	10.4	14
직업능력개발(직업적응훈련)	22.2	30
취업상담·평가·알선	8.9	12
사후지도	2.2	3
임금보조	19.3	26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7	5
의무고용 준수 유도	4.4	6
기타	1.5	2
전체	100.0	135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사회적 편견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므로,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社 會 的 認 識 的 改 善 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經 濟 活 動 類 型 에 따 른 精 神 障 碍 人 의 特 性 比 較

경제활동유형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유형화하여 이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유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별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비가구주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주 소득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자(이혼, 사별 포함)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 실업에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진단명과 경제활동유형을 비교해보면, 정신분열증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보다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으며, 정신분열증이 아닌 기타 정신장애인의 실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에서는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업 정신장애인의 장애인식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실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 수준이 높으며, 장애인식에

있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업의 원인과 자기 기능수준에 대한 평가 등 보다 면밀히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경제활동유형별로는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소속계층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과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5-14〉 精神障碍人の 經濟活動類型別 特性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유형			전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성별	남성	8(47.1)	7(53.3)	73(56.6)	88(55.3)
	여성	9(52.9)	6(42.6)	56(43.4)	71(44.7)
가구주여부 ¹⁾	가구주	10(58.8)	4(30.8)	25(19.4)	39(24.5)
	비가구주	7(41.2)	9(69.2)	104(80.6)	120(75.5)
결혼상태	미혼	4(23.5)	4(30.8)	59(45.7)	67(42.1)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	13(76.5)	9(69.2)	70(54.3)	92(57.9)
진단명 ²⁾	정신분열증	11(64.7)	2(15.4)	80(62.0)	93(58.5)
	기타	6(35.3)	11(84.6)	49(38.0)	66(41.5)
자아의 장애인식	예	11(64.7)	6(46.2)	87(68.5)	104(66.2)
	아니오	6(35.3)	7(53.8)	40(31.5)	53(33.8)
도움 여부	예	9(81.8)	6(75.0)	85(86.7)	100(85.5)
	아니오	2(18.2)	2(25.0)	13(13.3)	17(14.5)
주관적 소속계층	상층	-	-	-	-
	중상층	1(5.9)	-	8(6.3)	9(5.7)
	중하층	5(29.4)	2(15.4)	23(18.0)	30(19.0)
	하층	11(64.7)	11(84.6)	97(75.8)	119(75.3)
혼자외출여부 ³⁾	예	15(88.2)	11(84.6)	67(52.3)	93(58.8)
	아니요	2(11.8)	2(15.4)	61(47.7)	65(41.2)

주: 1) $\chi^2=12.922$ df=2 **p<0.01

2) $\chi^2=10.88$ df=2 **p<0.01

3) $\chi^2=12.155$ df=4 **p<0.05

혼자 외출여부 항목과 경제활동유형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혼자서 외출정도는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및 실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가 혼자 외출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균연령이 타 경제활동유형에 비해 높으며,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유형별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교육연한은 실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교육연한이 가장 길고, 취업정신장애인의 경우 교육연한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이전 연령층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연한 및 가구소득을 비교해볼 때, 취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며, 또한 가구소득이 낮다는 것은 취업형태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기간에서는 취업 정신장애인의 장애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유형별 장애기간과 연령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희망생활비를 경제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경우가 희망하는 한달 평균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정

신장애인이 희망하는 한달 평균 생활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취업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적고 평균 생활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장애정도와 기능에 있어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사회차별 경험정도는 평균 2.15점으로 사회적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⁷⁾. 사회차별경험정도와 경제활동유형을 비교해 보면,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사회차별경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실망실업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불편정도가 심한 것으로 부호화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편으로 나왔다¹⁸⁾. 경제유형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취업 정신장애인의 불편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불편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움 필요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부호화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경제유형별로는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도움 필요도가 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도움필요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경제활동의 원인으로 장애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17) 사회적 차별경험은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사회적 차별이 '매우 많다'에 1점, '거의 없다'에 4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18) 1=매우 불편하다, 2=약간 불편하다, 3=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4=거의 불편하지 않다.

19) 1=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3=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5=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쁜 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²⁰⁾, 경제활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表 3-5-15〉 精神障碍人的 經濟活動類型別 特性

구분		경제활동유형			전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연령	평균	46.65	41.54	40.59	41.31
	표준편차	8.56	7.80	10.22	10.01
교육연한*	평균	8.18	11.46	10.12	10.03
	표준편차	3.76	3.69	3.72	3.77
가구원수*	평균	2.41	3.00	3.40	3.26
	표준편차	1.33	0.91	1.34	1.34
가구소득	평균	65.88	77.85	91.90	87.98
	표준편차	39.21	52.00	83.16	77.68
장애기간	평균	18.07	14.54	14.45	14.82
	표준편차	11.37	10.19	9.58	9.80
희망 생활비	평균	75.00	99.23	102.75	99.57
	표준편차	42.27	56.93	68.83	65.88
사회차별	평균	2.50	2.54	2.06	2.15
	표준편차	1.16	1.00	1.08	1.09
외부활동불편정도	평균	2.88	2.85	2.84	2.85
	표준편차	1.17	1.35	1.23	1.23
도움 필요도*	평균	2.18	2.15	3.01	2.85
	표준편차	1.13	1.14	1.41	1.40
건강상태	평균	2.76	2.85	2.71	2.73
	표준편차	0.83	0.69	0.80	0.80
도움의 충분성	평균	1.47	1.15	1.86	1.76
	표준편차	1.51	1.35	1.64	1.61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평균	2.18	2.67	2.23	2.26
	표준편차	0.81	0.78	0.80	0.81
생활만족도	평균	2.94	3.23	3.20	3.17
	표준편차	0.57	0.60	0.70	0.68
월 추가소요비용	평균	68.71	89.00	101.16	96.64
	표준편차	100.47	162.90	165.62	159.18

* p<0.05, **p<0.01, ***p<0.001

20) 1=매우 건강하다, 2=비교적 건강하다, 3=건강이 나쁜 편이다, 4=매우 건강이 나쁘다.

현재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1.76점으로 충분한 편으로 나타났다²¹⁾. 도움 충분에 대한 인식은 경제활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 2.26점으로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며²²⁾, 실업 정신장애인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거나, 실업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조사대상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부호화했는데,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편으로 나타났으며²³⁾, 취업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생활만족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월 추가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96.64만원, 편차를 고려하여 중간값을 살펴보면, 약 4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보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5.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독립변수로서는 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21) 1=매우 충분하다, 2=충분한 편이다, 3=부족한 편이다, 4=매우 부족하다.

22) 1=매우 부정적, 2=부정적인 편, 3=보통, 4=긍정적인 편, 5=매우 긍정적

23) 1=매우 만족한다, 2=만족하는 편이다, 3=불만족한 편이다, 4=매우 불만족스럽다

교육연한, 가구주여부, 가구원 수, 가구소득, 희망생활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장애관련 임상적 변수로 진단명,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변수로 사회차별,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인식여부, 도움충분도 등을 포함하였다.

우선 첫 번째 칼럼은 비경제활동과 취업에 대한 로짓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교육연한, 도움정도 및 도움충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경제활동 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연한이 길수록 취업활동에 속할 확률보다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평균비교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연한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취업할 확률보다 약 1.4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취업할 확률에 비해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비교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취업할 확률보다 약 5.5배 높다. 이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중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칼럼에서는 실업과 취업의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교육연한과 장애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연한이 길수록 취업할 확률에 비해 실업할 확률이 높으며, 평균비교시점에서 약 1.7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단명에서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 정신분열증에 비해 취업할 확률보다 실업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평균비교시점에서 약 49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도움필요도와 진단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할수록 실업보다는 비

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평균비교시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일수록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실업에 속할 확률의 73%이다. 또한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 정신분열증에 비해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보다 실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비교시점에서 정신분열증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보다 실업에 속할 확률이 약 3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表 3-5-16〉 精神障碍人の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다항로지트 分析結果

	비경제활동/취업		실업/취업		실업/비경제활동	
	B	Exp(B)	B	Exp(B)	B	Exp(B)
상수항	-7.587		-13.758		-6.171	
성별	-1.387	0.250	-1.165	0.312	0.221	1.248
연령	0.060	1.062	0.060	1.062	0.000	1.000
결혼상태	-1.256	0.285	-0.827	0.437	0.429	1.536
가구주여부	2.799	16.429	0.554	1.740	-2.245	0.106
교육연한	0.336**	1.399	0.536**	1.710	0.201	1.222
가구원수	0.541	1.718	0.291	1.338	-0.250	0.779
가구소득	-0.007	0.993	-0.008	0.992	-0.001	0.999
장애기간	-0.047	0.954	0.016	1.016	0.062	1.064
사회차별	-0.555	0.574	-0.876	0.417	-0.321	0.726
도움필요도	1.705*	5.500	0.410	1.506	-1.295*	0.274
도움충분도	-0.960*	0.383	0.027	1.027	0.987	2.683
외부활동 불편정도	0.567	1.505	0.345	1.412	-0.222	0.801
비장애인의 인식	0.700	2.014	1.504	4.501	0.804	2.234
건강상태	-0.080	0.923	-0.248	0.780	-0.168	0.845
장애인인식	-1.302	0.272	0.128	1.137	1.430	2.087
희망생활비	0.008	0.353	0.012	1.012	0.003	1.003
추가생활비	0.002	0.195	0.002	1.002	0.000	1.000
진단명	0.262	1.300	3.897*	49.270	3.635**	37.903
-2 Log Likelihood=99.856		df=36				
χ ² = 62.588		p=0.004				

* p<0.05, **p<0.01, ***p<0.001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에 있어서 교육연한이 길수록 취업보다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면 할수록 경제활동(취업 및 실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도움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유형의 차이를 보이는데,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경우가 비경제활동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단명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 비경제활동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정신분열증이 경우 실업보다는 취업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기능수행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비경제활동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며, 그러나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第 6 節 腎臟障 碍 · 心 臟 障 碍

신장장애 및 심장장애는 새롭게 장애범주에 포함된 장애로서 신체적 장애이지만 다른 장애와는 경제활동에 있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들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 다른 신체장애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새롭게 장애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아직까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나 취업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내부장애인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관련 자료나 직업재활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신장장애인의 장애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6으로 총 27,050명이며, 심장장애인의 출현율은 1.3으로 59,05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변용찬 외, 2001).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의 특성

상 대부분이 등록된 상태로서, 전체의 83.6%가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은 16.4%였다.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가 가장 경한 장애인이 56.8%이며, 가장 중한 경우는 7.7%로 낮은 특징을 보여 실제 장애등록 인원은 매우 적다.

이 절에서는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고 2000년도 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이들 장애인의 취업현황과 소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職業的 特性

가. 腎臟障礙人

최근 의학의 진보로 인해 조기발견·조기치료만 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아졌다. 慢性腎不全의 경우에도 완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투석요법의 발전으로 생명만 연장하던 차원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의료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처럼 의학의 발전은 이제까지 그저 장애인으로만 생각하였던 내부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근로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일부에 여전히 장애가 있으므로 취업할 때 배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장기능 장애인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人工透析만 정확하게 실시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투석을 받고 있는 많은 신장기능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다양한 분야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만 투석으로 인한 빈혈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빈혈로 인한 증상, 예컨대 쉽게 피로해지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끈기가 없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

된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격렬한 육체노동은 역시 몸에 무리를 주므로 事務職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장기능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투석시간의 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心臟障礙人

심장질환도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약물치료의 병행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였다. 심장기능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는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숨이 찰, 가슴 떨림, 피로 혹은 맥박 등을 기준 지표로 삼아서, 먼저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임할 때 심장기능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몸의 컨디션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몸 상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좋다.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면 그만큼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육체노동보다 사무직 쪽이 바람직하다. 過勞는 신체에 부담을 주므로 殘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규칙적인 근무시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휴식을 취할 때 누워서 쉴 장소가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2주에 1번 혹은 4주에 1번 꼴로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通院時間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장기능 장애인 중에는 격렬한 육체노동만 아니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도 있으므로, 개개의 상태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결국 내부장애인에게 공통적인 문제는 이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人間關係를 고려해야만 한다

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부장애인은 체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무리해서 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잔업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동료들은 남아서 잔업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된다. 하물며 신장기능 장애인처럼 주3회 투석을 받기 위해 조퇴를 할 경우 주위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심장·신장장애인들은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 심장기능 장애인은 지나친 염분섭취와 過食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한 비만과 합병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칼로리와 지방을 제한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신장기능 장애인 역시 수분·염분·인·칼륨 등의 섭취가 제한되며, 단백질·칼로리 섭취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내부장애인의 증상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거나 그 사람이 처한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그 장애인 각자의 상황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장애인이라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배려하여 온정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오히려 그가 지닌 능력을 말살해버릴 수 있다. 장애인 스스로가 신체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본인의 희망을 증시한 배려가 요망되는 바이다.

2. 就業關聯 實態分析

가. 分析 對象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표집된 신장장애인은 67명이며, 심장장애인은 122명으로 총 189명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 연령층이 아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대상은 제외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인 학생과 전업주부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신장장애인 59명, 심장장애인 62명 등 총 121명이었다.

나. 分 析 對 象 者 的 一 般 的 特 性

내부장애인²⁴⁾인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인구학적 변수에 관한 분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주의 여부에 있어서는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2.9%로 비가구주 보다는 다소 많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으로서 유배우인 경우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 15.7%, 미혼은 극히 적어 8.3%이다.

〈表 3-6-1〉 人 口 學 的 變 數 的 分 布

(단위: %, 명)

변 수	범 주	비 율
성별	남자	50.4
	여자	49.6
가구주 여부	가구주	52.9
	비가구주	47.1
결혼상태	미혼	8.3
	기혼	76.0
	이혼·사별	15.7
계		100.0
(명)		(121)

다음으로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障 碍 狀 態 와 關 連 有 關 으 며 , 경 제 활 동 에 有 關 한 影 響 을 실 제 로 미 치 고 有 關 한 것 으 로 表 現 되 고 有 關 한 건 강 변 수 에 關 한 에 관 하 면 다 음 과 같 다 . 자 신 의 건 강 상 태 에 有

24) 우리 나라에서 ‘내부장애인’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나 분석의 편의상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을 묶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어서는 건강이 나쁜 편 52.9%, 매우 나쁨 34.7%로 거의 대부분의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른 신체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에 있어서는 2/3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라도 필요로 하고 있다. 외부 활동의 불편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1.7%이고, 약간 불편하다가 45.8%, 나머지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의 내부장애인들이 經濟活動에는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기 자신을 장애인으로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37.2%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고, 보통인 경우는 35.5%로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이나 결혼,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社會的 差別 經驗에 있어 내부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서는 차별경험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내부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장애인의 경우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취업과 결혼, 직장생활 등이며,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에서의 차별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예상할 수 있다.

〈表 3-6-2〉 健 康 變 數 的 分 布

		(단위: %, 명)	
변수	범주	비율	
건강상태	매우 건강	-	
	비교적 건강	12.4	
	건강이 나쁜 편	52.9	
	매우 건강이 나쁨	34.7	
일상생활의 도움필요 정도	모두 혼자서	53.7	
	대부분 혼자서	13.2	
	일부 도움필요	20.7	
	대부분 도움필요	8.3	
	거의 모두 도움필요	4.1	
외부활동의 불편정도	매우 불편	31.7	
	약간 불편	45.8	
	불편하지 않음	4.2	
	거의 불편하지 않음	18.3	
자아의 장애인 인식	예	62.8	
	아니오	37.2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용상태	매우 부정적	1.7	
	부정적	48.8	
	보통	35.5	
	긍정적	14.0	
	매우 긍정적	-	
계		100.0	
(명)		(121)	

〈表 3-6-3〉 社 會 的 差 別 變 數

변수	범 주	비율(%)
사회적 차별경험 ¹⁾	취학	-
	학교생활	30.0
	결혼	42.8
	취업	44.4
	직장생활	39.1
	지역사회생활	17.8

주: 1) 차별경험은 ‘매우 많다’ 또는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다. 就業關聯 特性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 취업률은 34.2%이지만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는 평균적인 취업장애인 비율보다 훨씬 낮은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비율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내부장애인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직장유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자영업에 영위하는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이거나 심장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장장애인은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이, 그리고 심장장애인은 일반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신장과 심장장애의 경우 모두 낮은 수입을 들고 있으나 신장장애인이 심장장애에 비해 어려움이 덜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에 대한 滿足度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신장장애인이 2/3 정도로서 다른 장애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았으나 심장장애인은 반반정도이다.

미취업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구직활동 여부에 있어서는 신장장애는 비교적 활발한 구직활동을 한 반면, 심장장애는 구직장애인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미취업이거나 또는 구직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두 가지 장애 모두 장애로 인해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높은 비율로 지적하여 심장장애가 高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모두 평균(46.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낮은 희망률을 보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희망 근무형태에 있어서 全日制와 時間制의 구분에서 두 장애 모두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훨씬 높아 장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취업 희망직업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8.9%)에 비해 사무직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신장장애는 30.6%, 심장장애는 32.0%로 현격히 높아 심한 肉體的 勤勞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희망하는 직장유형에 있어서도 신장장애는 자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반면, 심장장애는 일반 사업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 희망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신장장애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在宅勤務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심장장애는 출근근무의 형태를 대부분 희망하되 재택근무와 출근근무를 병행하는 형태를 원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신장장애인은 義務雇傭制度의 준수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내부장애편들의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특성 가운데 개인, 가구 및 취업과 관련하여 연속변수들만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 3-6-4>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49.3세로 40~50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教育年數는 평균 9.7년으로 중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의 총 가구 소득은 월평균 115만원 정도로 다른 장애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가구 소득과 함께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약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편 중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就業期間은 13년 8개월 정도였는데, 이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는 다소 짧은 기간을 보이고 있다. 월 근로소득은 84만 7천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으로 나타나 신장장애인이거나 심장장애인 모두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보이고 있

다. 그렇지만 1일 평균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신장장애가 7.5시간, 심장장애가 9.3시간으로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차이가 있다. 한편 월평균 근로수입에 있어서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6-4〉 應答者의 一般的 特性(連續變數의 平均)

변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121	49.34	10.93	18	64
교육년수	121	9.74	3.61	0	18.00
총가구소득	120	115.08	96.70	0	500
희망생활비	120	128.54	73.41	40	500
근속연수	35	166.54	165.49	1	516
월근로소득	33	84.73	50.57	8	233
주당근로시간	35	51.3	25.2	6.0	112.0

라. 就業 關聯 要因 分析

내부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검토한 취업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취업장애인과 실업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政策的 畝意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취업여부를 <표 3-6-5>에서 알아보면, 남자의 경우 취업한 장애인은 41.0%인데 비해 여자는 16.7%로 성별에 따라 취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3-6-5〉 性 別 就 業 與 否

(단위: %, 명)

취업여부	남	여	계
취업	41.0	16.7	28.9
실업	59.0	83.3	71.1
계	100.0	100.0	100.0
(명)	(61)	(60)	(121)

($\chi^2=8.700$, $df=1$, $p=0.003$)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의 취업여부를 알아보면, 신장장애인은 27.1%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심장장애인은 30.6%가 취업하고 있어 신장장애인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으나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 3-6-6〉 障 碍 類 型 別 就 業 與 否

(단위: %, 명)

취업여부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계
취업	27.1	30.6	28.9
실업	72.9	69.4	71.1
계	100.0	100.0	100.0
(명)	(59)	(62)	(12)

($\chi^2= 0.183$, $df=1$, $p=0.441$)

취업한 신장·심장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勤務處에 대해 알아보면 자영업이 42.9%로 가장 많음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일반사업체 37.1%,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人间 근무장소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영업이 가장 많은 것은 다른 장애와 동일한 결과로서 대부분 일반사업체 취업이 어렵기 때문으로 빚어진 불가피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밖에 장애인 관련기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는 거의 취업하고 있

지 않아 장애인 관련기관에서도 내부장애인에 대한 職業再活對策이不在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表 3-6-7〉 就業한 腎臟·心臟障碍人の 勤務 場所

(단위: %, 명)

구 분	자영업	일반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계(명)
비율	42.9	37.1	20.2	100.0(35)

내부장애인이 본인이 가구주인지의 여부에 따라 취업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39.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가구주인 경우에는 17.5%의 취업률을 나타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경우 生計를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취업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3-6-8〉 家口主 與否別 就業與否

(단위: %, 명)

취업여부	가구주	비가구주	계
취업	39.1	17.5	28.9
실업	60.9	82.5	71.1
계	100.0	100.0	100.0
(명)	(64)	(57)	(121)

($\chi^2=6.791$, $df=1$, $p=0.008$)

장애인의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인 경우는 취업률이 30.0%이고, 기혼인 경우는 32.6%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는 취업비율이 10.5%로 크게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게 운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기

혼과 달리 離婚이나 死別의 취업률이 특히 낮은 것은 연령층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表 3-6-9〉 結 婚 狀 態 別 就 業 與 否

(단위: %, 명)

취업여부	미혼	기혼	이혼·사별	계
취업	30.0	32.6	10.5	28.9
실업	70.0	67.4	89.5	71.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0)	(92)	(19)	(121)

($\chi^2=4.486$, $df=2$, $p=0.214$)

장애인들의 교육정도에 따른 취업여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6-10>과 같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1/4 정도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가 35.9%로 비교적 높았지만 대학에서는 다시 낮은 취업률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 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表 3-6-10〉 教 育 程 度 別 就 業 與 否

(단위: %, 명)

취업여부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	대학	대학원 이상	계
취업	-	25.0	26.1	35.9	21.4	66.7	28.9
실업	100.0	75.0	73.9	64.1	78.6	33.3	7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	(40)	(23)	(39)	(14)	(3)	(121)

($\chi^2=4.935$, $df=6$, $p=0.552$)

장애인에 있어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취업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다음의 <표 3-6-11>과 같다. 직업훈련

을 이수한 경우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업훈련을 履修한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여부가 취업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선우, 1997; 권유경, 1997)과 일치하고 있다.

〈表 3-6-11〉 職業訓練 與否에 따른 就業與否

(단위: %, 명)			
취업여부	직업훈련 이수	직업훈련 비이수	계
취업	-	29.9	28.9
실업	100.0	70.1	71.1
계	100.0	100.0	100.0
(명)	(4)	(117)	(121)

($\chi^2=1.684$, $df=1$, $p=0.431$)

내부장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다음의 <표 3-6-12>에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가 36.8%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취업장애인이었고,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가 34.2%였지만 실업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가 주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도 14.5%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내부장장애인에 대한 職業訓練 體系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내부장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 직업훈련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결국 직업훈련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가 네 번째로 지적되어 직업훈련 직종 등 훈련의 내용에 대한 욕구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表 3-6-12〉 職 業 訓 練 을 받 지 않 은 理 由

(단위: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취업	실업	계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0.0	12.2	14.5
등록절차를 몰라서	5.7	4.9	5.1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5.7	46.3	34.2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	3.7	2.6
직업훈련 내용이 맘에 안 들어서	-	1.2	0.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어서	11.4	1.2	4.3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54.3	29.3	36.8
기타	2.9	1.2	1.8
계	100.0	100.0	100.0
(명)	(34)	(82)	(116)

취업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을수록 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운데는 실업상태인 비율이 78.9%이지만 거의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에서는 33.3%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은 勞 動 市 場 進 入 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6-13〉 就 業 時 差 別 經 驗 程 度 別 就 業 與 否

(단위: %, 명)

취업여부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가끔 있는 편이다	거의 없다	계
취업	21.1	33.3	40.0	66.7	28.9
실업	78.9	66.7	60.0	33.3	7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	(9)	(5)	(30)	(63)

($\chi^2=31.481$, $df=4$, $p<0.0005$)

내부장애인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가운데 연속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3-6-14>와 같다. .

<表 3-6-14> 就業與否에 따른 連續變數 比較

변 수	취 업	실 업	t 값
연령	48.0	49.9	-.859
가구원 수	3.06	3.24	-.644
가구소득	125.5	110.9	-.739
교육년수	10.34	9.50	1.165
건강상태	3.00	3.31	-2.452**
일상생활도움정도	1.49	2.15	-2.829***
외부활동불편도	2.69	1.85	4.276***
차별경험정도	1.77	1.00	5.569***

** p<0.05; *** p<0.0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장이나 심장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관련된 요인이 취업여부를 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도 연령이나 가구원수, 가구소득, 교육년수 등에 있어서는 취업장애인과 실업장애인간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비롯한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취업장애인이 실업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도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정도도 취업자가 실업자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영역별 차별정도를 점수화한 차별점수에 있어서는 취업장애인이 차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就 業 關 聯 欲 求

미취업 상태인 신장·심장장애인의 취업에 관련된 욕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취업희망 비율에 있어서는 <표 3-6-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3.8%의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내부장애의 유형에 있어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취업 희망비율이 심장장애인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장장애의 특성상 職業再活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심장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3-6-15> 失 業 障 碍 人 的 就 業 希 望 與 否

(단위: %, 명)			
취업희망 여부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계
희망	49.2	38.7	43.8
비희망	50.8	61.3	56.2
계	100.0	100.0	100.0
(명)	(59)	(62)	(121)

($\chi^2=1.339$, $df=1$, $p=0.247$)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표 3-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70% 정도가 전일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체로 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시간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의 근무형태도 전통적인 근무방식보다는 流動的 勤勞時間制(flexible time) 등 다양한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무형태에 있어서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 간에는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이 전일제가 많았으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시간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심장장애인에 비해 10% 포인트 높게 나타나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表 3-6-16〉 内部障碍人の 希望 勤務形態

(단위: %, 명)

근무형태	취업자	실업자	계
전일제	77.8	61.5	69.8
시간제	22.2	38.5	30.2
계	100.0	100.0	100.0
(명)	(27)	(26)	(53)

($\chi^2=1.657$, $df=1$, $p=0.162$)

내부장애인의 希望職種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적인 희망 직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3-6-17>과 같이 다른 장애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고, 서비스직 등을 비교적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공히 事務職員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장애의 특성상 심한 육체적 근로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한 선호는 희망하는 고용형태나 자신이 소유한 직업 기능과 관련지어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3-6-17〉 內 部 障 碍 人 的 就 業 希 望 職 種

(단위: %, 명)

희망 직종	비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7.7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
사무직원	26.9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3.1
농·어업 숙련근로자	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8
단순노무직 근로자	19.2
계	100.0
(명)	(52)

희망하는 취업장소에 있어서는 취업장애인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체에 대한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정부 관련기관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장애인의 경우 직장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으로 자영업을 선호하고, 반대로 실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자영업보다는 일반사업체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을 구분했을 때, 신장장애는 자영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반면 심장장애는 일반사업체 선호비율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장장애의 경우 투석 등으로 일반사업체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3-6-18〉 内部障碍人の 希望 就業場所

(단위: %, 명)

취업장소	취업자	실업자	계
자영업	51.9	30.8	41.5
일반사업체	33.3	38.5	35.8
정부 및 관련기관	14.8	23.1	18.9
장애인 관련단체나 기관	-	3.8	1.9
기타	-	3.8	1.9
계	100.0	100.0	100.0
(명)	(27)	(26)	(53)

($\chi^2=4.072$, $df=4$, $p=.396$)

내부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표 3-6-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출근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73.6%의 내부장애인이 응답하였고, 재택근무는 18.9%가 희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내부장애인의 규모를 나타내는 비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3-6-19〉 内部障碍人の 希望 勤務形態

(단위: %, 명)

근무형태	취업자	실업자	계
재택근무	14.8	23.1	18.9
출근근무	81.5	65.4	73.6
출근근무(지원고용)	3.7	-	1.9
재택근무 + 출근근무	-	7.7	3.8
재택근무 + 지원·보호고용	-	3.8	1.9
계	100.0	100.0	100.0
(명)	(27)	(26)	(53)

($\chi^2=5.024$, $df=4$, $p=.285$)

그밖에 재택근무와 출근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와 보호고용이나 지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장애의 경우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았다. 그리고 신장장애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심장장애는 출근근무의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앞서 희망하는 근무장소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내부장애인에 있어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적당한 직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를 차지하여 현재의 職業訓練方式의 효용성에 대해 否定的 見解를 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훈련직종으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 분야였고, 그밖에는 기계나 제과·제빵 분야로 나타났다.

〈表 3-6-20〉 内部障碍人이 바라는 國家의 役割

(단위: %, 명)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취업	실업	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2.1	17.1	15.7
취업정보 제공	15.2	13.4	13.9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24.2	20.7	21.7
취업상담·평가·알선	6.1	8.5	7.8
사후지도	-	1.2	.9
임금보조	12.1	17.1	15.7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9.1	7.3	7.8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18.2	14.6	15.7
기타	3.0	-	.9
계	100.0	100.0	100.0
(명)	(33)	(82)	(115)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내부장애인은 職業能力 開發에 대한 요구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고용제도 준수, 賃金補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취업정보 제공 등이 비교적 높게 지적되었다.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

무고용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가 그리고 실업장애인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임금보조에 대한 요구가 다소 높았다.

바. 所得關聯 要因分析

1) 變數의 定義 및 測定

취업한 내부장애인들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인 근로소득은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人的資本 變數, 人口社會學的 變數, 勞動市場 變數에 의해 구분하였다.

첫째, 인적자본 변수에 있어서는 내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의 도움필요도, 외부활동시 불편정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신장이나 심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도움 필요도와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불편정도가 심한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졸업과 중퇴를 기준으로 교육연한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직업훈련 여부는 더미변수로서 훈련중이거나 훈련받은 경우는 1, 받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그리고 취업기간은 현재의 직장에 근속한 기간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있어서는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장애유형 변수를 포함시켰다. 性변수는 남성의 경우 1, 여성은 0을 부여하였으며, 연령은 滿나이와 함께 연령을 제공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사별로 3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인 경우 1, 가구주가 아닌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의 경우 1, 심장장애는 0으로 부

호화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변수로서는 종사상의 지위, 경제활동분야, 직장에서
의 차별경험 정도를 포함시켰다. 먼저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고용
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세 범주를 구분해서 더미변수로 활용하
였다. 경제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사무직과 비전문·생산직으로
분류하여 전문·사무직의 경우 1, 비전문·생산직은 0으로 부호화하였
다. 차별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은 것이다.

2) 分析結果

취업한 내부장애인들의 勤勞所得에 각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3-6-21>과 같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연
한이 길수록 소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의 증가는 賃金
水準의 上昇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
履修與否는 소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직장에 근속한 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도 높
아지고 있는데, 이는 年功序列型 賃金體系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가운데서,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내부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일반적인 건강상태는 이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3-6-21〉 回歸分析 結果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교육수준	0.084	0.108**
직업훈련여부	-1.079	-0.148
근속기간	-0.004	0.332***
일상생활 도움필요도	0.395	0.062
외출시 불편정도	-0.039	0.050
건강상태	-0.710	-0.057**
성	-0.004	0.075
결혼상태(기준=미혼)		
- 기혼	0.696	0.063
- 이혼·사별	0.236	0.024
가구주	1.583	-0.056
연령	0.062	-0.073
연령제곱	-0.595	-0.072
장애유형	-0.322	-0.036
차별정도	0.291	0.003
종사상 지위		
- 자영업·고용주	0.523	0.023
- 상용직	0.670	0.266
경제활동분야	0.329	0.125***
상수		2.720
R-square		0.231
F		11.049**

주: * $p < 0.1$, ** $p < 0.05$, *** $p < 0.01$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서는 성별은 소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중인 내부장애인의 특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자영업·고용주나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에 따라 소득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활동 분야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문·사무직의 경우 비전문·생산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 4 章 障碍類型別 職業再活方案

第 1 節 序論

1. 일과 職業再活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우선, 일이란 무엇인가? Wright (1980)는 일을 “사회적, 경제적 또는 다른 바람직한 성취 또는 결과를 위한 目標指向的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아니라 그 活動과 生産物이라고 보았다. 또, 오혜경(1997)은 “일이란 자신의 성취도구가 되는 것이며 일이 없는 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없게” 되며, “현대문명의 발달을 가져 왔으며 사회발전의 原動力이며 人間生活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이란 어떤 것을 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힘을 쓰는 활동,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 평소의 생활수단인 勞動, 課業 또는 義務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일의 정의에는 ① 힘 또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며, 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결과를 가져오며, ③ 그 활동을 위한 보수와 연계되어 있다.

일이 인간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만족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Freud는 사랑과 일을 人間 存在의 기본 요건으로 인식하였고, Adler는 모든 인간은 현실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매듭으로, 사회적 매듭, 성적 매듭, 그리고 직업적 매듭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rikson도 주요 自我認識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ottick, 1989). 이렇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Kahn, 1981).

재활분야에서는 직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근로특성을 바꾸기 위해 일의 경험을 사용하는 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Wright, 1980). 따라서, 일은 그 자체로 內在的인 가치를 가지며, 또한 장애를 갖게 된 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준비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作業治療를 사용해 왔다. 직업재활과 작업치료는 장애인이 완전한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의 형태로 일을 사용해 왔다.

일이란 인간에게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재활은 “심신의 결합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일할 권리와 일할 의무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다(오혜경, 1997). 결국,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이란 장애인이 노동과 직업을 통해 사회에 영구적으로 통합 또는 재통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職業再活政策의 現況과 問題

우리나라 직업재활정책은 노동력의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체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체에서 원하는 기술이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가. 障 碍 人 勞 働 力 需 要 政 策

오랜 기간,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개인 차원에서의 治療와 訓練으로만 제한해서 고려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작업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 17.8%, ‘채용시 적성과 능력에 대한 정보 부족’ 18.5%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근로욕이 낮고 작업태도가 불안해서’ 또는 ‘장애인의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심각한 편견도 각각 6.2%, 6.5%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의 채용을 가장 꺼리는 이유로 59.4%가 ‘회사내 적당한 일이 없어서’라는 응답인데, 이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이 따로 있다는 뜻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 教育機會가 확대되고 직업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동력의 공급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의 수요측에서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사업체측에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기를 꺼린다면 교육기회의 확대와 직업훈련의 실시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疎外階層으로 남아있게 되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無氣力한 존재로서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노동력 수요정책은 1990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障礙人 割當雇傭制이다. 당시에는 이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사업체는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후, 1993년부터 2%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 개정·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도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는 5%의 비율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의 수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²⁵⁾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장애인채용을 기피하고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0.95%에 불과하다. 특히 30대그룹의 장애인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다(노동부, 2001).

한편, 장애인을 고용의무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시설개선 등에 유·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 장애인고용사업체는 고용장려금보다 낮은 월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또 기타 사업체에서는 사업주의 이해부족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애인고용실적도 저조하여 민간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25) 2000년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율이 1% 이상이면 273,000원, 1% 미만이면 316,000원이다. 노동부는 2002년 부담금을 39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障 碍 人 勞 働 力 供 給 政 策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에서도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사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작업능력이 49.0%로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성실성이나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능력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따라서,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과 장애인의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기능 및 학력수준이 낮아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직장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다. 1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장애인은 1995년 2.1%에서 2000년 3.4%로 1.3%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너무 낮으며, 학력수준도 낮아서 장애인의 39.4%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직률은 2000년 39.9%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보면, 장애인훈련생에 대한 지원,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등이 있다.

장애인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보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가계보조수당²⁶⁾(월 7만원), 가족수당²⁷⁾(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²⁸⁾(1일

26)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실업자, 의료보호대상자,

1,400원), 식비²⁹⁾(1일 2,500원), 훈련준비금³⁰⁾(1회 4만원)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인 1과정 최대 1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훈련비용과 교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살펴보면, 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등이 있다.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기능대학이 21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21개소, 대한상공회의소산하 직업훈련원 8개소 등 50개소가 있다.

인정직업훈련시설에는 삼육직업전문학교, 덕산직업전문학교 등 8개소가 있다. 인정직업훈련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과는 삼육이 귀금속, 정보처리, 전자기기, 양장 등이며, 덕산이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산업디자인을 제공하고, 그 외 직업훈련시설에서는 자동차정비, 텔레마케팅, 정보처리 중 1개 공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학교 전공과에는 서울맹학교, 서울선희학교, 새얼학교 등 20개소가 있으며, 제공되는 훈련직종은 의료, 공예미술, 농업, 목공, 목각, 수직, 조립, 봉재, 도자기, 세탁, 청소, 도예, 전자, 제빵, 철공, 이료, 재배, 수예, 자동차 정비 등 중에서 1~5가지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에는 16개소가 있으며, 노틀담복지관

꺁생보호자, 영세농어민 중 1에 해당하는 자.

27) 가계보조수당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3인까지.

28)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훈련생

29)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훈련생

30) 6일 이상 출석한 모든 훈련생

(제과제빵), 대구장애인복지관(귀금속공예, 정보처리, 음향영상기기, 도자기공예),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인터넷),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인터넷, 정보처리, 실천적 경영), 기쁜우리복지관(애니메이션), 부산장애인복지관(의료보험전산처리), 그리고 그 외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에서 포장, 직업적응, 조립 등의 직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비교적 다양한 직종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마수련원에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안마수련원 대구교육장 등 5개소가 있으며, 안마만을 직종훈련을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현재 4개소가 있다. 성남의 고용개발원에서는 기계, 전자, 정보기술, 실무작업 등 4개 과정,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산응용기계, 전자, 의상디자인, 인쇄매체, 인테리어공예, 귀금속공예, 멀티미디어 등 7개 과정, 대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자, 귀금속공예, 정보처리, 컴퓨터 산업디자인, 제과제빵, 실무작업 등 6개 과정, 부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산응용기계, 전자기기, 전자출판, 전산응용건축설계, 컴퓨터 산업디자인, 제과제빵, 단순조립 등 7개 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남과 대구, 그리고 수도권에 2개 직업전문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나 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최근의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을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직업훈련직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직업훈련을 받아도 중증장애인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훈련 이수분야를 살펴보면, 기계분야가 31.2%로 가장 많고, 컴퓨터/정보처리 분야가 18.5%, 전기·전자분야가 14.5%, 공예분야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극

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특히 중증장애인은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직업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훈련만을 계속 받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이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공급측면에서 직업재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11개 지방사무소와 몇 개의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많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용득·유동철, 1999).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8개소, 보호작업시설 115개소, 직업훈련시설 10개소, 작업활동시설 27개소, 생산품판매시설 10개소로, 전체 180개소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력과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한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인력지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당 기본지원이 연간 6백만원, 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이 연간 1인당 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보호작업시설은 2~3명의 직원이 평균 27명의 장애인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필수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윤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사업품목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체의 경영을 시설장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다. 사업품목을 선정할 때에도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선정하기보다는 다른 시설에서 생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품목을 시장조사 없이 무조건 따라 하는 상태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품목을 개발하여도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 수 없어서 사업품목의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상표를 가지고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은 많지 않으며, 주로 단순하청을 받는 시설이 많다. 결국, 직업재활시설들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많지 않다.

3. 障碍人 職業再活의 外國 事例

가. 獨逸

독일의 직업재활은 독일사회복지법 제3권(Third Volume of the German Social Welfare Code: SGB III)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직업재활의 가장 중심 기관은 고용사무소(Office of Employment: Arbeitsamt)로,

일반적으로 재정지원뿐 아니라 훈련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관심과 능력, 특수한 상황과 고용시장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된다.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재활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원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애인이 직업훈련과정을 마쳐서 가능한 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노동시장에 영구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며, 법적 개념의 장애와 직업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는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장애는 각 개별 사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독일사회복지법에서 장애인³¹⁾은 신체적·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의 특성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에 통합되거나 통합되어 남아 있을 전망이 심각하게 적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직업재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 적합성(suitability) 평가는 직업을 성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직업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성향, 관심,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하며, 이를 직업의 요건 및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다. 여기에는 인지적·심리학적 요인들과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한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자기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도 고려한다. 다른 사람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와 다른 친척, 교사(특히 교육성취, 관심, 요구조건, 개인발달과 관련된), 직업자문위원 등이 포함된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잠

31) 독일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는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습장애는 장애인에 포함된다.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적합성은 훈련기간 또는 취업했을 때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나중 단계에서 훈련을 마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를 피하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업종과 직업조사에서뿐 아니라 산업내에서 실질적인 경험도 장애인의 자의식을 촉진시키도록 돕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1대 1의 상담 외에도 직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직업자문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직업선택, 자원과 직업선택검사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직업재활의 출발점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독특한 상황을 점검하고, 특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완전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첫째, 주된 기능장애를 검토해야 한다. 즉, 기능장애가 신체기관 결손인지, 기능적인 비정상인지, 아니면 환경적 영향에 의한 비정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장애가 의료재활이나 사회적 지지를 받은 후에도 남는다면 특정 직업에 대한 적합성(또는 비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을 고려할 때, 장애가 동일한 연령대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상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상황, 태도, 기대에서 나타나는 사회행동 유형뿐 아니라 운동기능, 지각력, 인지 또는 동기 등도 고려하는 것이다.

각 개별 사례에서 직업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자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용사무소의 전문가 서비스(의료서비스,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평가에는 의료 및 심리 보고서뿐 아니라 학교의 의견도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 의사, 심리학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상담을 한다. 적합성 판정을 위해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검사는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결과를 공개할 때에도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는 모든 관련자와 논의를 하며, 재활을 위한 전체 계획에 기록한다(<http://195.185.214.164/rehabuch/englisch/p158.htm>).

고용사무소의 기술고문(technical advisers)은 기술적 보장구와 관련된 질문에 해답을 얻도록 돕고 훈련장소와 취업장소의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을 위해 평가할 때 의사결정과정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초기직업통합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원칙은 “가능한 한 정상적이지만, 필요한 만큼 특수하게”라는 것이다. 지원 방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사전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직업훈련센터에서의 지원과정 또는 프로그램과 직업준비의 학교에 기초한 형태이다. 둘째, 산업내, 재활센터내의 직업훈련과 외부기관의 직업훈련이다. 셋째, 표준교육규정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훈련과정에 일치하는 훈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훈련생은 일정하게 변경된 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을 쉽게 마치기 위한 지원(예를 들어, 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지원프로그램은 직업훈련기간에도 가능하다. 넷째,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심리사회 서비스에서 감독하는 추적 수퍼비전, 근로와 시범 취업으로 정착하는 기간의 보조금, 근로생활과 취업기간의 보충적인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나. 美 國

1992년 개정 재활법은 (1) 장애인의 취업, 경제적 자립, 독립, 사회로의 통합을 극대화하고, (2) 연방정부가 장애인의 의미 있고 생산적인 취업과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3) 이러한 노력을 하는 주정부와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힘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개정 재활법은 초기면접과정을 줄이고, 수혜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관료제의 폐해를 줄이고, 장애인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활체계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법은 재활개입의 결과 뿐 아니라 결과까지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이 제정되고 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집단적인 힘을 키우는 장애권리운동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였다. 장애인을 돕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재활법은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독립생활서비스를 이끌게 될 것이다. 독립생활의 철학은 소비자의 통제력, 동료의 지원, 자조, 자기결정, 동등한 접근, 옹호의 철학이다. 재활법은 주정부에 (1) 독립생활서비스의 확대와 개선, (2) 독립생활센터연계망의 지원, (3) 주정부의 독립생활프로그램, 독립생활센터, 독립생활위원회의 관계개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생활운동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장애관리는 재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애관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목표지향적인 팀이 장애인근로자와 서비스를 계획·조정·실행한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법은 勤勞動機改善法(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이다. 이 법에서는 근로장애인도 의료보장의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활티켓 프로그램(Ticket to Work and Self-Sufficiency Program)은 직업평가, 훈련, 배치에서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여러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티켓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한다. 이 티켓은 각 개인이 개별화된 근로계획에 따라 고용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또는 다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된 공공이나 민간의 고용네트워크로부터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법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애인의 소득이 州정부의 기준선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비용으로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또 재취업하는 사회보장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수혜자에게는 의료보장의 기간을 39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 주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 취업에 실패한 장애인에게는 장애급여를 신속히 재지급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第 2 節 肢體·腦病變障 碍 人 的 職 業 再 活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가장 큰 직업적 특성은 운동 기능의 제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 기능의 제약은 보장구 및 작업편의 설비의 설치나 작업대의 개조 등으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운동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들었다. 장애로 인한 운동 기능의 제약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작업 보조 도구나 작업대의 개조, 적정 직종 개발 등의 노력이 없이는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表 4-1-1〉 일하지 않거나 求職活動을 하지 않는 理由

	(단위: %)
일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비율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5.6
임금이 너무 낮아서	0.6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9.3
작업환경(편의시설등)이 열악해서	0.3
출퇴근이 힘들어서	0.6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65.9
다른 질병 때문에	2.8
나이가 많아서	7.7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0.7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1.3
일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서	1.3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2.4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결혼 등)	0.1
기타	1.3
계	100.0

이러한 운동상의 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情報技術 등 운동기능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직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은 이제 기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시키고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 지칭되고 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

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로 정의될 수 있는데, 20세기 말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1세기 초반에는 보편화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다. 이 경제에서는 산업구조에서는 고기술 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전문직종과 같은 지식 집약적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고 기존 산업에서도 지식집약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강순희, 2000).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지식노동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의 성격과 고용구조는 ‘근력에서 지력으로’(from brawn to brain)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식근로자가 다수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기술진보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겠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상당히 변화하여 단순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근로자, 예를 들어 게임소프트웨어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직업훈련이 강화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컴퓨터 3D 그래픽을 이용하여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볼 때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체장애인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력보다는 지력을 사용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추이를 충분히 활용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취업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차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3-1-10, 표 3-1-11 참조). <표 3-1-21>에서

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기술의 부족 등의 이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사업체의 기준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견해(권도용, 1997)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견해(권선진, 1996)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취향가설에 의하면 차별 취향은 경쟁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점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Ehrenberg, 1998). 따라서 의무고용 적용사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고용부담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유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사업주의 반발을 줄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할

경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정보를 보다 세밀히 관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입견에 의한 차별 관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법에서는 구직절차, 고용, 승진 및 퇴직, 해고, 임금보상, 직업훈련, 기타 고용에 수반되는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내용들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고용촉진법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기능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視 覺 障 碍 人 的 職 業 再 活

제 3장의 시각장애인 분석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은 안마 등 특정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의 직종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손상 즉, 보는 활동의 상실이나 손상이 대부분의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엄연히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안마 이외의 직종에서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 직종개발이 요구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욕구가 안마에 의해 모두 충족될 수 없다. 사실 안마가 시각장애인의 전업으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직업 적성, 능력, 흥미, 기질 등 제 요인을 고려할 때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안마가 적합한 직종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안마 이외의 직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다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적합직종의 부재로 인해 직업생활을 포기하는 시각장애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適合職種의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직무수행 가능성이다. 즉, 보는 활동의 손상이나 상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상기술을 바탕으로 핵심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제 새로운 세기와 함께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이 산업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가공·활용하는 일련의 정보의 처리 능력이 생산의 핵심적 능력이 된다. 정보 처리능력에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보에 대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적 수준에 있어 상대적 열세를 가정할 수는 없다. 즉,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인 정보의 입수 및 활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제한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적 노동에 가치를 두며 그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노동 가치의 변화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은 보다 많은 직종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계존, 2000).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망직종을 파악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 및 향후 잠재력 등을 분석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유망한 적합직종의 발굴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시각장애인 적합직종은 단순히 직무수행 가능성 및 노동시장 수요 등을 분석하여 개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직종 개발의 타당성을 파악한 이후 체계적인 직종개발 노력이 중요하다. 즉, 유망 직종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실제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정안인과 동일한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신이 개발한 전문적 직업능력을 실제 사업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발굴 나아가 직장 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순

차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둘째, 시각장애인 취업자의 초기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 직종의 직무수행 가능성 외에도 사업체의 지지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직장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배려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에 사업체에서의 정서적 수용은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주위로부터의 배려나 도움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직장생활 초기에 일시적으로 요구될 뿐 체계적인 적응 과정을 거친다면 대부분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가 시각장애인 취업자의 초기 직장적응을 원조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이동, 식사 등 일상활동 지도 또는 직무관련 업무 지도 등 취업 직종이나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과정은 시각장애인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업주나 사업체 직원들에게도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업주나 사업체 직원들은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도와줘야 하는 막연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생산적인 조직원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시각장애인을용 기기 및 s/w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최근 전산관련 기기의 발달 및 활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손상 즉, 보는 활동의 손상 및 상실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적합직종 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후 컴퓨터에 대한 시각장애인계의 기대는 매우 컸다. 심지어 컴퓨터를 통해 대부분의 직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컴퓨

터 운영체계가 기존 Text mode에서 Graphic mode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활용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물론 운영체계의 변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한 결과였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문서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관련 기기 및 s/w의 지속적 개발과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시각장애인 창업의 경우 집중적인 창업지도 및 보육이 요구된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직무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직종을 선정하여 창업을 하는 것은 직업재활의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시각장애인 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당수가 자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창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자영업 창업과 관련하여 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을 위한 기본 토대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가능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그리고 수익성 분석 등의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 컨설팅만으로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창업직종의 선정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직종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핵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종 선정의 컨설팅을 위해서는 직업세계 일반에 대한 지식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및 관련 보상 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팅 전문가가 필요하다.

창업과정뿐만 아니라 창업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요구된다. 시각장애인이 자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영업활동이다. 해당 직종의 직무수행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초기 영업활동의 부진으로 자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영 초기의 고객확보나 관련 수주 개발 등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按摩직종의 체계적 정립이 요구된다. 안마가 시각장애인 직업생활의 기본 근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전업으로 인정되는 안마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 직무특성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적합한 직종이다. 시각장애인의 잔존능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전문가 개인의 시술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구조도 매우 단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마업 전반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마의 직무자체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서인환 등, 2000). 따라서 안마가 시각장애인 직업생활에서 핵심적 직종임을 전제로 하여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치료적 안마의 강조이다. 현재 안마는 안마시술소 등을 중심으로 시술되고 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에서는 치료적 안마보다는 위안적 수준의 안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 이외에 안마를 치료적 수준에서 시술하는 다양한 시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적 안마를 원하는 다수의 피시술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안마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이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서는 치료적 안마의 사례로서 기업 내 안마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계준, 2000). 이러한 선행사례 등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안마에 대한 수요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사무실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에 치료적 안마기술의 공간을 마련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치료적 시술공간의 확보와 함께 안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안마는 일회의 시술로 한정되고 있다. 즉, 문진, 시술 그리고 경과 및 예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적 안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진, 시술, 경과 및 예후 등 일련의 과정이 확립되어 보다 체계화된 시술을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시술의 체계화는 다른 의료 전문가와의 전문적 의견교류의 근거가 됨으로써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안마의 입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第 4 節 聽覺·言語障礙人的 職業再活

본 절에서는 제3장의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기초한 직업재활방안과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직업재활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聽覺·言語障礙人的 職業再活方案

청각·언어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임과 동시에 대부분이 수화를 의사소통수단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장애정도가 1~2등급의 중증이면서도 항상 보호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으로 인식되어 의사소통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특성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다른 장애분야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각·언어장애인의 특징은 제3장의 경제활동유형과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외형상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어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실업상태에 머문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앞장의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관련 분석결과를 기초로 직업재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구주일수록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도 가구주인 경우 가구의 생계책임을 져야하는 가구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로부터의 구직요구시 취업욕구도 강하고 책임감 있는 가구주를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적합직종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직업기술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자금지원도 더 많은 장애인 가구주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기간의 경우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평균 장애기간이 21년으로 길고,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까지는 심리적, 신체적 재활을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발생 후 직업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일수록 비경제활동에 비해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경증일수록 취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비해 실업상태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직장환경이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아 취업보다 실업의 상태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욕구가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의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의사소통 가능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업장내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던가, 공중팩시밀리, 작업장내 화이트보드 설치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각·언어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의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클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크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및 불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장구인 보청기, 인공후드 등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이 3.2%로 나타나 적은 수의 장

애인만이 공적소득보장체계내에 포함되어 향후 노후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장애인 및 실업장애인들도 제도적으로 소득보장체계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으로서의 취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나 취업가능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이외 현재 저소득장애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4만 5천원보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정된 적절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활동장애인과 비경제활동장애인간의 고용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차별정도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차별을 적게 받을수록 경제활동상태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 제한된 교육환경과 낮은 취업률, 사회차별 정도는 압박과 분노, 좌절과 낮은 자존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데, 사회차별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게 되면 더욱 사회속에서의 상호작용 기회를 잃어 의사소통도 어렵게 되고, 그에 의해 취업 기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접해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청각·언어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컴퓨터·인터넷 확대보급을 통한 정보복지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장애인과 비경제활동장애인간의 고용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컴퓨터를 보유할수록 경제활동상태에 속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정보통신의 접근과 이용의 보장이 결여된 상태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활화되어 있다. 정보와 지식사회라는 환경변화로 교육과 훈련이 인터넷이나 사이버를 통한 원격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도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고용이나 재택근무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격영상교육의 실시 및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가용 보유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취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의 팔과 다리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장애인의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가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욕구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각 장애유형에 적합한 차량의 주문제작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차량 보유에 따른 세제 감면 및 연료비가 저렴한 LPG가스 사용 등과 같은 차량유지 지원제도들도 시행되고 있음을 동시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보유하여도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이 더 많은 곳에 설치되어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본 분석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작업장내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시설로는 작업지시나 동료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화이트보드 설치, 비상점멸램프, 경고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언어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장애만으로 그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수화는 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 인격 그 자체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 聽覺·言語障礙人的 職業再活過程³²⁾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의 직업재활과정은 ① 구인·구직등록, ② 직업상담 ③ 직업평가 ④ 직업훈련 ⑤ 직업(취업)알선 ⑥ 사후지도 ⑦ 타기관 의뢰로 구분된다.

가. 求人·求職登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구직등록을 하게 된다. 구직등록시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연령,

32) 이 부분은 최현숙, 「청각장애인의 고용관리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의 내용을 일부 수정·정리한 것임.

장애정도, 失聽 및 失言時期, 學歷, 職業歷, 수화나 구화 등 언어구사 정도 등 취업에 관련된 개인의 기초적 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상담을 약속하게 된다.

나. 職業相談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상담은 직업상태 이외에 일관성 있는 직업 계획을 세워 타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흥미·제능력 및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원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청각·언어장애인 중 口話教育을 받은 자는 讀話 및 發語를 하지만 대체로 음성언어 대신에 手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방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의사표현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담방법으로는 指示的·非指示的·經驗的 방법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指示的 方法(Directive Method)은 내담자와의 면접, 상담자 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자료를 분석·통합시켜 문제의 원인이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문제해결이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원조정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高度 難聽者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직업생활의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갖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과의 상담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非指示的 方法(Non-Directive Method)에서는 내담자의 특정 문제가

아닌 내담자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受容하고 감정의 표시를 할 뿐, 과거를 문제삼거나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담자 스스로가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 방법은 高學力 청각·언어장애인이나 동기부여가 되면 능력 발휘가 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 적극적인 자기결정이 가능한 中途失聽者 등의 재활과정에 유용하다.

經驗的 方法(Empirical Method)은 내담자의 행동을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한 습득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學習經驗이 쌓이면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을 경험에 의해 익힘으로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보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대체로 職業意識이나 自己開發 意識이 결여된 청각언어장애인과 상담에서 유용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상담방법들은 상담자에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職業評價

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일상활동능력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력·언어상실이 직업생활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의 직업평가는 한 개인의 고용상 必要條件과 취업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 즉, 의학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해석·분석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할 때 의의가 있다.

직업평가의 영역과 내용³³⁾을 알아보면, 청각·언어장애인 직업평가 요소들은 의학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醫學的 評價를 함에 있어 청각·언어장애는 장애부위·원인·시기·정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주변 소음에 대한 반응도 기본적으로 여러 특징을 보인다.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청각·언어장애가 어떠한 직업적 장애를 초래하며, 현재의 신체적 기능이 직업을 갖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心理的 評價를 함에 있어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의 수용태도 및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애인의 전반적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社會的 評價를 함에 있어서 청각·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독화·발어·수화 등의 학습과 聽能·言語訓練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평가는 내담자의 생활형태와 개인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직업평가사는 내담자의 건강상의 來歷과 周邊環境 그리고 교육 정도와 흥미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의 현재상황은 職業配置(Job Placement)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職業的 評價는 내담자의 직업적 소질과 능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

33) 김민수, 김명희,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평가방안』, 『청각장애 논단』, 한국 청각장애자복지회, 1992, pp.22~26

발 가능한 직업적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紙筆檢査(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標本作業評價, 現場實習評價法 등이 있으나 청각·언어장애인은 행동장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나 의사소통 장애로 작업 현장에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직무의 내용이나 성질을 빠르게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차후 職場適應問題로 확대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맞는 평가방법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직업평가방법은 표본작업(work samples)평가와 현장실습평가(On-the job tryout)로 구분될 수 있는데, 표본작업평가법은 평가장면에서 彼評價者가 능동적으로 직업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직업정보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으며, 작업의 수행·내용·방법 등 작업적인 특성들을 직접 관찰토록 하여 직업탐색기회를 부여하며 평가자는 내담자의 적성·기능·흥미·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본작업평가의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인성·지능·적성·흥미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心理檢査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심리검사도구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결정에 있어서 보다 더 과학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해지는 장면에서는 이러한 검사도구들의 활용방법이 청각·언어장애인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現場實習評價는 개인의 직업흥미와 적성, 직업목표가 파악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직업영역이 선정되면, 직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직업능력과 적응력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직업평가사는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하여 適正 業體를 선정, 청각·언어장애인과 상의하여 업체를 결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사업체와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요구가 不一致될 때는 다른 사업체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라. 職業訓練

직업훈련이란 직장에서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필수적인 직업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훈련의 조직적인 형태로서,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의 직업훈련은 주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일산 직업전문학교, 운보원, 전국맹·농아기술교육센터, 일부 재활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각·언어장애인의 선호직종으로 나타나는 디자인이나 컴퓨터 직종은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에 따라서는 복지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重複障礙의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에서 단순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기능대학이나 일산의 공공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으나 그 이용도는 대단히 낮다.

직업교육훈련 직종을 보면, 특수학교에서는 목공예, 도자기공예, 상업미술, 자수·편물, 인쇄, 한재·양재, 원예, 축산, 전산 등에 걸쳐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일산직업전문학교의 훈련직종은 사무자동화, 경인쇄, 정밀기계, 목조, 나전칠기, 전자, 양장·한복, 귀금속공예 등으로, 직업교육훈련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직종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농학교 고등부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종은 사무직, 미술, 목공예, 봉제, 이용, 인쇄, 공예, 염색, 용접, 금속가공, 치기공, 세탁, 자동차, 도료 등이다. 독일의 경우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청소년 직업훈련원이 2개소가 있어, 사무직, 선

반, 기계조립 정밀기계, 기계제도, 용접, 전자기기, 방송기기, 정밀전자기기, 목공, 도장, 봉재, 양재. 침구, 공간디자인, 가사, 요리, 치기공, 조적, 농사, 조경, 인쇄 등을 가르친다.

마. 職業(就業)斡旋

직업알선은 장애인의 欲求와 適性에 맞는 직장을 연결하는 제반 활동으로, 구직기술훈련, 직무조정활동, 직접적인 직업배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주된 과정으로써 앞에서 논한 직종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첫째,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알선시 주의하여야 사항들이 있다.

첫째, 청각·언어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지능, 학력, 자격, 기능, 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에 맞추어 직무배치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을 뿐 특정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보가 늦어 지적수준도 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넷째, 청각·언어장애인을 고용하여 작업배치, 작업지시, 공지사항을 필담으로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의 문장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고, 2중 부정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하고, 어려운 단어는 쉬게 풀어서 설명해야한다.

다섯째, 작업장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보고 웃거나 농담등 사소한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욕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즉시 오해를 풀어 주어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은 대부분 경쟁고용형태로 취업되며, 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주어진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업체에 방문은 상담원과 동행하여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고용관리시 유의사항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동행을 못하는 경우 취업추천소견서를 작성하여 청각·언어장애인편에 보내게 된다. 취업추천소견서는 추천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을 기입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보내게 된다. 기재내용은 첫째, 장애관련 사항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즉, 手話. 口話. 筆談 등에 대한 가능정도를 기술하게 되며 둘째, 職業適性과 관련하여 직업흥미, 기능정도, 작업수행능력, 대인관계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셋째, 고용주가 직무배치 및 직무관리시 고려해야 되거나 특별히 배려해야 될 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면접채용시 청각장애인 고용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각종 직업이 요구하는 신체적·지적·기술적·심리적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職務分析은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① 작업내용,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작업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첫째, 주변 소음정도와 청력 이상 유·무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며, 둘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소통 필요정도 및 소리로써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는 내용과 이에 대한 내담자 개인의 소화능력, 셋째, 數 概念을 요하는 직무는 특별히 내담자의 數理能力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행한 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 事 後 管 理

사후관리란 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현장에서 雇傭維持에 필요한 적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은 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듣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기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시각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므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오해가 잦은 편이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기에 협동심이 부족하여 직장에서 소외를 느끼게 되어 이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타 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청각장애인을 고용했던 회사들이 심한 離職率로 인해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사후관리는 직업알선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보통 취업된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의 부수적인 사후관리는 취업된 후 60일내지 90일의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기간 내에 장애인에 대한 就業 適合性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임금·작업환경·작업시간·작업배치·승급·기숙사 생활 등 근로생활과 관련된 문제
- ② 청각장애 근로자간, 청각장애 근로자와 일반인 근로자간, 관리자와의 관계 등 인간관계
- ③ 가치관·직업의식·사회관 등 의식 형성 문제
- ④ 결혼·가족·정서 문제 등 일상생활의 문제
- ⑤ 학습지체 청각장애인의 교육 등 의사소통 수단의 확보 문제
- ⑥ 올바른 정보수용의 문제 등 장애인의 당면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실시된다.

사후관리의 방법으로는 직장예의 직접 방문지도·내담지도·전화·편지 등이 일반적이며 동문회 조직을 통한 상호 연대의식을 고취하여 직업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화를 배운 일반인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회원 중심으로 사후관리봉사단을 조직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연결시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사. 他機關 依賴

청각·언어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현 자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타기관의 전문가와의 협력차원에서 의뢰가 이루어진다.

의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욕구에 적절한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청각장애인이 이를 부탁할 경우, 의뢰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예를 들면 담당자의 직위나 이름)를 해주어야 한다. 의뢰할 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전문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한 기관에서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人的資源과 物的資源의 개방과 협조는 필수적임에도 현실적으로 기관간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第 5 節 精神遲滯人의 職業再活

精神遲滯人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인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의 접근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추천할 수 있다.

첫째, 지원고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원고용은 유급 고용으로,

장애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집중적인 계속지원을 요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비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유급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예: 감독, 훈련, 교통수단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없을 경우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사례관리 기법을 충실히 사용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는 단계적 과정이다. 이러한 발달 단계는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 과정도 생략되어 성공적으로 지나칠 수 없다. 발달단계의 진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이전단계에 달성된 과정의 통합적인 변형의 결과이다. 특정 생애단계에서의 사건은 특정 부분의 취약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취약성은 장애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징적인 어떤 영역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장애에 접근하는 방법은 생애주기별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生涯週期的 觀點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적 연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이루어진다. 이들은 보통 특수교육 체제로부터 성인재활 서비스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 가정을 가지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전환과정을 고등학교 재학기간, 졸업시기, 졸업이후의 교육 및 부가적인 성인서비스, 고용초반부 등의 광범위한 기간을 포괄하는 과정으로서 장애인들의 질적인 사회통합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함의를 가진 기관들의 대외적 협력을 통한 체제 변화과정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증가하여 왔다(Everson, 1993).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성인기로의 전환시기에 있어서 효과적인

연계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Sower & Powers, 1991; 박경수, 1997에서 재인용).

장기적인 사례 중심적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담당 기관의 역할을 대폭 재편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처음 서비스를 의뢰 받는 기관의 서비스 담당자일수록 효율적이다. 이를 위한 시험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시험적 대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지원할 수 있는 지역센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직업준비부터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등록업무를 장애인복지관에 이관한다. 장애인을 처음 대하는 기관은 등록을 위한 동사무소이거나 장애상담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장애인을 접하는 기관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업무가 장애인복지관에 이관되면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처음으로 접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백화점식 서비스는 다른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 이관한다.

셋째, 장애인이 복지관에 등록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평생지원계획을 수립, 그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교육기관, 방과후 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보호작업장, 그룹홈 등 생활시설,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기술 훈련, 자원봉사)와 연결시켜 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장애수당 신청 등 모든 자원을 연결시켜 준다.

넷째, 등록된 장애인이 학령기가 되면 교육기관의 특수교사에게 장애아동을 인계하고 그 동안의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학령초기에는 읽기, 쓰기 등 기본 교과가 중심이 될 수 있으나 학령후기(노동시장 진입기)에는 학교에서는 일상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학령후기가 되면 교육기관의 특수교사는 장애인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환교육계획을 마련한다. 이 때 사회복지사는 진단 평가 및 직업재활계획을 염두에 두고 공단의 직원과 함께 전환교육계획을 검토한다. 학령후기의 장애학생은 전환교육의 방침아래 일반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직업현장에서 실습위주의 간단한 적응훈련을 한다.

여섯째, 졸업을 한(노동시장기) 장애학생은 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을 활용하여 곧바로 취업하거나 취업능력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직업재활전문가와 함께 다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한다. 직업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호작업장 등지에서 직업전훈련을 다시 받고 직업수행태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바로 공단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고 취직을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높여야 한다. 이것은 노동력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이다. 현재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노동 수요처는 보호작업장(근로시설 포함)이 대부분이다. 2000년 현재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을 합하여 총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을 보호작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르기로 하겠다. 보호작업장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미흡으로 심각한 운영 문제가 존재했다. 2001년 현재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작업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긴 하나 기존의 문제를 거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호작업장은 대개 1-2인의 직업훈련교사가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을 훈련시키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

다. 그리고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에 매우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보호작업장은 국가책임하에 의해 정부가 육성·개발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었다. 둘째,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은 목공·목공예, 편물, 단순입가공 등 사양품목과가가치가 낮은 품목을 하청·생산하고 있어 판로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최저임금이하의 급료를 받고 있다. 셋째,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원적 서비스를 통하여 작업과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하고 그 결과로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은 작업조건의 열악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프로그램도 기대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호작업장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작업장으로의 전환 프로그램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넷째, 보호작업장은 운영의 생산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 보호작업장을 경유한 장애인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촉진자 혹은 일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되 기본적인 성격은 민간 조직이다. 둘째, 집단적 이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한다. 셋째, 재원은 완전히 사적 기업에 의존하거나 공적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기업 자체적으로 자금의 일정부분을 조달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연대성의 복원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

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다(이소정, 2000).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의 Remploy공사와 스웨덴의 Samhall이다.

第 6 節 精 神 障 碍 人 的 職 業 再 活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질환적인 증상으로 인해 社會的 役割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불리(handicap)를 지닌 정신장애인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을 갖게 하여 일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방법을 말한다(Anthony&Lieberman, 1986). 따라서, 여기에는 치료적 형태의 작업활동에서부터 완전고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직업과정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의미는 정신장애인의 總體的 機能의 수준이 향상되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 직업기술, 대처기술과 증상관리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이 제공하는 생활구조, 경험과 사회망은 다른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를 막거나 중화시켜 대처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증상적 재발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이봉원, 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친구관계, 정신건강상태, 일의 종류와 분량, 대인관계, 사회생활, 하루 활용, 여가생활, 저녁과 주말을 보내는 방법, 행복감, 자율성과 자아감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권범, 1996), 직업적 측면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과변인 중 하나이며, 경제적 복지감

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공헌한다(황태연 외, 1995)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장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신과적 증상이나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직업 유지 능력, 인내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 등에서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Anthony & Liberman, 1986). 그러나 이러한 장애는 증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발달과정에서 학습기회와 사회적 경험의 박탈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이 선행되고 정신과적 질환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장애로 개인적 동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홍진표 외, 1996), 본 조사결과에서도 정신과적 증상의 호소로 직업재활에 대한 의지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전 삶의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 재활의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일할만한 적절한 일거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일상적인 압박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유능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생활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精神科的 特性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직업재활의 방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증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입과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특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방안을 취업단계와 직업재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精神障礙人的 就業率 增加 및 就業持續化 方案

먼저, 취업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로 고연령층의 자영업 중심으로 저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과 관련된 질적인 측면은 거의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경제적인 보장과 삶의 질에 대한 지표로 이해되기보다는 일하고 있지만 가난한 근로빈민(working poor)의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반기업체의 취업률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제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첫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념이 기본적 바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시적으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의 신규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모든 장애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男女雇傭平等法」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용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체계적인 법률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여 성차별과 연령차별, 장애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제거해 나가기 위하여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당장에 장애인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는 여타의 장애인 취업 지원대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념 하에 정부는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수요적인 측면에서 기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경우, 法定障礙人으로 포함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타 장애유형에 비해 일반 사업고용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노동수요를 높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賃金補助制度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社會的 脆弱階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 위주의 정신장애인 취업현황을 볼 때, 장애인집단의 자영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상 대인관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직업활동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취업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3개월, 중증 장애인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보다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精神障礙人의 特性에 맞는 職業準備 및 訓練過程 發掘

다음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정신장애인 중 30%에 달하는 취업희망 정신장애인은 취업준비과정 및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就業動機와 再活意志를 고무시키기 위한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낮 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의 事前職業準備科程이 중요하다. 직업재활의 단계에서 사전직업준비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희망 직종 및 희망 근로형태도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에서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직종이나 일반사업체 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사전준비과정은 정신장애인의 취업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정신보건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2000년 1월에서야 정신장애인이 법정장애로 포함되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제도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직업재활기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診斷 및 評價機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담원, 심리검사원 등의 전문인력이 반드시 충원되고 재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재활기관은 정신보건기관으로부터 구직 정신장애인에 대한 精神科的 診療, 職業再活可能者 選別, 職業相談員 및 職務指導員 再教育 및 취업장애인의 사후관리를 비롯한 事例管理(case management)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신보건기관은 정신장애인의 職業配置(보호고용, 지원고용,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와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서 조사 대상 정신장애인의 98%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직업훈련분야도 기존 훈련분야에는 희망 분야가 없는 경우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직업훈련이 신체장애인과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위주의 직업훈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職業動機가 약하고 장기간 입원체험으로 인한 社會性 減退는 물론이고 對人關係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취업 전 직업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형태의 직업배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적응훈련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도 실시기간이나 실시형태를 정신장애인에게 맞게 보다 신중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精神障礙人の 職業再活을 위한 環境變化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社會的 認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한 장애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이 법정 장애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27.4%)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체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地域社會統合을 이룩하는데 다양한 홍보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정신장애인 역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第 7 節 腎臟障礙·心臟障礙의 職業再活

3章의 내부장애 분석에서 내부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 내부장애인의 성별, 가구주 여부, 건강상태, 차별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 취업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이거나 가구주, 또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내부장애인은 취업하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상태나 교육정도, 직업훈련 여부 등에 따라서는 취업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여러 특성 가운데서 특히 일반 장애인과 다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특성은 장애정도와 관련 있는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람의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등으로서, 이들 변수에 따라 취업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장애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신체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본인의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장애가 障礙範疇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아직까지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들도 있었다. 즉,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을 제외하고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활동 등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차별 경험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내부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장애 범주에 포함되긴 했지만 내부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취업과 관련된 특징으로서는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는 평균적인 취업 장애인 비율보다 훨씬 낮은 취업비율을 보여 우리나라의 내부장애인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애특성에 따른 취업에 관한 욕구에 있어서도 다른 장애와는 다소 다른 특성들, 예컨대 肉體勞動보다는 事務職이나 自營業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내부장애인의 신체적 장애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장애인의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주로 인적자본 변수인 교육정도, 근속기간 및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활동분야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의해서는 소득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 같은 내부장애인의 가장 주요한 직업적 특징은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체력의 저하와 건강관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과중한 육체적 노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또한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신장장애인과 같이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시간의 배려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내부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사업체에의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내부장애인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거나 無知로 인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내부장애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增進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장애는 장애라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부분만 제외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 특히 장애정도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직업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유발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취업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업주가 내부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른 장애와 달리 내부장애인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둘째, 장애인 職業再活體系 내에 내부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장애인에 대해서는 인식부족으로 인해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업의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직까지는 다른 장애에 비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範疇擴大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장애인에 대해 구직·구인, 직업훈련·알선 등의 직업재활체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들이 등록장애인으로서 직업적 능력을 갖고도 취업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취업이 거부당하는 사례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별적인 규정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내부장애인에 적합한 雇傭管理體系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체를 유도하기 위한 財政的, 人的 支援方案도 요구된다. 취업 도중에 발병하여 장애를 갖게 된 내부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轉換配置하도록 한다든지,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일정한 투약이나 휴식시간을 갖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연동시간제(flexible time)의 실시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일정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8시간 넘게 종업원에게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透析으로 인한 缺損을 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일제로 일하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임시 또는 파트타임의 형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체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직장동료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일선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기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내부장애인을 위해서 이들의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스트레스, 恐怖感 등의 부정적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Bitter, 1979). 이와 함께 내부장애인의 경우 섭생 등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들과 가족을 대상(自助集團 등)으로 질병과 장애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효과적(권선진, 1998)이라 할 수 있다.

第 5 章 結論 및 政策提言

第 1 節 障礙類型別 特性 比較

장애유형별로 노동연령대 장애인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표 5-1-1>과 같다.

<表 5-1-1> 障礙類型別 一般的 特性(連續變數의 平均)

변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정신	신장 심장
연령	47.1	44.3	44.8	32.9	41.3	49.3
교육년수	9.46	8.94	8.89	7.69	10.03	9.74
총가구소득	105.9	127.8	104.3	85.4	88.0	115.1
희망생활비	117.7	134.1	119.3	99.9	99.6	128.5
근속연수	12.5	14.0	15.4	8.8	9.4	166.5
월근로소득	90.5	96.5	71.2	40.5	37.1	84.7
주당근로시간	56.0	60.4	54.2	53.5	61.5	51.3

장애유형별로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정신지체가 32.9세로 가장 낮았고 내부장애가 49.3세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체·뇌병변장애도 47.1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청각·언어장애와 시각장애는 각각 44.8세, 44.3세로 중간정도의 연령층이었고, 정신장애는 41.3세로 비교적 젊은 편에 속했다. 교육년수를 장애유형별로 비교하면, 정신지체가 7.69년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정신장애는 10.03년으로 평균 교육년수가 가장 높았으며, 내부장애도 9.74년, 지체·뇌병변장애는 9.46년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외 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는 8.94년, 8.89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나 내부장애가 모두 어느 정도 교육이 종료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히 인지장애가 아닌 내부장애는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이 요구되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이 적합한 직종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시각장애가 127.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장애도 115.1만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지체·뇌병변장애와 청각·언어장애는 가구소득이 105.9만원, 104.3만원으로 중간 정도였다. 그러나, 정신지체는 85.4만원으로 가장 가구소득이 낮았으며, 정신장애도 88.0만원으로 상당히 낮았다. 특히, 교육년수와 함께 비교해볼 때, 정신장애는 교육년수가 높으면서도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의 직업재활이 특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 5-1-2〉 障礙類型別 一般的 特性(名目變數)

변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신장 심장
취업여부						
취업	52.3	59.5	38.0	25.1	10.8	28.9
실업	47.7	40.5	62.0	74.9	89.2	71.1
성별						
남자	79.7	67.3	64.6	67.8	55.3	50.4
여자	20.3	32.7	35.4	32.2	44.7	49.6
가구주여부						
가구주	72.5	61.9	45.4	17.1	24.5	52.9
비가구주	27.5	38.2	54.6	82.9	75.5	47.1
결혼상태						
미혼	16.4	17.9	31.1	76.3	42.1	8.3
기혼	70.4	67.3	56.4	13.7	35.2	76.0
이혼·사별	13.3	14.7	12.5	9.9	22.7	15.7

다음으로 장애유형별로 취업여부, 성별, 가구주여부, 결혼상태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취업여부를 비교해보면, 시각장애가 취업률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뇌병변장애도 52.3%로 취업률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특히 지체장애인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청각·언어장애가 38.0%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신장·심장장애는 28.9%였다. 정인지체의 취업률은 25.1%로 상당히 낮았으며, 정신장애의 취업률이 10.8%로 가장 낮았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신장애와 정인지체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신장애와 정인지체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가장 크다는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장·심장장애의 취업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장·심장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육체근로는 어렵고 사무직을 필요로 하며, 또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 시간제근무가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에서는 이들 내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 구조를 보면, 지체·뇌병변장애는 남성이 79.7%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으며, 정인지체 67.8%, 시각장애 67.3%, 청각·언어장애 64.6% 등으로 남성이 많은 편이고, 정신장애는 남성이 55.3%로 비교적 남성이 적은 편에 속했다. 또한, 신장·심장장애는 남성이 50.4%, 여성이 49.6%로 남녀의 분포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여부에 있어서는 지체·뇌병변장애의 가구주 비율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장애 61.9%, 신장·심장장애 52.9%로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많았다. 그러나, 청각·언어장애는 가구주가 45.4%였으며, 정신장애와 정인지체는 특히 가구주의 비율이 각각 24.5%, 17.1%로 상당히 낮았다. 이는 결혼상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유형별 결혼상태를 보면, 신장·심장은 기혼이 76.0%로 3/4 이상이 결혼을 하였고, 지체·뇌병변장애도 70.4%가 기혼으로 나타났다. 또, 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도 각각 67.3%, 56.4%로 기혼의 비

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는 미혼의 비율이 각각 76.3%와 42.1%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장애는 결혼이 상당히 어렵고, 평생 부모 또는 형제 등 가족의 보호 아래 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第 2 節 分析結果의 要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보상이 장애인과 장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장애유형에 따라 경제활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는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도움정도, 외부활동불편정도, 건강상태 등 장애정도와 관련된 변수들도 경제활동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재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장애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이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비장애인과는 상반된 결과로,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

록 직업에서 기대수준이 높아지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장애인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없다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직업훈련의 직종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취업에서 또 다른 주목할 사실은 일상생활 도움정도와 외부생활 불편정도가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정도가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장애인이 일단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면 장애정도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경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의 원인과 장애유형은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연한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상태에서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교육연한이 임금에는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앞에서 제시했던 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직업재활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직종의 직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진입 자체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의 가능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학력이 높은 장애인이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학력이 낮은 장애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일상생활도움정도, 외부활동불편정도, 건강상태는 모두 임금과 관련이 없었다. 즉, 장애정도가 경제활동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취업하고 나면 임금과는 관련이 없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직종도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무직이 다른 모든 직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사무직에서 직종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분석에서 지체·뇌병변장애에서는 첫째, 보장구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직업재활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아직까지 장애인보장구는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의료보험이나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너무 낮은 지원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임신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 등에서는 편의시설이 많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직장에서의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교통수단의 편의시설에서도 지하철·전철 등의 이동편의시설은 많이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에는 전혀 이동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없으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상당히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둘째, 정보기술산업의 개발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지체·뇌병변장애인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즉,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장애로 인해 인지하고 사고하는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문제나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문제가 심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체·뇌병변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지체·뇌병변장애의 분석을 보면, 차별경험에 따라 취업할 때 또는 직장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나머지는 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의 경험이 적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이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장애인의 취업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겐 자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영업의 운영이 직장과 관련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은 약 11.3%에 이르고 있지만 직업훈련여부가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대상의 직업훈련이 안마 외에는 거의 없고,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의무적인 직업훈련이 없이도 취업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아직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안마가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업종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편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텔레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종의 개발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각장애인을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상당 부분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장벽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직업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직업훈련의 직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직업훈련기관의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각장애인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지원인 입직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보청기, 화이트보드 등의 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화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서 고용하는데 필수적이다. 현재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처음 사업체에 취업할 때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화통역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단 취업한 후에는 거의 필담 등으로만 의사소통이 유지되고 있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는 컴퓨터의 보급과 교육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컴퓨터 기술발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의 하나이다. 실제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인은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의 직업재활은 일반경쟁고용을 통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신지체는 인지의 문제로 인해 일반고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원고용이 중심이 된 직업재활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직업재활전문가가 정신지체인 개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가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정신지체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직업재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지체인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지체인이 일반고용이 된다면 사업체에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되었던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정신지체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업체에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보다 고용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신지체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도 인지와 사고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와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회차별이 심한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정신장애는 유전이 되는 장애로 인식되고, 또 빈번하게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애로 인식되면서 차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차별이 직장에서의 차별로 이어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홍보를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돕는 반면, 정신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에는 임금보조제도와 같은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은 특히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장애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전문가들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준비과정부터 직업재활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정신보건서비스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한편, 직업재활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복지전문직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심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인지나 사고의 문제가 없다는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부장애인은 우선 무리한 육체노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직을 선호하며, 사무직이 육체조건에 맞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신장장애인은 규칙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특징 때문에 직장에서 치료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사업체에서는 신장장애인 등, 내부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부장애인은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치료시간에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내부장애는 최근에 장애범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직업재활사업체계에도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직업재활사업에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직업재활기관에서 의료기록의 입력 등 새로운 직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장애인을 위해서는 현재 전일제근무 중심으로 비탄력적으로 직장이 형성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근무형식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즉, 시간제근무나 탄력시간제근무를 잘 활용하면 내부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체가 내부장애인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용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변화와 함께 장애유형에 따라 각 장애유형에 필요한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각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의 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第 3 節 政策提言

1. 敎育과 職業訓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우선,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장애인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情報通信分野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컴퓨터 기술의 교육과 훈련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技術의 進歩는 장애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스캐너, 언어 합성기, 점자 프린터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意思疏通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도구도 발전했다.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전기 모터의 발전, 생물공학의 진보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생활의 발전을 이끌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토론망,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인적자원을 전산화하여 재활전문가들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더 많은 재활전문가들이 전산망에 가입하면서 전산망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온라인 토론망은 전국적·국제적이 될 수 있으며, 재활전문가들이 서로 접근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적 또는 국제적 재활지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장애관련법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재활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재활기술은 정교한 컴퓨터와 보조기구에서부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책상 밑에 상자를 두는 단순한 활동까지 다양하다. 정부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활전문가는 사업체와 장애인근로자 모두를 위해 대변할 책임이 있다. 재활전문가는 노동시장의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합리적이며, 가격이 적당하며, 실제적인 재활기술을 발견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재활전문가는 각 장애인이 독특한 기능적 능력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이 직업훈련, 취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傳達體系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 부서,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정부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이 좋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경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찾아내

고, 이를 직업훈련 직종으로 선정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도 직업훈련 직종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재정 지원을 한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조사연구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제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의 특성에 따르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을 계속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특수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분야에 유망한 직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가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분야였으며, 기계분야, 기타 서비스분야 등의 순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경향을 파악하고, 장애인근로자의 희망을 반영하는 직업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이며, 적응적인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障礙人適合職種을 개발하여 선정하고 이를 직업훈련 직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훈련이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이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장애인근로자를 위탁하여 교육시키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2. 障碍人 職業再活施設 支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을 교육·훈련시켜서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채용할 직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을 받아도 일반작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장애인재활서비스프로그램 중심의 시설, 장애인생산중심의 시설, 그리고 판매망으로 구성한다.

장애인재활서비스프로그램 중심의 시설은 작업능력이 매우 뒤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상품을 생산하여 임금을 받는 목적보다는 작업을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작업활동시설(activity center)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생산중심의 시설은 그 체계를 보호고용 → 지원고용 → 일반고용(경쟁고용)의 체계로 확립한다. 보호고용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없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호된 상황에서 취업시키는 고용의 형태이다.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은 우선 보호고용을 통해서 작업능력을 개발시키며, 그 과정에서 생산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한다.

보호고용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 그리고 생산작업을 통해서 작업능력이 증대하게 되면 지원고용을 실시한다. 지원고

용은 직업재활전문가가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취업시키고,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이다. 이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이 일반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결국 경쟁고용(일반고용)으로 나아가게 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지원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실질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작업장내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훈련, 현장지도를 제공하고, 각 장애인근로자의 발달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인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장애인근로자 15인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사업체 개발, 판매대금의 수금 등 외부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적어도 1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장애인근로자작업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호작업시설에서도 서류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원도 적어도 1명이 필요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한 또 다른 지원은 경영에 대한 지원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영세하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대단히 미흡하고, 이에 비롯한 생산성 저하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품목의 개발, 사업체의 운영 등 경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품목에 대해서는 경영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주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는 시설설비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도록 한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의 장애인생산품시설을 물류창고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에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한다. 온라

인 판매망에서는 개별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을 조정하고, 각 시설의 생산품의 품질을 통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에만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이 너무 낮아서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해도 빈곤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임금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3. 社會的 일자리의 創出과 支援僱傭

장애인 중에는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등을 거쳐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이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윤추구로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와상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윤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의 보호도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참여하기를 꺼리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노동시장에서는 불리한 노인이나 인적자원을 갖추지 못한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에서 취업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방식이 지원고

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고용은 현재 2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3차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SamHall이나 영국의 Remploy와 같이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할 때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체를 설립한다. 사회적 기업체는 세금 및 금융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체로 장애인근로자에게 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파견근로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레크리에이션 시설, 학교 등 공공장소나 병원,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건물 청소나 관리, 세차 등 다양한 서비스 용역을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운영한다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오길승 외, 2001).

4. 自營業 創業의 支援

다수의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이동권의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창업자금을 低利融資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창업은 실패로 끝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업종, 사업체의 위치, 자금의 용자, 설비 및 내부인테리어, 운영기술의 전수(음식점의 경우 음식기술의 전수), 세금문제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경영, 금융, 세무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자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도 자문위원은 경영, 금융, 세무전문가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면

서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障 碍 差 別 禁 止 法 의 制 定 과 障 碍 關 聯 法 의 改 正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어서 장애인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동료 비장애인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 작업하기를 꺼려서 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구직절차, 고용, 승진 및 퇴직, 해고, 임금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작업장 환경을 포함한 편의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내용들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이 법을 개정하여 실제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대폭 활성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은 장애인고용과 같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둘 수 없는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을 우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제재방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법의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업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노동부에서는 대상업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용의무사업체 규모를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는 2만 7천여 명, 100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4만 1천여 명이 된다(남용현, 2001). 장기적으로는 고용의무대상업체를 50인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의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애인의무고용비용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적용대상근로자의 2%로 규정되어 있다. 이 장애인의무고용률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출현률인 3%로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2%도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모두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더 효율적인 강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01년 1인당 월 27만 3천원(1% 미만시 31만 6천원)에서 39만 2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수준까지 높여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은 한시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서의 차별이 없어지면 특정 일자리에 대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채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채용을 하지 않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일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수

의 사업주들과 비장애인근로자들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불가피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장애관련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다. 현재의 규정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에서 거주지에서 일자리로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2001년에 쟁점이 되었던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연결성이 부족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조차 연계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등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시내버스에 리프트시설을 갖추어 휠체어장애인이 언제나 시내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도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업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내버스에 리프트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은 장애인에게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용 승합차 또는 장애인용 버스 등의 운영이 될 것이다. 모든 장애인이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는 소득에 따라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는 1개월 동안 월 60회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 교환권을 무료로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받고 60회 교환권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 등 다중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장기저리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편의시설 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학생은 강의를 수화로 들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지원받아야 하며, 시각장애학생은 점자로 교재를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圖書를 점자화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며, 전자교재, 장애학생을 위한 컴퓨터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존의 컴퓨터를 장애학생이 사용하기 쉽게 개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 학생의 경우 자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障碍人에 대한 認識의 改善

모든 장애유형에 대해 아직도 사회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지로 인해서 장애인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인지능력도 떨어진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호킹과 같은 상태의 장애인이 있었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보일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장애인 개인에게도 크나큰 불행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한 정신장애와 정신지체는 여러 가지 비하적인 용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신장애와 정신지체 모두 일을 하면서 오히려 상태가 안정되고, 일정 직종에서는 비장애인 못지 않게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장애에서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이들이 정부의 생계지원에만 의존하여 비생산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생산적인 시민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범주에 포함된 내부장애도 아직까지 사회에서 만성질환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채용시 신체검사를 당연시함으로써 많은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제외시켜 왔다. 현재도 노동능력과는 관계없으며, 전염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간염보균자도 암묵적으로는 채용을 거부하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장·심장장애인은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이들의 직업능력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일할 기

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신체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으며, 현재도 신체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제천시에서 자격이 있지만 지체장애인이라고 보건소장 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사건은 신체장애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부장애에 대한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점차 현재 단순히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가 등록 장애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구호뿐인 단순한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장애에 대한 교육은 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비장애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형성시킬 수 있는 드라마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순희,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시장』, 『장애인고용』, 2000년 봄호, 2000.
- 강위영·나운환,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2001.
- 곽준기,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졸업생과 전환과정 추적조사연구』, 『한국재활재단 논문집』, 4호, 1995.
-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권범, 『직업재활이 퇴원한 만성정신장애인에게 미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6.
- 권선진, 『재가장애인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장애인고용』, 여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 권선진 외,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1998.
- 권유경,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민수, 김명희,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평가방안』, 『청각장애논단』,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1992.
- 김삼섭 역,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김종진,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과제와 대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1997.
- 박경수,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연계방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 박휴성,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장애인고용』, 30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어수봉·최영섭,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오길승 외, 『장애인직업재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신대학교, 2001.
-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봉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이해와 실제」, 『'99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론교육교재』, 1999.
-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1997.
- _____,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8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1.
- 이청자, 「정신지체인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과 직업활성화 방안」, 『장애인고용』, 여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정기원 외,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a.

- 정기원 외,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b.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본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 연구자료 99-1, 1999.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2001.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새로운 청각장애인상을 지향하며』, 청음회관, 1997.
- 홍진표·정혜신·이부영, 『한국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현황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 제1권 1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996.
- 황태연·한은선·이충순·한양순·이민수·이대회,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차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995.
- Antony W. A., Liberman R. P., *The Practice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historical, conceptual and research base*, Schizophrenia Bulletin 12:542~559, 1986.
- Baldwin, M. L. & W. G. Johns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1), 1994.
- Becker, Gary S.,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_____, *Human Capital*, NBER, 1965.
- Bitter, James A.,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The C.V. Mosby Company, 1979.
- Bound, J., Schoenbaum, M. & Waidmann, T., "Race and Education Differences in Disability Status and Labor Force Attachment in the

-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 supplement, 1995.
- Bradbury, R. A., Danziger, E. S. & P. Smolensky., “Public Assistance and Economic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 1979.
- Bruyere, Susanne M. & Hoying, Joyce A., Work, in A. E. Dell Orto & R. P. Marinelli eds., *Encyclopedia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1995.
- Ehrenberg, R. G. & R.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98.
- Loprest, P., Rupp K., & Sandell S. H., “Gender, Disabilities, and Employment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 supplement, 1995.
- Mackelprang, R. W. & R. O. Salsgiver, *Disability A Diversity Model Approach in Human Service Practi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9.
- Mahoney, E. & Barthel, “Functional Evaluation; the Barthel Index”, *Maryland State Med. Journal*, 14, 1965.
- Phelps, E. S.,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 Review*, 62, 1972.
- Spence, M., “Job Market Signal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1973.
- Wright, George N., *Total Rehabilitation*, Boston, 1980.

□ 著者 略歷 □

● 李 善 雨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院 社會福祉學 碩士
美國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Social Welfare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障礙人福祉팀장

〈主要 著書〉

『2001年 障礙人職業再活施設 評價』, 保健福祉部·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共著)
『2000年度 障礙人實態調查』, 保健福祉部·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共著)

● 金 成 禧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福祉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林 正 寄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社會福祉學 博士課程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員

● 權 善 進

延世大學校 社會福祉學 博士
現 平澤大學校 社會福祉學部 教授

● 劉 東 澈

서울大學校 社會福祉學 博士
現 동의大學校 社會福祉學科 教授

● 李 啓 存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社會福祉學 博士課程
現 수원女子大學 社會福祉學科 教授

研究報告書 2001-09

障碍類型別 雇傭現況과 職業再活方案

Employment Statu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trategies by Disability Type

2001年 12月 日 印刷 價 9,000원

2001年 12月 日 發行

著 者 李 善 雨 外

發行人 鄭 敬 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02) 380-8000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예원기획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ISBN 89-8187-243-0 93330